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 박지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 추구를 뒷받침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990년 1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여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 여건, 동북아경제협력 및 통일 관련 국제협력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국제금융실(국제거시팀, 국제금융팀), 무역투자정책실(WTO팀, FTA팀, APEC연구컨소시엄사무국), 세계지역연구센터(중국팀, 일본팀, 유럽팀, 미주팀, 동서남아팀, 아·중동팀, 지역연구협력팀), 국제개발협력센터(ODA팀, 동북아경제협력팀, 통일국제협력팀)를 두고 있으며, 북경사무소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IE)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책담당자, 공공기관, 유관연구기관 등에 제공되며, 반년간 『대외경제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웹진 「오늘의 세계경제」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연구성과는 KIEP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院長 蔡 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TEL : (02) 3460-1178, 1179 / FAX : (02) 3460-1144
URL : <http://www.kiep.go.kr>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 박지현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9-0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인쇄일 2009년 월 일
발행일 2009년 월 일
발행인 채 욱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 화 02) 3460-1178, 1179
팩 스 02) 3460-1144
인쇄처 삼일기획: 02) 503-4800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5,000원

ISBN 978-89-322-2154-0 94320
978-89-322-2112-0 (세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서진교 · 박지현

농업협상은 2001년 도하개발아젠더(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 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세부원칙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 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가장 최근에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 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 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

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

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2. 선행연구 검토	14
3. 연구 내용과 방법	19
4. 연구의 한계	21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23
1. 국내보조분야	24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24
나. 감축대상보조(AMS)	27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28
라. 블루박스(Blue Box: BB)	29
2. 시장접근분야	30
가. 관세감축공식	30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31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33
라. 기타	34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42
1. 국내보조	42
가. 감축대상보조(AMS)	42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52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54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60

2. 시장접근	63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63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65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와의 조화	67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81
1. 국내보조 분야	81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81
나. 감축대상보조(AMS)	86
다. 블루박스(Blue Box: BB)	88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89
2. 시장접근	91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91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91

제5장 요약	95

참고문헌	99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148
부록 2. 품목별 생산액	149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	151
부록 4. 생산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153
부록 5.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2008. 12) 원문	155

Executive Summary	215

표 차례

표 2-1.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률	26
표 2-2. 감축보조(AMS) 감축률	27
표 2-3. 구간별 관세감축률	31
표 2-4.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수준별 TRQ 증량폭	32
표 2-5. 특별품목의 개수 및 관세감축	34
표 2-6. SSG 발동가능 품목 수	35
표 2-7. 물량기준 SSM(UR 양허관세 초과)	36
표 2-8. 농업분야 팔코너 의장초안과 세부원칙 초안,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39
표 3-1. DDA 이행에 따른 총 AMS 한도 변화	44
표 3-2. 품목별 AMS 상한(선진국, 억 원)	46
표 3-3. 방법 (b)와 (c)의 품목별 AMS 상한(개도국, 억 원)	49
표 3-4. 방법 (a)의 품목별 AMS 상한(개도국, 억 원)	50
표 3-5. 방법 (a)와 (b)의 품목별 AMS 상한(개도국, 억 원)	51
표 3-6.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53
표 3-7. 우리나라의 블루박스 총액 상한	55
표 3-8.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 및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합의 한도	56
표 3-9.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억 원)	58
표 3-10. 우리나라 쌀의 AMS 지급추이	60
표 3-11.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기준	61
표 3-12.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지급 상한액	62
표 3-13.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액 비중	64
표 3-14.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별 세번 수	68
표 3-15. 협상중인 FTA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세번과 수입비중	70

표 3-16.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세번과 수입비중	71
표 3-17.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세번별 수입비중	75
표 3-18.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 이상인 세 번의 FTA별 양허내용	78
표 4-1. 우리나라의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83
표 4-2. 기타 채소류의 품목별 생산액 (억 원)	85
표 4-3.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품목 세분류	85
표 4-4. 선진국의 경우 보조금 유형별 한도와 최소허용보조(억 원)	90
표 4-5. 개도국의 경우 보조금 유형별 한도와 DM(1955~04년 기준, 억 원)	9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추진도	20
----------------	----

부표 차례

부표 1. 기체결 FTA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의 90~99% 인 세번의 FTA별 관세감축계획	103
부표 2. 기체결 FTA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의 80~99% 인 세번의 FTA별 관세감축계획	105
부표 3. 주요 세번의 FTA별 2006~08년 3개년 평균 수입비중	107
부표 4. 주요 세번별 FTA별 관세감축 스케줄	127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농업은 서비스와 함께 기설정 의제(built-in agenda)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세계적으로 농업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 UR 농업협상의 연장선상에서 WTO협상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출범으로 농업협상은 DDA의 한 의제로 편입된 후 지금까지 만 9년에 걸쳐 시장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세부원칙(modality)¹⁾협상을 계속해 오고 있다.

DDA 농업협상은 당초 2003년 3월말까지 세부원칙을 도출하고, 2004년 말까지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빈슨(Harbinson) 당시 농업협상의 장도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 2003년 3월 세부원칙초안을 작성·배포하고 회원국간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케언스(Cairns)그룹 중심의 수출국과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일본 등이 중

1) 회원국의 농업 보조금과 농산물 관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감축방식을 세부원칙이라고 한다.

십인 수입국 간 이견 대립으로 하빈슨 의장의 세부원칙 도출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후 DDA 농업협상은 세부원칙 자체보다는 그 핵심 틀이라고 볼 수 있는 기본골격 도출 협상으로 변모되면서 한 단계 격이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골격 도출을 위한 협상도 쉽지 않아 2003년 9월 칸쿤(Cancun) 각료회의의 결렬과 다시 1년의 협상을 거친 끝에 2004년 7월 31일 세부원칙 기본골격 합의안이 마련되었다.

기본골격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후 DDA 농업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과 달리 세부원칙 도출 협상은 그 후 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장기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성과도 있었다. 회원국들 사이에서 이해가 대립되어 왔던 많은 쟁점들이 상당히 정리되어 회원국간 대체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이견 대립이 심한 핵심 쟁점에 관해서도 이해 당사국간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 이 결과 2006년 6월에 당시 농업협상책임자인 팔코너(Falconer)가 하빈슨 초안 이후 처음으로 농업분야 세부원칙 의장초안을 작성·배포했으며, 이후 배포된 의장초안을 기초로 2008년 12월까지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배포되었다.

2009년 DDA 농업협상은 신임의장으로 데이비드 워커(David Walker)²⁾를 선임한 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배포된 수정안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농업보조금 감축, 민감(특별)품목의 수나 대우,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등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남아 있으나 타협이 가능한 상태로 좁혀졌으며, 이로 인해 4차 수

2) 농업협상그룹의장은 초대 하빈슨(J. S. Harbinson)의장에서 2대 팀 그로서(Tim Groser)의장부터는 뉴질랜드 주제네바 대사가 맡아오고 있다. 이에 따라 3대 의장도 팔코너(Crawder Falconer)대사가 맡았으며, 지난 2009년 4월 데이비드 워커대사가 농업협상그룹 신임의장으로 선임된 바 있다.

정안에서는 보조 및 관세 감축의 구체적인 수치가 단일 숫자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업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원인은 농업협상, 아니 DDA 전체를 타결시키겠다는 주요국의 정치적 의지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의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의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이다.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DDA 농업협상의 진전에 대비해 가장 최근의 4차 수정안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작성,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이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나타난 회원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나름대로 적절히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향후 실제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된다고 해도 이미 제시된 4차 수정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일단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유리한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연구하는 것이 시의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재임에 성공한 라미 사무총장이 DDA의 진전을 위해 배포된 세부원칙 수정안에 기초하여 연습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어 이 연구의 정책적 의미를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지금까지의 협상을 통해 제일 마지막으로 제시되었던 농업부문 세부원칙 4차 의장 수정안(2008. 12)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의미를 우리나라의 시각에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으로 농업부문의 전략적·효율적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DDA 농업협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세부원칙 협상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대응 협상전략을 연구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임송수외(2006)를 들 수 있다. 임송수외는 2006년 6월 팔코너 의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초안을 검토하고, 국내보조 및 시장접근분야에서 주요국(미국, EU, G20 등)의 제안이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와 영향을 시나리오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³⁾ 임송수외는 국내보조 시나리오 분석에서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의 감축이 실제로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e-minimis: DM), 블루박스(BB)보조 등 개별 보조의 감축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도국 가정 아래서 최소허용보조가 무역왜곡보조총액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최소허용보조의 충분한 확보에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장접근분야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미국의 제안보다 G20이나 EU의 제안이 우리나라에 보다 유리하며, 민감품목을 활용하면 고율관세 품목을 보호하는데 유용하지만, 동시에 민감품목에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농업협상 우선순위는 충분한 수의 특별품목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만일 관세상한을 피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에 한정해서라도 관세상한 적용 면제, 관세상한의 상향 조정 등의 차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통해 협상결과를 예측하였는데,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나라의 최종 평균관세율은 개도국 가정하에 35%(관세감축률 44%), 선진국 가정하에 17%(관세감축률 73%)인 것으로 전망하였다. 국내보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개도국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AMS 1조 25억 원, 최소허용보조 2조 9,518억 원, 블루박스 8,623억 원, OTDS 4조 8,166억 원으로 예측하였으며, 선진국 가정하에서는 AMS 7,590억 원, 최소허용보조 1조 1,180억 원, 블루박스 8,670억 원, OTDS 2조 7,420억 원으로 예측하였다.

서진교외(2005)는 2005년 초부터 홍콩 각료회의까지 협상에서 제시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농업협상 3대 분야별로 주요국간 이해가 대립되고 있는 핵심 쟁점과 주요국 입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을 고려한 협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시장접근분야에서 관세감축보다는 민감품목이나 개도국 특별품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에 따라 협상에서 적정한 수의 민감품목 확보와 관세상한 적용 배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감축대상보조,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 상한 등 개별보조의 감축률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률을 낮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감축대상보조 감축에 따라 향후 우리 농정 운용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정 수준의 최소허용보조와 블루박스를 확보하는 협상전략을 제안하였다.

서진교(2008 a)는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3차 수정안 분석에 기초하여 향후 협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선정하고, 농업보조금의 상한 및 품목별 지급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의 품목별 관세수준과 품목별 농업정책의 운용범위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계획서 작성방안에 대한 전략적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협상전략으로 주요 핵심 농축산물에 대한 예외적 조치 확보를 위해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또한 이행계획서 작성 이전에 민감품목 시장개방조건 및 민감품목의 특별품목 전환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이에 기초한 이행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 아울러 국내보조에서는 개별 품목별로 향후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가 설정되기 때문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 보조계획을 미

4) 민감품목 선정은 해당 품목이 국내 농업에서 차지하는 중요성보다는 품목별로 관세감축을 하는 것이 유리한 지 아니면 무관세 TRQ를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 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송주호(2009)는 국내보조분야에서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열거한 선행연구들이 주요국의 협상제안 내용과 세부원칙 논의경과에 따른 대응방안과 전망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송주호는 가장 최근의 주요국 보조금의 통보 실적과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기초해 국내 농업보조정책의 운용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의 국내보조금 감축내용에 따르면,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률이 EU는 80%, 미국과 일본은 70%이지만, 이 보고서는 EU와 일본이 현 수준의 보조금 지급만으로도 보조금 감축이행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국제곡물가격이 현재와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감축약속을 이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4년에 쌀 수매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소득보전제도의 변동 직불금만 감축대상보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감축대상보조의 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보조정책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감축대상보조를 계산할 때 시장가격지지의 대상물량(eligible production) 계산 방법을 재검토해야 하고⁶⁾, 둘째, 감축대상보조에 편중되어 있는 국내보조정책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허용대상보조(Green Box)과 블루박스보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셋째, 세부원칙에서 품목별 보조금 한도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품목 분류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나친 세분화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세부원칙협상에 대비한 협상전략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송주호

5) 품목별 보조 상한은 이행계획서에 표기해야 하므로 사전에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AMS, 블루박스, 최소허용보조 중 어느 보조를 이용해서 한도를 설정할 것인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6) 시장가격지지의 대상물량을 전체생산량으로 할 것인지, 또는 실제 수매물량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AMS 계산이 달라진다.

(2009)를 제외하고는 농산물 관세 및 보조의 구체적인 감축수치가 제시된 4차 의장수정안에 기초해 우리나라의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진 DDA 농업협상에 관한 연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3차 의장수정안을 포함해 그 이후에 제시된 수정안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있으나, 이에 기초하여 특정 국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을 제시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다만 최근 들어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는 일부 존재한다. 이 연구들은 최근까지의 협상결과와 주요국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세부원칙 수정안을 분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Mike Gifford and Raul Montemayor(2008)가 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협상결과와 주요국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도국과 선진국의 관점에서 세부원칙 수정안이 담고 있는 시장개방수준(ambition)과 협상분야별 균형에 대한 의미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미해결 쟁점사항이 상당수 남아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최종 협상타결을 위한 방안으로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부원칙 수정안이 미국, EU, 브라질, 인도 등 주요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다수 있다. David Blandford, David Laborde and Will Martin(2008)은 세부원칙 수정안이 미국의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경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송주호(2009)와 마찬가지로 세계 농산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한 미국은 정책조정을 통해서 국내농업보조를 의장 수정안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감축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면화, 설탕, 낙농품 등 일부품목에 대한 국내보조감축은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며, 설탕, 육류, 낙농품, 음료 및 담배 등 일부 품목의 관세는 다소 높은 반면, 농산물 세번의 90% 정도가 관세감축공식의 제 1구

간에 속하고 있어 수정안이 요구하는 관세감축효과는 미국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U에 대한 연구로는 Sébastien Jean, Tim Josling and David Laborde (2008)이 있다. 이 보고서는 EU의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과정과 이와 관련된 협상입장을 평가하고, 세부원칙 수정안이 국내보조, 시장접근, 수출 경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EU가 민감품목을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과 육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영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와 관련된 연구로는 Munisamy Gopinath and David Laborde(2008)이 있는데, 이 보고서는 시장접근과 국내보조에 국한해 국내정책과 관련된 인도의 입장뿐만 아니라, 최근 수정안이 인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인도의 농산물 양허관세 평균은 무역기준치를 적용할 경우 159%에 달하며, 의장 수정안이 요구하는 구간별 관세감축공식을 적용할 경우 평균 양허관세가 99%로 떨어지지만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등을 활용할 경우 126%가 되어 관세의 순 감축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실행관세와 양허관세 간의 차이가 커서 실질적인 관세감축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국내보조에서는 총 AMS 감축의무가 없는 인도는 품목특정 및 품목불특정 AMS를 최소허용보조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서 국내보조정책을 운용하는데 상당한 신축성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과 관련된 연구로는 Nassar, A, Cabral da Costa, C, and Chiodi, L(2008)이 있다. 이 보고서는 세부원칙 수정안이 브라질의 국내보조와 관세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협상타결에 따른 혜택을 분석하고, 협상에서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브라질의 입장이 수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있다. 브라질은 이미 관세와 국내보조감축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협상타결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DDA가 브라질의 농산물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감축대상보조와 블루박스보조의 품목특정 상한 설정을 DDA 농업협상의 큰 성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특정 보조금의 상한 설정이 세계 농산물 시장에서 국내보조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의 존속, 저율관세쿼터(TRQ)의 증량수준에 따라 브라질의 대 세계시장 접근기회가 제약받게 될 것으로 보고, 향후 이 두 가지 쟁점이 브라질의 DDA 농업협상 성패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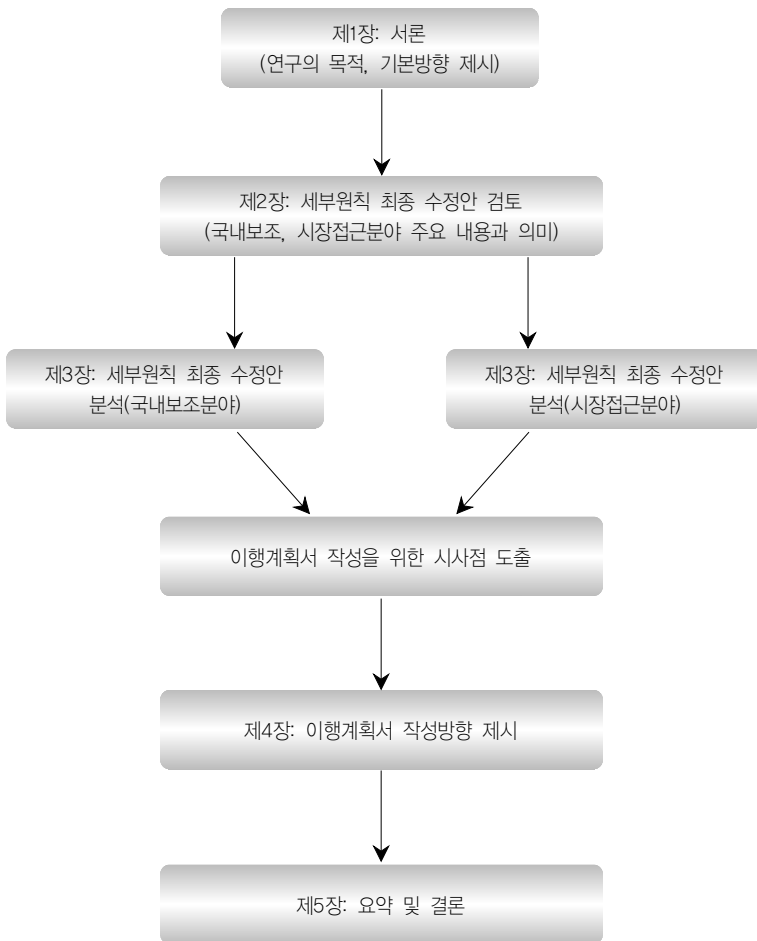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 국내외 DDA 농업협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세부원칙 수정안에 대한 평가와 관련 대응방안 연구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세부원칙 수정안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 의미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향후 예상되는 이행계획서 작성·제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기존 연구와 대비된다. 특히 국내보조에서 품목별 보조금 지급상한이 설정될 것에 대비하여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시장접근분야에서도 민감·특별품목의 선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상의 세번별 시장개방 스케줄과 이들 FTA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흐름을 세번별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자협상과 다자협상간 관세감축의 조화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대표적인 기여라고 할 수 있다.

3. 연구 내용과 방법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음 장에서 향후 농업협상의 기초가 될 세부원칙 의장 4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3장은 이 연구의 핵심으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부담 정도를 추산해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 논리를 개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의 연구 결과에 기초해 이행계획서 작성의 기본 방향을 분야별로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

■ 그림 1-1. 연구 추진도 ■



이와 같은 내용의 연구는 주로 문헌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 우리나라가 WTO에 제출한 보조금 자료에서부터 우리나라의 농업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용되었다. 특히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별 시장 개방 양허표를 기초로 주요 농축산물 522개 세번을⁷⁾ 뽑아 이들 세번의 시장 개방 수준과 수입 흐름을 상호 비교·검토하여 이행계획서 작성방향 설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농업분야 세부원칙 의장 4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하되, 그 중에서도 국내보조와 시장접근에 한정했다. 이에 따라 농업협상의 3대 의제 가운데 하나인 수출경쟁분야는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수출경쟁분야를 제외시킨 것이 이 연구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수출경쟁분야는 수출 보조금의 감축을 포함하여 수출신용, 수출 마케팅보드, 원조 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내용은 아니다. 특히 농림수산물식품부가 2012년 농축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를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분야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 수출경쟁분야를 제외한 것은 우리 농업에 미치는 과급영향 측면에서 국내보조와 시장접근분야가 보다 직접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출경쟁분야 역시 수출농업을 한 축으로 하는 한국 농업의 비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향후 중요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한편 시장접근분야에서 민감 및 특별품목의 선정 문제는 기존 연구를 인용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는 민감 및 특별품목 선정 자체를 두고 기존에

7) 522개 세번은 한미 FTA 협정상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한 세번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사실상 추가 연구의 유효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아직까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양자와 다자차원의 조화차원에서 기존에 맺은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수입흐름을 세 번별로 비교·검토하여, WTO의 다자차원에서의 시장개방과 FTA 등 양자 협상차원에서의 시장개방을 조화시키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제2장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 검토

2008년 12월 발표된 세부원칙 의장 4차 수정안은 2008년 7월 소규모 각료회의 및 이후 협상 진전 내용을 반영하여, 미합의 쟁점 수를 축소하고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민감품목, 특별품목,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 쿼터내 관세(In-quota tariff) 감축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단일 수치를 담고 있다. 제시된 4차 수정안에 대하여 회원국의 반응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여전히 견해 차이가 남아있는 부분으로 개도국 특별세이프가드(SSM), 민감품목의 TRQ 신설문제,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제외 문제, 관세 단순화, 면화보조금 감축문제 등이 남아 있다.⁸⁾ 여기서는 농업부문 세부원칙 의장 4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8) 잔여 쟁점 중 SSM 및 TRQ 신설문제 등 의견차이가 큰 분야는 세부원칙 문안을 수정하는 대신 의장이 생각하는 타협안을 별도 문서로 제시하였다.

1. 국내보조분야

가.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DDA 농업협상이 이전 UR 농업협상과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농업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개별 보조금의 지급 상한을 논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인 무역왜곡보조총액(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TDS)도 감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즉, 최종 양허된 감축대상보조(Final Bound Total Aggregated Measurement of Support: Total AMS)와 최소허용보조(Demimis: DM), 그리고 블루박스(Blue Box)보조의 합을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으로 정의하고, 이 무역왜곡보조총액을 계산해 양허한 후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⁹⁾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업보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감축대상보조는 무역왜곡효과가 커서 이미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규제하기로 합의한 보조로서 회원국별로 매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양허되어 있고, DDA 협상에서는 양허된 상한을 다시 얼마나 줄일지를 논의하고 있다.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이지만 지급액수가 적어¹⁰⁾ 이전 UR 농업협상에서는 감축의무를 면제해 준 보조이다. 그러나 DDA 농업협상에서는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치를 낮추는 논의를 하고 있다. 블루박스 보조도 감축대상보조이지만 생산제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역왜곡효과가 적어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미국과 EC의 합의를 거쳐 감축의무가 면제된 보조이다. DDA 농업협상에서는 블루박스 보조의 지급상한

9) 이는 UR 농업협상 이후 감축보조가 줄어들면서 블루박스나 최소허용보조, 또는 허용보조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농업보조금 사이의 이전현상(Box shifting)을 방지하고자 개별보조금을 규제하는 동시에 이들 보조의 합인 무역왜곡보조총액도 규제하게 된 것이다.

10) 기준은 해당 품목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 또는 농업총생산액의 5%(개도국은 10%)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를 참조

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지금까지 허용된 모든 개별보조를 축소시키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앞에서 언급한 3가지 보조를 모두 합한 보조를 무역왜곡보조총액이라고 하여 다시 이 금액을 양허하고 낮추도록 하고 있다. 결국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 자체가 없는 허용대상보조를 제외한 모든 농업보조금이 감축의무 대상인 되는 셈이다.

■ Box 1. 보조금 종류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허용보조 (Green Box: GB)
감축대상보조 (AMS)	최소허용 보조 (De-minimis: DM)	블루박스 (Blue Box: B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 AMS, De-minimis, Blue Box를 합산한 총액 - 감축대상보조(AMS) : 무역왜곡효과가 있어 WTO 농업협정에 따라 감축해야하는 보조 - 최소허용보조(DM) : AMS에 속하지만 규모가 작아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 블루박스(BB) : AMS와 허용대상보조의 중간 성격의 과도기적 보조로서, 일부계약요건을 두어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한 보조로 UR 농업협상에서는 감축의무가 면제되었음 - 허용대상보조(GB) : 무역왜곡효과가 없거나 미미하여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 			

무역왜곡보조총액의 감축은 지급규모 순으로 구간을 나누어 규모가 클수록 더 큰 폭의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구간 기준은 100억 달러와 600억 달러로, 3개 구간(1구간: 600억 달러 초과, 2구간: 100~600억 달러, 3구간: 100억 달러 이하)으로 되어 있다. 1구간인 600억 달러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감축률은 80%로 이 구간에 속하는 WTO 회원국은 EU뿐이다. 2구간(100억 달러 초과 600억 달러 이하)에 적용되는

감축률은 70%로 미국과 일본이 여기에 속한다. 3구간의 감축률은 55%로 나머지 회원국 모두가 여기에 속하게 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는 사실상 1, 2구간에 속하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3구간 감축률의 2/3 수준인 36.7%를 감축하게 되어 있다(표 2-1).

한편 2008년 7월 배포된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개별 보조금의 감축률을 구간으로 제시하였으나, 4차 수정안에서는 구간이 아닌 단일 수치로 제시하고 있는데, 단일 수치는 그동안 제시된 구간의 중간 수치다. 이행기간은 선진국은 5년, 개도국은 8년으로 제시되어 있다.

■ 표 2-1.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감축률 ■

구 간	감축률	이행기간
1구간 (600억 달러 초과)	80%	첫날 총 OTDS의 33.3%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2구간 (100억 달러 초과 600억 달러 이하)	70%	
3구간 (100억 달러 이하)	55%	첫날 총 OTDS의 25% 감축, 나머지는 5년 균등 감축
개도국	36.7%	첫날 총 OTDS의 20% 감축,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

자료: 4차 의장 수정안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은 100억 달러 이하로 추산되기 때문에¹¹⁾ 선진국 대우를 받을 경우 제 3구간에 속해 55%를 감축하거나 또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약 37%를 감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¹²⁾

11) 이하 제3장에서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2)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나. 감축대상보조(AMS)

감축대상보조는 농업 생산이나 농산물 가격에 직접 영향을 주어 농산물 무역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가장 큰 보조로 앞서 언급한 대로 이미 UR 농업협상에서부터 규제를 해 온 보조금이다. UR 농업협정 이행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은 자국의 AMS의 상한을 설정하여 양허하고, 이를 매년 감축해 왔다. 우리나라도 1995년 감축대상보조 총액으로 2조 1,826억 원을 상한으로 양허한 이후 매년 감축해 왔으며, 2004년 우리나라의 AMS 최종 양허금액은 1조 4,900억 원이다.

감축대상보조도 무역왜곡보조총액과 마찬가지로 지급 규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AMS가 많은 국가가 더 큰 폭으로 AMS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즉 AMS총액이 400억 달러를 초과하면 70%를 감축해야 하며, 150억 달러를 초과하되 400억 달러 이하이면 60% 감축을, 150억 달러 이하이면 45%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표 2-2 참조). 개도국은 3구간 감축률(45%)의 2/3인 30%를 적용받게 된다(표 2-2). 우리나라의 AMS총액은 150억 달러 이하이므로 감축률은 30%(개도국 유지) 또는 45%(선진국일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표 2-2. 감축보조(AMS) 감축률 ■

양허된 최종 감축보조(AMS) 규모		적용 감축률	
		선진국	개도국
1구간	400억 달러 초과	70%	30%
2구간	150억 달러 초과 400억 달러 이하	60%	
3구간	150억 달러 이하	45%	

자료: 4차 의장 수정안

한편, 이번 DDA 농업협상 부터는 감축대상보조(AMS)는 총액(Total AMS)뿐만 아니라 품목별로도 상한이 설정되어 품목별로 지원 가능한 감

축보조금의 규모가 제한된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은 1995~2000년 WTO에 통보된 개별품목에 지급된 품목별 AMS의 평균을 상한으로 설정하게 된다. 미국은 1995~2004년 품목별 지원 비율을 1995~2000년 품목별 지원액에 적용하여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도국은 ①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품목특정 AMS의 평균이나, ②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동안 UR 농업협정 제6조 4항의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DM) 규모의 2배, 혹은 ③ DDA 이행기간 동안 적용될 당해 연도 AMS 총액의 20% 중 하나를 선택하여 품목특정 AMS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쌀 등 일부 품목에 AMS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울러 향후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불가피하게 품목별 보조를 지급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정안에서 제시된 3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것이 유리한 지를 세밀히 검토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다.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DM)

최소허용보조는 감축대상보조(AMS)와 성격이 같지만, 지급 규모가 작기 때문에 UR 농업협상에서 감축의무가 면제된 보조금이다.¹³⁾ 선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50% 감축하고(기준이 5%→2.5%로 낮아짐), 최소허용보조의 감축 이행은 이행 첫날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개도국은 현행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33.3% 감축하고(이에 따라 기준이 10% → 6.7%로 낮아짐), 감축기간은 선진국보다 3년이 더 주어져 있다.

13) 감축대상보조이지만 지급 규모가 해당 품목 또는 전체 생산액의 5%(선진국) 또는 10%(개도국) 이하이기 때문에 감축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대신 최소허용보조라는 이름으로 지급현황만은 WTO 농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 보조금이 최소허용보조이다. 최소허용보조는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와 불특정 최소허용보조로 구분되는데,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은 감축보조가 해당 품목 생산액의 5%(선진국) 또는 10%(개도국) 이하일 때이며,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5%(선진국) 또는 10%(개도국) 이하일 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소허용보조 지급수준이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¹⁴⁾ 이행계획서 작성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 블루박스(Blue Box: BB)

DDA 농업협상에서는 생산제한조건이 있는 기존의 블루박스(Old BB)이 외에 새로운 형태의 블루박스(New BB)를 인정하고 있다. 새로운 블루박스는 기존 블루박스와 달리 생산제한조건이 없다. 그러나 대신 특정 품목의 생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고정 불변 기준생산 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Box 2 참조).

■ Box 2. 블루박스의 종류 ■

- (a) 생산제한정책에 기초한 직접지불(Old BB)
 - i) 고정 불변의 면적과 단수를 기초로 한 직접지불이거나,
 - ii) 고정 불변의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이거나,
 - iii) 고정 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축산물)

- (b)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직접지불(New BB)
 - i) 고정 불변의 기준과 단수를 기초로 한 직접지불이거나,
 - ii) 고정 불변의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지불(축산물),그리고
 - iii) 고정 불변의 기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

블루박스 보조의 감축은 감축대상보조와 마찬가지로 총액과 품목별 보조의 지급 한도를 규제하는 상한설정 방식이 적용된다. 블루박스 총액 상한

14) 제3장 최소허용보조에 대한 평가 참조

은 선진국의 경우,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가 되며, 개도국은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은 기준기간 동안 통보된 품목별 블루박스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되, 품목특정 AMS를 품목특정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¹⁵⁾

2. 시장접근분야

가. 관세감축공식

일반 품목의 관세감축공식은 WTO에 최종 양허된 관세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관세율이 높은 구간일수록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하는 ‘구간별 차등 감축방식’이 적용된다.

기존 수정안에서는 최상위 구간 이외의 나머지 구간의 감축률은 단일수치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번 4차 수정안에서는 모든 구간의 관세감축률이 단일수치로 제시되었다(표 2-3 참조). 최상위 구간의 관세감축률은 2008년 7월 각료회의에서 라미 사무총장이 잠정타협안으로 제시한 70%(개도국 46.7%)가 그대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농산물 관세는 최소 50%, 최대 70%를 감축하게 되어 있으며, 개도국은 선진국 감축률의 2/3가 적용되어 최소 33.3%, 최대 46.7%를 감축하도록 되어 있다. 관세감축 이행기간은 선진국의 경우 5년이며, 개도국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15) 단, 이 때 전환된 신규 품목별 블루박스 보조의 상한은 블루박스 총액 상한의 2.5%(개도국은 10%)이어야 하고, 신규로 전환된 블루박스 보조의 합은 블루박스 총액 상한의 5%(개도국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

표 2-3. 구간별 관세감축률

구간	선진국		개도국(선진국의 2/3)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1	0~20%	50%	0~30%	33.3%
2	20~50%	57%	30~80%	38.0%
3	50~75%	64%	80~130%	42.7%
4	75% 초과	70%	130% 초과	46.7%

자료: 4차 의장 수정안

나.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민감품목은 위에서 언급된 일반 관세감축공식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으로 일반 감축률보다 낮은 감축률이 적용된다. 대신 저율관세쿼터(TRQ) 물량을 증량해야 하는 보상이 필요하다.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선진국의 경우 농산물 전체 세번수의 4%, 개도국은 5.3%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감축률(일반 감축률의 1/3~ 2/3 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감축의 혜택을 본 만큼 TRQ 물량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TRQ 증량 수준은 관세감축의무의 이탈 정도에 따라 선진국은 해당 세번 국내소비량의 3~4%, 개도국은 2~2.7%를 TRQ 증량폭으로 설정되어 있다(표 2-4).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 총 세번수가 1,452개(HS 10단위 기준)이므로 민감품목으로 HS 10단위 기준 58(선진국)~77개(개도국)까지 설정할 수 있다.¹⁶⁾

16) 농업협상에서 다루기로 한 수산물 77개 세번을 추가할 경우 농산물 총세번 수는 1,529개가 되며,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수는 HS 10단위 기준으로 61(선진국)~81개(개도국)가 될 수도 있다.

표 2-4. 민감품목의 관세감축 수준별 TRQ 증량폭

조 건	TRQ 증량물량 (국내 소비량대비 %)	
	선진국	개도국
Deviation 1/3 적용시 (구간별 감축률의 2/3수준 적용)	3.0	2.0
Deviation 1/2 적용시 (구간별 감축률의 1/2수준 적용)	3.5	2.3
Deviation 2/3 적용시 (구간별 감축률의 1/3수준 적용)	4.0	2.7

자료: 4차 의장 수정안

한편 개도국에는 민감품목 가운데 일정 부분은 TRQ 증량대신 이행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하고 있다. 즉, 관세를 일반 감축률의 1/3(or 1/2 or 2/3)만큼 감축할 경우, 이행 기간을 1년(or 2년 or 3년)으로 단축하거나, 관세감축의 혜택을 받지 않고 일반감축률을 적용하되 대신 이행기간을 3년 연장(13년)할 수도 있다(Box 3 참조).

Box 3. 개도국 민감품목 옵션

1. 작은 감축률 + 이행기간 단축 (TRQ 증량 의무 면제)
 - ① 일반감축률의 2/3 적용 + 이행기간 3년 : 민감품목 1/2에 한해 적용
 - ② 일반감축률의 1/2 적용 + 이행기간 2년 : 민감품목 1/3에 한해 적용
 - ③ 일반감축률의 1/3 적용 + 이행기간 1년 : 민감품목 1/4에 한해 적용
 - ④ 나머지 민감품목은 ②+③ 이용 가능
2. 일반 감축률 + 이행기간 3년 연장
3. 작은 감축률 + TRQ 증량(선진국의 2/3)

다.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특별품목은 민감품목과 같이 관세감축 일반공식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지만 민감품목과 달리 TRQ 증량과 같은 보상이 없는 품목이다. 이러한 점에서 말 그대로 특별한 품목이며, 개도국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DDA 농업협상에서의 대표적인 개도국 특혜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특별품목의 선정은 지표(indicators)에 따라야 하는데, 지표는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이라는 기준에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Box 4 참조).

■ Box 4. 특별품목과 민감품목의 개념 ■

▶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SP)

특별품목은 개발도상국의 식량안보·생계보장·농촌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DDA 농업협상에서 민감품목과는 별도로 개도국에게만 추가로 부여하는 특별대우임. 따라서 식량안보·생계보장·농촌개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관세감축에 있어 민감품목보다 더 많은 특혜를 부여함.

▶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민감품목은 각 국가의 민감성을 반영하기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에게 인정되는 것으로, 선정기준 등 요건 없이 일정 수를 지정할 수 있음.

특별품목에 대한 이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기존 수정안까지는 특별품목의 수 및 감축률 등 주요 사항에 선진국과 개도국간 견해 차이가 심해 특별품목의 개수 및 감축률 등은 범위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4차 수정안에서는 특별품목의 수와 대우를 단일 수치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도국은 농산물 전체 세번 수의 12%까지를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특별품목 전체의 평균 관세감축률은 11%를 적용하되, 그 안에서 세번 수의 5%까지는 관세감축의무가 면제된다(표 2-5

참조).¹⁷⁾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생산이 특정 주요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세감축 폭을 적게 하기보다는 민감 및 특별품목을 활용한 이행계획서 작성이 DDA로 인한 농업부문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표 2-5〉 특별품목의 개수 및 관세감축

대상국가	개수	관세감축률
일반 개도국	세번의 12%	평균 11% (단 관세감축면제는 세번의 5%)

자료: 4차 의장 수정안

라. 기 타

1) 관세상한(Tariff peak)

관세상한이란 일정 수준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동안 수출국들은 관세상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그러나 4차 수정안에서도 확실적인 관세상한은 도입되지 않았다. 다만 관세감축의 혜택을 받는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에 대해서 관세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대신, 민감품목의 경우 고관세 품목은 보상의 성격으로 추가적으로 TRQ를 증량하도록 되어있다. 즉, 선진국의 경우 관세가 100%(개도국의 경우 150%)를 초과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TRQ를 추가로 증량하게 되어 있으며,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3차 수정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4차 수정안에서는 추가 보상 없이 150% 이상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7) 특별품목에 대한 관세감축 면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선진국 및 수출국들은 감축면제를 반대해 왔으며, G33(개도국 특별품목 그룹)은 감축면제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2)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SSG)는 농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급락할 경우 관세화된 품목에 한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관세화 보완장치로 UR 농업협정에서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후 DDA 농업협상에서는 SSG를 두고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주로 수출국)과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주로 수입국)이 맞서 왔다.

EU 등 수입국은 대체적으로 SSG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적용대상 품목의 범위를 전체 세번의 일정 비율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수출국들은 대체적으로 이를 즉시 폐지하자는 입장이었다. 의장 4차 수정안에서는 선진국의 경우, SSG 발동품목 수를 이행 첫해에 전체 세번의 1%로 감축한 후, 7년 이내 완전 폐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도국은 이행 첫해에 전체 세번의 2.5%로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 표 2-6. SSG 발동가능 품목 수 ▮

	SSG 발동가능 품목수
선진국	이행첫날에 전체 세번의 1%로 감축한 후, 7년간 완전 폐지
개도국	이행첫날에 전체 세번의 2.5%로 감축 후 유지

자료: 의장 수정안 별도 자료

3)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는 SSG와 유사하지만 개도국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현재 DDA 농업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쟁점이다.

DDA 협상결과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는 도중에 수입이 증가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한 결과가(실행관세+추가관세) 현재의 양허관세(UR 양허관세)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발동 요건, 추가관세 수준, 발동기간 등을 놓고 선진국

과 개도국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다.

개도국은 발동기준을 가능한 한 낮추고 개도국의 식량안보 등을 고려하여 SSM 활용이 용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진국과 농산물 수출개도국들은 농산물 교역의 정상적인 증가를 저해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 아래서만 SSM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4차 수정안에서는 SSM 부분은 별도의 의장보고서를 이용하고 있다.

별도 의장보고서는 발동기준¹⁸⁾을 기준 수입량의 120~140%와 140%를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추가 관세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표 2-7 참조). 또한 수입량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이 실제로 하락하지 않을 경우 SSM발동을 제한(cross-check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SSM 발동기간은 최대 [4/8]개월로 하고, 한 번 발동되면 그 발동기간 만큼 경과하지 않으면 재발동이 불가능하며, SSM이 해당 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발동될 경우는 다음 연도의 [2/4]개월간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표 2-7. 물량기준 SSM(UR 양허관세 초과)

대상 품목	발동기준 (수입량 기준)	구제조치 (추가관세)	발동기간	기타 발동제한
연간 세번의 2.5%	120%초과 140%이하	양허관세의 33% 또는 8%p 중 높은 것	○ [4/8]개월	price cross-check - 가격하락이 입막히지나, 자료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 사후 검토 조건으로 발동가능
	140%초과	양허관세의 50% 또는 12%p 중 높은 것	○ 발동기간과 동일 기간 재발동 금지	

자료: 의장 수정안 별도 자료

18) 발동기준(trigger): 추가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수입물량으로 기준수입물량(최근 3개년 평균 수입량)의 일정비율(예 120%)로 정해진다.

4) 민감품목 TRQ 신설

4차 수정안에 따르면 민감품목으로 지정되면 TRQ를 증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TRQ를 가지고 있지 않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경우 어떻게 TRQ를 설정해 증량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일단 TRQ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조차 회원국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의 TRQ 신설 허용 여부 및 보상 방안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다만 의장 수정안 별도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전체 세번의 1%에 대해 TRQ 신설을 허용하되(이는 기존에 TRQ품목이 아니더라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전체 세번의 1%로 제한된다는 의미임), 대신 일반 민감품목보다 TRQ를 2% 추가 증량하도록 하고 있다.

5) 비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상한 적용제외 문제

의장 3차 수정안에서는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의 경우, 비민감품목의 1~2%에 한해 100%이상의 높은 관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 대신 추가 부담으로 ① 전체 민감품목 TRQ를 0.5% 추가 증량하거나, ② 해당 품목 이행기간을 2년 단축, ③ 해당 품목 감축률 5%p 상향 조정 하는 등 세 가지 옵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을 수 있게 하였다.

4차 수정안에서 의장은 별도 작업문서를 만들어 비민감품목의 2%까지는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되, 이행기간+4년 이내에 100% 이하로 관세를 감축하도록 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6) 관세단순화(tariff simplification)

관세단순화는 복잡한 관세구조를 단순화(모든 종류의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여 관세를 투명하게 운용하고자 것으로, 종가세 전환 비율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4차 수정안에서는 두 가지 옵션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는 전체 세번을 종가세로 100% 전환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90% 이상을 종가세로 전환 하되, 잔여 비종가세는 이행기간 종료 이후 1년 내에 100% 전환을 위한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종가세로의 전환 수준과 관련하여 수출입국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종가세 전환 비율로 EU는 80%, 일본 및 스위스는 90%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수출국은 100%를 주장하고 있다. 비종가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도 회원국들은 이미 지난 2005년 5월 종가세상당치(AVEs) 전환방식(Paris methodology, 1999-01년 기준)을 합의했으나, 최근 농산물 수출국을 중심으로 기준년도 변경안이 제시되고 있다.

7) 열대작물(Tropical products)

개도국 또는 최빈개도국들이 주로 생산하는 열대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데에는 회원국간 이견이 없다. 그러나 그 대상과 수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4차 수정안에서는 열대농산물과 전환농산물의 관세감축에 대해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양허관세가 25% 이하이면 관세를 철폐하고, 25%를 초과하면 85%를 감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10% 관세를 기준으로 양허관세가 그 미만이면 철폐하고, 그 이상이면 일반 품목의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되는 감축률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국그룹인 G10은 개별국가의 농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세를 감축하면 협상결과가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열대작물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비열대권 국가의 생산비중이 큰 품목은 열대작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품목들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세부원칙 수정안을 핵심 사항별로 요약하면 다음의 <표2-8>과 같다.

■ 표 2-8. 농업분야 펠코너 의장초안과 세부원칙 초안, 3차, 4차 수정안 주요 내용 비교

쟁점	펠코너 의장초안('06.6)	세부원칙 초안('07.7)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																																																																										
관세감축	<p>○ 관세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성진국</th> <th colspan="2">개도국</th> </tr>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0~20/30</td> <td>20~65</td> <td>0~20/50</td> <td>15~65</td> </tr> <tr> <td>20/30~40/60</td> <td>30~75</td> <td>20/50~40/100</td> <td>20~75</td> </tr> <tr> <td>40/60~60/90</td> <td>35~85</td> <td>40/100~60/150</td> <td>25~85</td> </tr> <tr> <td>60/90%이상</td> <td>42~90</td> <td>60/150%이상</td> <td>30~90</td> </tr> </tbody> </table>	성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0~20/30	20~65	0~20/50	15~65	20/30~40/60	30~75	20/50~40/100	20~75	40/60~60/90	35~85	40/100~60/150	25~85	60/90%이상	42~90	60/150%이상	30~90	<p>○ 선진국 관세감축구간경계 20(50/75)</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73</td> </tr> <tr> <td>50% ~ 75%</td> <td>62-65</td> </tr> <tr> <td>20% ~ 50%</td> <td>55-60</td> </tr> <tr> <td>20% 이하</td> <td>48-52</td> </tr> </tbody> </table> <p>○ 개도국 구간경계 30/80/130, 감축률 선진국 2/3</p>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2-65	20% ~ 50%	55-60	20% 이하	48-52	<p>○ 선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66-73</td> </tr> <tr> <td>50% ~ 75%</td> <td>64</td> </tr> <tr> <td>20% ~ 50%</td> <td>57</td> </tr> <tr> <td>20% 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p>○ 개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130% 초과</td> <td>44-48.7</td> </tr> <tr> <td>80% ~ 130%</td> <td>42.7</td> </tr> <tr> <td>30% ~ 80%</td> <td>38.0</td> </tr> <tr> <td>30% 이하</td> <td>33.3</td> </tr> </tbody> </table> <p>○ 이행기간: 선진국 5년, 개도국 8년</p>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4	20% ~ 50%	57	20% 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4-48.7	80% ~ 130%	42.7	30% ~ 80%	38.0	30% 이하	33.3	<p>○ 최상위구간 감축률(70%) 제시 - 선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75% 초과</td> <td>70</td> </tr> <tr> <td>50% ~ 75%</td> <td>64</td> </tr> <tr> <td>20% ~ 50%</td> <td>57</td> </tr> <tr> <td>20% 이하</td> <td>50</td> </tr> </tbody> </table> <p>- 개도국 감축률</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간경계</th> <th>감축률(%)</th> </tr> </thead> <tbody> <tr> <td>130% 초과</td> <td>46.7</td> </tr> <tr> <td>80% ~ 130%</td> <td>42.7</td> </tr> <tr> <td>30% ~ 80%</td> <td>38.0</td> </tr> <tr> <td>30% 이하</td> <td>33.3</td> </tr> </tbody> </table> <p>○ 이행기간 연장 - 개도국 10년(1단계)</p>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 ~ 75%	64	20% ~ 50%	57	20% 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 ~ 130%	42.7	30% ~ 80%	38.0	30% 이하	33.3
	성진국		개도국																																																																											
구간경계	감축률	구간경계	감축률																																																																											
0~20/30	20~65	0~20/50	15~65																																																																											
20/30~40/60	30~75	20/50~40/100	20~75																																																																											
40/60~60/90	35~85	40/100~60/150	25~85																																																																											
60/90%이상	42~90	60/150%이상	30~90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2-65																																																																													
20% ~ 50%	55-60																																																																													
20% 이하	48-52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66-73																																																																													
50% ~ 75%	64																																																																													
20% ~ 50%	57																																																																													
20% 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4-48.7																																																																													
80% ~ 130%	42.7																																																																													
30% ~ 80%	38.0																																																																													
30% 이하	33.3																																																																													
구간경계	감축률(%)																																																																													
75% 초과	70																																																																													
50% ~ 75%	64																																																																													
20% ~ 50%	57																																																																													
20% 이하	50																																																																													
구간경계	감축률(%)																																																																													
130% 초과	46.7																																																																													
80% ~ 130%	42.7																																																																													
30% ~ 80%	38.0																																																																													
30% 이하	33.3																																																																													
관세상한	<p>○ 선진국 75 또는 100%, 개도국 150 또는 X%</p>	<p>○ 관세상한선진국 100%, 개도국 150(%)에 대한 일부 품목 적용 배제 - 특별품목 : 보상이 상환적용 배제 - 민감품목 : 관세상한 적용을 배제하되 TRQ를 0.5% 추가 증량 * 개도국의 경우는 TRQ 0.33% 증량 - 비민감품목 : 상환적용 예외범위를 1.2%로 한정하면서 추가 부담 규정 * 모든 민감품목에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해당 세번의 관세감축 이행기간 2년 단축 or 관세감축률 5%p 추가</p>	<p>○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관세상한 적용 배제 및 보상 규정은 동일 ○ 비민감품목의 상환적용 배제문제는 ()으로 처리, 미해결쟁점으로 남겨둠 - 상환적용 예외범위 : 1% - 보상방안 : 전체 민감품목에 대해 TRQ를 0.5% 추가증량하거나, or 해당 비민감품목의 이행기간 2년 단축 or 관세감축률 10%p 추가</p>																																																																											

■ 표 2-8. 계속

쟁점	<p>팔코너 의장조인('0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 : 선진국 1~15%, 개도국 선진국대비 [1.5배] 대우 : TRQ 증량기준(양허수준, 수입량, 소비량) 향후 논의 	<p>세부원칙 초안('07.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위 : 전체 세번의 4% 또는 6%(개도국은 1/3 추가) 대우 : TRQ 증량은 국내소비량의 3~6% 	<p>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 전체 세번의 4 or 6% TRQ 증량 소비량의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증량은 이행치널 1/4, 3년간 증량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개도국에 대해 TRQ 증량의 옵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감축을 적용하되 3년 연장 - 구간감축률의 3/4 적용하되 2년 단축 (단, 민감품목수의 2/3에 한정) 소비량 계산방식 최근 논의내용 반영 	<p>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수 및 TRQ 증량 단일수치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4%, TRQ 증량 소비량의 4% * 개도국은 개수 1/3 추가, TRQ는 2/3수준 개도국에 대한 이행기간 조정옵션을 추가 인정하되, 이행기간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감축률의 2/3를 적용하되, 이행기간 3년 적용 (단, 전체 민감 품목의 1/2로 한정) · 1/2적용+이행기간 2년(단, 1/3로 한정) · 1/3적용+이행기간 1년(단, 1/4로 한정) 																	
시																					
장	<p>범위: 선진국 5개 세번 또는 20%</p> <p>대우: [관세장환·TRQ면제], 1/2 감축면제·1/4, 5%감축·1/4, 10%감축</p>	<p>범위 : 민감품목보다 크나 추후 집중논의</p> <p>대우 : 좌동</p>	<p>개수 : 10-18%</p> <p>6% 감축면제 또는 감축면제불가</p> <p>전체 SP를 평균 10-14% 감축</p>	<p>개수 및 평균감축률 등 단일수치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수 12%, 평균 11% 감축, 감축면제 범위 5% 																	
절	<p>대상품목 및 규제조치는 향후 협상과제</p>	<p>국내 생산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추후 집중 논의</p> <p>발동기준에 있어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모두 인정하되 동시에 발동할 수 없으며 발동횟수 제한</p> <p>발동기간은 당해연도 말 또는 특정품목의 경우는 12개월 허용</p>	<p>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p> <table border="1" data-bbox="652 564 776 882"> <thead> <tr> <th rowspan="2">발동기준</th> <th colspan="2">추가관세</th> </tr> <tr> <th>최고</th> <th>평균</th> </tr> </thead> <tbody> <tr> <td>물량 기준 SSM</td> <td>11%~15%</td> <td>11%~15%</td> </tr> <tr> <td>가격 기준 SSM</td> <td>15% 초과</td> <td>15% 초과</td> </tr> </tbody> </table>	발동기준	추가관세		최고	평균	물량 기준 SSM	11%~15%	11%~15%	가격 기준 SSM	15% 초과	15% 초과	<p>UR 양허관세 상한적용 SSM 발동요건은 3차수정안과 동일</p> <p>UR 양허관세 초과가능 SSM관련 논의 내용은 별도문서로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품목수 : 전체 세번의 2.5% - 발동기준 및 추가관세 <table border="1" data-bbox="776 251 874 564"> <thead> <tr> <th>발동기준</th> <th>추가관세</th> </tr> </thead> <tbody> <tr> <td>최고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td> <td>최고 8%p 증 높은 것</td> </tr> <tr> <td>140% 초과</td> <td>50% or 12%p</td> </tr> </tbody> </table>	발동기준	추가관세	최고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	최고 8%p 증 높은 것	140% 초과	50% or 12%p
발동기준	추가관세																				
	최고	평균																			
물량 기준 SSM	11%~15%	11%~15%																			
가격 기준 SSM	15% 초과	15% 초과																			
발동기준	추가관세																				
최고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20%	최고 8%p 증 높은 것																				
140% 초과	50% or 12%p																				
근	<p>SSM</p>	<p>UR 양허관세 초과 가능 SS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품목수 : 2.6개 품목 - 초과가능수준(cap) : DDA 양허관세의 15% 또는 15%p 증 높은 것 적용 * 발동기준 및 규제조치는 위와 동일 	<p>발동기간 :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발동 제한 	<p>발동기간 : 4.8개월(단, 2.4개월에 한하여 연도초과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동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국내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경우 발동 제한 																	

■ 표 2-8. 계속

쟁점	팔코너 의장조인('06.6)	세부원칙 조인('07.7)	세부원칙 3차 수정안('08.7)	세부원칙 4차 수정안('08.12)
SSG	○ 철폐 또는 축소	○ 이행기간만 철폐 또는 민감품목 수단들 유지	○ 산전국 : 모두 철폐 or 1.5%로 축소 ○ 개도국 : 3%로 축소 * 발동기준 및 구체적조치는 현행 유지	○ 산전국: 이행첫날 1%로 축소, 7년간 철폐 * 단, UR양허관계 조과 금지 ○ 개도국: 이행첫날에 2.5%로 축소
	○ [쿼터내 양허관계는 II] 퍼센트 감축한다.] [철폐한다.]	○ In-quota 관세감축율은 구간별 감축용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평균 감축을 계산시 미산입	○ 산전국: 50-70%감축(단,0-15% 상한적용) - 단, 5%이하 관세는 철폐 ○ 개도국: 산전국의 1/2(단, 상한 미적용)	○ 산전국: 50%감축(단, 상한 10%적용) * 단, 이행첫날 17.5% 이하로 감축하며 5%이하 관세는 철폐 ○ 개도국: 15%감축(단, 상한 미적용) * 단, 감축연계 해당 특명품목은 쿼터내 관세도 감축면제
	TRQ 관리 방안	○ 원 제안자들을 중심으로 원칙 (discipline) 개발 필요	○ 미소진 쿼터 배카니즘을 제시 * 3년 연속 소진율이 65% 이하일 경우 TRQ 관리방식을 신속한 or 비조정적 허가방식으로 변경	○ 미소진 쿼터 배카니즘관련, 개도국의 경우는 TRQ 관리방식 전환 외의 다른 방식 허용 도입
	관세 단순화	○ 모든 양허관계는 증가세(또는 중앙세 및 복합세)로 단순화 ○ 모든 양허관계는 증가세(또는 중앙세 및 복합세)로 단순화 ○ 현재보다 더 복잡한 방식은 안되며, complex matrix tariff는 폐지 또는 최소화 투명하고 검증가능한 수준으로 단순화	○ 모든 관세율 100% 증가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으로 처리 (삭제 가능장 제시)	○ 모든 관세를 100% 증가세로 전환, or 90%를 증가세로 전환(단, 이행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00% 증가세 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국내 보조	○ 보조금 감축률(%) 국가 OTDS AMS EU 70~80% 70~83% 미국·일본 53~75% 60~70% 그외 국가 31~70% 37~60% ○ OTDS는 이행첫해 20% down-payment ○ De minimis는 상한선정('95~'00년 또는 '99~'01년) ○ De minimis는 50~80% 감축, 이행첫해 적용 또는 단계적 감축	○ 보조금 감축률(%) 국가 OTDS AMS EU [75] [85] % [70] % 미국·일본 [66] [73] % [60] % 그외 국가 [50] [60] % [45] % ○ 품목별AMS 상한은 '95~'00년 기준 ○ De minimis는 최소 50% 또는 60% 감축, 이행첫해 적용 또는 단계적 감축	○ 보조금 감축률(%)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75][85] 70 70 미국·일본 [66][73] 60 50 기타국가 [50][60] 45 45 개도국 [33.3][40] 30 33.3	○ OTDS 감축률 단일수치 제시 국가 OTDS AMS De minimis EU 80 70 미국·일본 70 60 50 기타국가 55 45 개도국 36.7 30 33.3
	○ 이행기 기본들은 유지하되 일부요건 변경 여부와 개도국 우대조항 신설내용은 향후 협상과제	○ 일반서비스, 공공비축, 직접지불, 재해지원 등 일부내용 수정, 개도국 우대조항 반영	○ 직접지불제에 있어 기준년도를 고정 불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변경 인정 ○ 개도국에 대해서는 일부 신속성 인정	○ 4차 수정안과 동일

제3장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석 및 평가

1. 국내보조

국내보조분야 협상의 기본원칙은 허용대상보조(green box)를 제외한 모든 농업보조를 감축하는 것으로 이전 UR 농업협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기존 감축대상보조(AMS)를 감축하는 이외에 감축대상보조와 최소허용보조(DM), 그리고 블루박스(BB)를 모두 합한 무역왜곡 보조총액(OTDS)을 감축해야 하고, 동시에 개별 품목에 대한 감축기준도 추가되어 농업보조금 감축의 규율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가. 감축대상보조(AMS)

1)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총 AMS(Total AMS) 감축은 UR 농업협정 이행에 따라 양허된 총 AMS 수준에 따라 감축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UR에서 양허한 최종연도 총 AMS는 1조 4,900억 원으로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3억 달러이고¹⁹⁾,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AMS 감축률은 30(개도국기준)~45%(선진국 기준)가 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경우 총 AMS를 30% 감축하되, 이것을 8년에 걸쳐 9단계로 균등 감축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매 단계 감축률은 3.3%(=30%÷9)가 되고, 이행 첫날 3.3%, 그 해 말에 다시 3.3%를 감축하게 되어 이행 첫째 연도에 총 6.6%를 감축하게 되고, 2년차부터는 매년 3.3%를 감축하게 된다. 반면 선진국일 경우에는 45%를 5년에 걸쳐 6단계로 균등 감축하게 되며, 따라서 매 단계의 감축률은 7.5%이며(=45%÷6), 이행 첫날 7.5%, 그 해 말에 7.5%를 감축하고, 2년차부터는 매년 7.5%를 감축하게 된다.

수정안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총 AMS 한도 변화를 보면 <표 3-1>과 같다. 선진국일 경우 이행 첫날 총 AMS 한도는 1조 3,783억 원, 1년차 말에는 1조 2,665억 원이 되며, 마지막 5년차에는 8,19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개도국일 경우 이행 첫날 총 AMS 한도는 1조 4,403억 원이 되며, 1년차 말에는 1조 3,907억 원이 되고, 마지막 8년차에는 1조 43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총 AMS 사용 실적을 보면 주로 쌀 1개 품목에 대한 보조로 사용되어 향후 쌀에 대한 보조계획이 DDA 이행에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쌀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총 AMS 사용실적으로 검토하면 2004년의 경우 총 AMS 사용 실적이 1조 4,584억 원이 되어, DDA 이행 초기 한도인 1조 2,665억~1조 3,907억 원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2005년부터 쌀 수매제도가 폐지되면서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만

19) 우리나라는 2004년이 UR의 최종 이행연도이고 이에 따라 UR 최종 양허수준을 기본으로 감축하기 때문에 2004년 연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총 AMS는 약 13.03억 달러가 된다(2004년 연평균 환율(매매기준율, 최종 평균) 1,143.27원/달러 적용)

표 3-1. DDA 이행에 따른 총 AMS 한도 변화

구 분	선진국의 경우			개도국의 경우		
	실적액 (억 원)	감축률 (%)	한도액 (억 원)	실적액 (억 원)	감축률 (%)	한도액 (억 원)
2004	14,584		14,900	14,584		14,900
2005	3,598			3,598		
2006	11,956			11,956		
이행 1년차	첫날	7.5	13,783		3.3	14,403
	마지막날		12,665		6.7	13,907
이행 2년차		22.5	11,548		10.0	13,410
이행 3년차		30.0	10,430		13.3	12,913
이행 4년차		37.5	9,313		16.7	12,417
이행 5년차		45.0	8,195		20.0	11,920
이행 6년차					23.3	11,423
이행 7년차					26.7	10,927
이행 8년차					30.0	10,430

이 총 AMS로 계산되어, 2005년의 총 AMS 실적은 약 3,600억 원으로 급감했다. 2006년에는 쌀 가격이 15%나 급락하였고, 이에 따라 변동직불금이 크게 늘어나 2006년 총 AMS 실적은 약 1조 1,956억 원으로 급증했다. 결국 쌀에서 2006년도와 같은 돌발적인 가격급락이 없는 한 적어도 DDA 농업협상의 이행은 초기가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쌀에 대한 AMS를 블루박스 보조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DDA 이행에 안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²⁰⁾

2) 품목특정 AMS

4차 수정안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품목특정 AMS의 상한은 기준기간

2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블루박스 부분을 참조

(1995~2000년) 동안 실제 지급된 품목별 AMS의 평균이 된다. 그러나 i) 기준기간 동안 최소허용보조(DM) 수준을 초과하는 품목특정 AMS가 없다가 이후 새롭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준기간 이후에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고, 이 사실을 WTO에 통보한 경우나 혹은 ii) 기준기간 동안은 물론 그 이후에도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품목에는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즉 위의 i)의 경우는 세부원칙이 합의되기 직전 가장 최근 2년간의 실제 지급되었다고 통보한 품목특정 AMS의 평균을 인정하고 있으며, ii)의 경우에는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상한 기준이었던 해당 품목 생산액의 5%가 인정된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1995~2000년 동안 최소허용보조 수준(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액의 10%) 이상의 AMS를 지급한 실적이 있는 쌀, 보리, 옥수수, 유채 등 4개 품목은 1995~2000년 사이 AMS 지급실적이 해당품목의 AMS 상한이 된다. 또한 1995~2000년 사이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상의 AMS 실적이 없었으나 그 이후인 2001~06년에 최소허용보조 수준(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액의 10%) 이상의 AMS 지급실적이 있는 품목으로는 콩과 맥주보리가 해당된다. 한편 기준기간(1995~2000)은 물론 그 이후에도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상의 품목특정 AMS를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모든 품목들은 1995~2000년 품목별 최소허용보조 수준만큼의 AMS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정에서 개도국을 인정 받았고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 수준은 생산액의 10%이었으므로 쌀, 보리, 옥수수, 유채(콩, 맥주보리) 등 6개 품목을 제외한 다른 모든 품목에 대해서는 1995~2000년 평균 생산액의 10%를 품목특정 AMS의 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품목별로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의 AMS 수준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품목별 AMS 상한(선진국, 억 원)

품 목 명	지급액 평균	생산액의 10%	최근 2년 지급액 평균	최적선택
	1995~2000		2005~06년 지급액 평균	
쌀	17,450.9			17,450.9
보리	476.3			476.0
옥수수	49.7			49.7
유채	11.3			11.3
콩	61.7	284.0	1,041.9	1,041.9
맥주보리	7.0	109.7	251.6	251.6
감자	1.7	288.1	-	288.1
고구마	0.5	158.8	-	158.8
소	702.3	1,913.5	-	1,913.5
돼지	102.3	2,119.5	-	2,119.5
닭	0.9	793.4	-	793.4
우유	0.0	1,099.4	-	1,099.4
계란	1.9	652.9	-	652.9
고추	23.8	1,114.5	-	1,114.5
마늘	94.8	848.4	-	848.4
양파	29.2	219.2	-	219.2
파	4.2	294.9	-	294.9
당근	2.9	103.5	-	103.5
생강	1.0	75.5	-	75.5
기타채소류	83.1	3,911.9	-	3,911.9
버섯류	16.8	454.6	-	454.6
인삼	71.8	319.0	-	319.0
화훼류	16.7	590.9	-	590.9
사과	25.8	661.4	-	661.4
배	7.4	416.7	-	416.7
단감	1.8	249.4	-	249.4
참다래	2.3	20.4	-	20.4
감귤	3.1	657.1	-	657.1
복숭아	3.5	198.3	-	198.3
포도	2.7	533.8	-	533.8
유자	1.7	20.9	-	20.9
밤	33.0	217.4	-	217.4
대추	0.3	72.9	-	72.9
약용작물	0.9	242.3	-	242.3
기타곡물	8.3	73.1	-	73.1
기타과실	0	157.1	-	157.1
기타임산물	0	760.2	-	760.2
기타축산물	0	643.0	-	643.0
기타작물	0	1,066.6	-	1,066.6

단, 여기서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상한 기준을 품목 생산액의 10%를 설정했다. 원래 UR에서 선진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은 해당 품목 생산액의 5%였다. 그러나 UR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이었기 때문에 설정 DDA에서 선진국이 된다고 해도 감축의무의 출발점은 개도국 기준이어야 하므로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UR 개도국 조건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개도국이 될 경우 품목별 AMS 상한은 다음의 3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Box 5 참조). 다만 (a)의 방법을 선택하여 품목특정 AMS의 한도를 설정할 경우 기준기간(한국의 경우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에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기준기간 실제 지급한 AMS 실적이 AMS 한도가 된다. 그 외 모든 품목들은 세부원칙이 채택되기 직전 2년간의 평균 AMS 지급실적이나 또는 기준기간(1995~2000 혹은 1995~2004)동안의 평균 생산액의 10%를 품목특정 AMS 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

■ Box 5. 개도국의 품목특정 AMS 감축방법 ■

- (a)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통보된 AMS 지급실적의 평균
- (b)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평균 품목 생산액의 20%
- (c) DDA 이행 당해 연도 총 AMS 상한의 20%

이행계획서 작성은 주요 품목에 대해 높은 상한이 설정되는 방식을 채택하여 품목별 AMS로 양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품목별 AMS의 실제 지급액은 해당 연도별 총 AMS 상한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품목별 AMS 한도는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의 신축성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품목특정 AMS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c)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 품목특정 AMS의 한도를 설정할 경우 모든 품목에 1년차에는 2,881억 원의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총 AMS가 매년 감축되기 때문에 품목특정 AMS 한도도 이에 따라 줄어들어 마지막 8년차에는 2,086억 원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단점이 있다(표 3-3 참조).

방법 (b)는 기준기간 생산액의 20%를 한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방법 (c)와 비교하면 쌀, 소, 돼지, 기타채소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방법 (c)에 따른 최대치가 높게 나타났으나, 방법 (c)는 쌀의 AMS 한도가 2,880억 원으로 감소하여 채택하기 어렵다. 결국 방법 (b)와 (c)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쌀의 AMS 한도 때문에 방법 (b)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표 3-3>의 최적선택 1은 방법 (b)를 채택한 경우이다.

한편 (a)방식을 채택한다면 기준기간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상이었던 쌀, 맥주보리, 옥수수, 유채 등 4개 품목은 실제 AMS 지급실적이 적용되고, AMS가 최소허용보조 수준 이하였던 나머지 품목 중 2006년에 AMS 수준이 크게 늘어난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실적을 적용할 수 있다. 그 외 모든 품목은 기준연도 생산액의 10%를 적용해야 한다.

먼저 생산액의 10%를 적용하는 경우 1995~2000년 기준과 1995~2004년 기준을 비교하면 쌀을 포함한 21개 품목은 1995~2000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한도가 높아지고, 18개 품목은 그 반대이므로 1995~2000년을 기준연도로 선택하였다. 이에 따라 방안(a)를 선택했을 경우 품목별로 상한을 비교해 최대치를 선택하면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되며, 맥주보리와 콩은 최근 2년간 실제 지급액을 그리고 나머지 모든 품목은 생산액의 10%를 선택하는 경우가 되고 <표 3-4>의 최적선택 2는 이를 표시한 것이다.

표 3-3. 방법 (b)와 (c)의 품목별 AMS 상한(개도국, 억 원)

품 목 명	(b) 생산액의 20%		(c) 그 해 Total AMS의 20%		최적선택
	1995~2000	1995~2004	1년차	8년차	
쌀	18099.3	18675.0	2880.7	2086.0	18675.0
보리	259.1	283.9	2880.7	2086.0	283.9
옥수수	75.0	77.2	2880.7	2086.0	77.2
유채	3.3	2.9	2880.7	2086.0	2.9
콩	568.0	592.0	2880.7	2086.0	592.0
맥주보리	219.4	206.7	2880.7	2086.0	206.7
감자	576.2	511.7	2880.7	2086.0	511.7
고구마	317.6	312.7	2880.7	2086.0	312.7
소	3827.0	4134.8	2880.7	2086.0	4134.8
돼지	4239.0	4935.1	2880.7	2086.0	4935.1
닭	1586.8	1588.4	2880.7	2086.0	1588.4
우유	2198.8	2518.6	2880.7	2086.0	2518.6
계란	1305.8	1432.0	2880.7	2086.0	1432.0
고추	2229.0	2109.0	2880.7	2086.0	2109.0
마늘	1696.7	1477.8	2880.7	2086.0	1477.8
양파	438.3	487.3	2880.7	2086.0	487.3
파	589.7	677.3	2880.7	2086.0	677.3
당근	207.0	188.6	2880.7	2086.0	188.6
생강	150.9	127.6	2880.7	2086.0	127.6
기타채소류	7823.7	8674.7	2880.7	2086.0	8674.7
비섯류	909.2	923.3	2880.7	2086.0	923.3
인삼	638.0	797.8	2880.7	2086.0	797.8
화훼류	1181.8	1328.6	2880.7	2086.0	1328.6
사과	1322.8	1186.3	2880.7	2086.0	1186.3
배	833.5	790.4	2880.7	2086.0	790.4
단감	498.8	500.6	2880.7	2086.0	500.6
참다래	40.9	41.5	2880.7	2086.0	41.5
감귤	1314.3	1116.7	2880.7	2086.0	1116.7
복숭아	396.5	379.3	2880.7	2086.0	379.3
포도	1067.6	1085.4	2880.7	2086.0	1085.4
유자	41.8	35.1	2880.7	2086.0	35.1
밤	434.9	430.9	2880.7	2086.0	430.9
대추	145.8	138.4	2880.7	2086.0	138.4
약용작물	484.6	579.7	2880.7	2086.0	579.7
기타곡물	146.3	139.0	2880.7	2086.0	139.0
기타과실	314.2	352.7	2880.7	2086.0	352.7
기타임산물	1520.3	1652.6	2880.7	2086.0	1652.6
기타축산물	1286.0	1471.8	2880.7	2086.0	1471.8
기타작물	2133.2	2172.1	2880.7	2086.0	2172.1
Total AMS 한도					
이행첫날	14403.3	14403.3	14403.3	14403.3	14403.3
8년차	10430.0	10430.0	10430.0	10430.0	10430.0

표 3-4. 방법 (a)의 품목별 AMS 상한(개도국, 억 원)

품 목 명	지급액 평균 기준		최근 2년 평균기준	생산액의 10%		최적선택 ²
	1995~2000	1995~2004		1995~00	1995~04	
쌀	17450.9	16353.9				17450.9
보리	476.3	464.2				476.3
옥수수	49.7	37.0				49.7
유채	11.3	9.7				11.3
콩	61.7	137.3	1041.9	284.0	296.0	1041.9
맥주보리	7.0	6.4	251.6	109.7	103.3	251.6
감자	1.7	1.0	-	288.1	255.9	288.1
고구마	0.5	0.5	-	158.8	156.4	158.8
소	702.3	614.7	-	1913.5	2067.4	1913.5
돼지	102.3	62.9	-	2119.5	2467.6	2119.5
닭	0.9	0.5	-	793.4	794.2	793.4
우유	0.0	297.6	-	1099.4	1259.3	1099.4
계란	1.9	1.1	-	652.9	716.0	652.9
고추	23.8	24.0	-	1114.5	1054.5	1114.5
마늘	94.8	92.4	-	848.4	738.9	848.4
양파	29.2	35.8	-	219.2	243.6	219.2
파	4.2	4.7	-	294.9	338.6	294.9
당근	2.9	6.6	-	103.5	94.3	103.5
생강	1.0	0.6	-	75.5	63.8	75.5
기타채소류	83.1	107.5	-	3911.9	4337.3	3911.9
버섯류	16.8	12.8	-	454.6	461.6	454.6
인삼	71.8	50.2	-	319.0	398.9	319.0
화훼류	16.7	12.4	-	590.9	664.3	590.9
사과	25.8	35.4	-	661.4	593.1	661.4
배	7.4	29.3	-	416.7	395.2	416.7
단감	1.8	5.3	-	249.4	250.3	249.4
참다래	2.3	1.6	-	20.4	20.7	20.4
감귤	3.1	8.7	-	657.1	558.4	657.1
복숭아	3.5	3.6	-	198.3	189.7	198.3
포도	2.2	1.3	-	533.8	542.7	533.8
유자	1.7	1.0	-	20.9	17.5	20.9
밤	33.0	26.2	-	217.4	215.4	217.4
대추	0.3	0.2	-	72.9	69.2	72.9
약용작물	0.9	0.6	-	242.3	289.9	242.3
기타곡물	8.3	5.5	-	73.1	69.5	73.1
기타과실	0.0	2.5	-	157.1	176.4	157.1
기타임산물	0	0	-	760.2	826.3	760.2
기타축산물	0	0	-	643.0	735.9	643.0
기타작물	0	0	-	1066.6	1086.3	1066.6
총 AMS 한도						
이행첫날	14403.3	14403.3	14403.3	14403.3	14403.3	14403.3
8년차	10430.0	10430.0	10430.0	10430.0	10430.0	10430.0

표 3-5. 방법 (a)와 (b)의 품목별 AMS 상한(개도국, 억 원)

품 목 명	최적선택1 (방법 b)	최적선택2 (방법 a)	최적선택 (최종)
쌀	18675.0	17450.9	18675.0
보리	283.9	476.3	283.9
옥수수	77.2	49.7	77.2
유채	2.9	11.3	2.9
콩	592.0	1041.9	592.0
맥주보리	206.7	251.6	206.7
감자	511.7	288.1	511.7
고구마	312.7	158.8	312.7
소	4134.8	1913.5	4134.8
돼지	4935.1	2119.5	4935.1
닭	1588.4	793.4	1588.4
우유	2518.6	1099.4	2518.6
계란	1432.0	652.9	1432.0
고추	2109.0	1114.5	2109.0
마늘	1477.8	848.4	1477.8
양파	487.3	219.2	487.3
파	677.3	294.9	677.3
당근	188.6	103.5	188.6
생강	127.6	75.5	127.6
기타채소류	8674.7	3911.9	8674.7
버섯류	923.3	454.6	923.3
인삼	797.8	319.0	797.8
화훼류	1328.6	590.9	1328.6
사과	1186.3	661.4	1186.3
배	790.4	416.7	790.4
단감	500.6	249.4	500.6
참다래	41.5	20.4	41.5
감귤	1116.7	657.1	1116.7
복숭아	379.3	198.3	379.3
포도	1085.4	533.8	1085.4
유자	35.1	20.9	35.1
밤	430.9	217.4	430.9
대추	138.4	72.9	138.4
약용작물	579.7	242.3	579.7
기타곡물	139.0	73.1	139.0
기타과실	352.7	157.1	352.7
기타임산물	1652.6	760.2	1652.6
기타축산물	1471.8	643.0	1471.8
기타작물	2172.1	1066.6	2172.1
총 AMS 한도			
이행첫날	14403.3	14403.3	14403.3
8년차	10430.0	10430.0	10430.0

마지막으로 최적 선택된 최적선택 1과 2를 비교하면 보리, 유채, 콩, 맥주보리 이외에는 모든 품목에서 방법 (b)의 한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따라서 쌀, 축산, 과일, 채소 등 주요 품목의 생산액, 보조금 지급실적, 향후 정책방향, 국내 이해단체에 대한 설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품목별 AMS 상한설정은 방법 (b) (기준기간 동안 평균 해당 품목 생산액의 20%)를 채택하되 기준기간으로서는 1995~2004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기준기간은 쌀을 포함한 21개 품목은 1995~2004년으로 하는 것이 한도가 높아지나, 고추, 마늘, 사과 등은 1995~2000년으로 하는 것이 한도가 높아지므로 사전에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다.

나. 최소허용보조(De-minimis: DM)

UR 농업협상에서 최소허용보조(DM)의 기준은 선진국의 경우 농업총생산액(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5%(개도국은 10%)였다.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50% 감축하여 선진국의 경우 농업총생산액(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2.5%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행과 동시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는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인 농업총생산액(또는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를 33.3%(선진국 감축률인 50%의 2/3) 감축하여 농업총생산액(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6.7%로 낮추되, 이를 3년에 걸쳐 균등 이행토록 하고 있다. 단, 위와 같은 최소허용보조의 기준 인하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에 설정된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양허수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최소허용보조를 줄여야 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표 3-6).²¹⁾

▮ 표 3-6.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 감축률 ▮

	품목불특정		품목특정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기준감축율(%)	50	33.3	50	33.3
기준DM (생산액의 %)	5	10	5	10
이행 첫날 (생산액의 %)	2.5	8.9	2.5	8.9
이행 1년차 (생산액의 %)	2.5	8.9	2.5	8.9
이행 2년차 (생산액의 %)	2.5	7.8	2.5	7.8
이행 3년차 (생산액의 %)	2.5	6.7	2.5	6.7

한편 우리나라의 최소허용보조의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품목특정 최소허용보조 지급액은 농업총생산액 대비 0.3%,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의 지급액도 1.2%에 불과하여 실제 지급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이 낮아진다고 해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들어 보조금이 증가하고 있는 콩(2006년 품목 생산액 대비 50%), 그리고 연도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최소허용보조 수준을 보이고 있는 소(1997년 9.3%), 우유(2002년 9.1%), 마늘(2002년 8.2%), 양파(2006년 4.6%) 등은 새롭게 설정되는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이들 품목에 대한 보조는 총 AMS 및 품목별 AMS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21)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이 될 경우 감축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는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10%로 시작하여 50%를 감축한 농업총생산액(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5.0%가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선진국에 맞추어 5%에서 시작하여 50% 감축한 농업총생산액(또는 해당품목 생산액)의 2.5%가 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더욱 불리한 경우를 상정하고, 최소허용보조의 기준을 5%에서 시작하여 2.5%로 감축하는 경우만을 생각하였다.

다. 블루박스보조(Blue Box: BB)

DDA 농업협상에서 새롭게 도입된 ‘신규 블루박스(New BB)’는 특정 생산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존 블루박스 보다 적용조건이 엄격하고, 고정불변의 면적(Acres)이 아니라 기준(Base)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블루박스가 되기 위해서는 고정불변 기준과 단수(fixed and unchanging areas and yields)에 기초하되 동시에 고정불변 생산 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이거나, 혹은 축산물의 경우 고정불변 사육두수에 기초하되 동시에 고정불변 생산수준의 85% 이하에 대한 직접지불이어야 한다.²²⁾

1) 블루박스 총액 상한(Overall BB)

선진국의 경우 블루박스 총액 상한은 1995~2000년 생산액의 2.5%이고, 이행 첫날부터 적용된다. 반면 개도국은 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5%로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단, DDA 농업협상에서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DDA 이행 직전 5년 평균 생산액의 5%를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급가능 블루박스 보조를 계산해 보면 먼저 선진국이 될 경우, 1995~2000년 우리나라 농업총생산액이 30조 5,605억 원이기 때문에 이것의 2.5%인 7,640억 원이 블루박스보조 총액상한이 된다. 개도국인 경우 우리나라의 1995~2000년 또는 1995~2004년 평균 농업 총생산액이 각각 30조 5,605억 원, 32조 681억 원이기 때문에, 이의 5%(블루박스 총액 상한)인 1조 5,280억 원 또는 1조 6,034억 원이 블루박스보조 상한이 된다.

한편 감축대상보조를 블루박스보조로 전환하는 품목이 있는 경우 잠정적으로 2002~2006년 생산액의 5%를 설정하면 블루박스 총액 상한은 약 1조 7,641억 원이 된다(표 3-7).

22) 기존 블루박스는 당해 생산량 전체에 대하여 지급이 가능했다.

표 3-7. 우리나라의 블루박스 총액 상한

기준연도	선진국		개도국	
	1995~2000	1995~2000	1995~2004	AMS에서 BB로 전환하는 품목 존재 (2002~2006)
생산액(억 원)	305,604.8	305,604.8	320,680.6	352,823.2
블루박스 총액 한도율(%)	2.5	5	5	5
한도액(억 원)	7,640.1	15,280.2	16,034.0	17,641.2
이행 첫날(억 원)	7,640.1	15,280.2	16,034.0	17,641.2

2)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경우,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한도는 기준기간(1995~2000년)동안의 평균 지급실적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준기간(1995~2000년)동안 품목특정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품목특정 블루박스 상한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감축대상 보조인 AMS를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앞에서 설정한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나(품목특정 AMS의 품목특정 블루박스 보조로의 전환에 따라), 블루박스 총액 상한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편 개도국의 경우에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준기간(1995~2004년) 동안 AMS를 지급한 실적이 없고, 신규 AMS를 설정하지 않아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는 AMS가 없는 품목이라도 신규로 품목특정 블루박스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한도는 블루박스 총액 상한의 10%이내 이하여야 하고, 신규로 설정된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총액은 블루박스 총액상한(overall BB)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품목특정 블루박스보조 상한액을 계산해 보면, 선진국의 경우 품목특정 AMS의 한도를 품목특정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상한은 191억 원

을 초과할 수 있으나, 블루박스 총액 상한인 7,640억 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표 3-8).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면 기준기간을 1995~2000년으로 할 때 품목특정 블루박스보조 총액 상한은 1조 5,280억 원이 되므로(표 3-7) 이 중에서 10%인 1,528억 원이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상한이 된다. 또한 이렇게 개설된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합은 블루박스보조 총액 상한의 30%인 4,584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기준기간을 1995~2004년으로 할 경우, 블루박스 총액 상한은 1조 6,034억 원이 되므로(표 3-7) 이 중 10%인 1,603억 원이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보조의 상한이 되며, 이렇게 개설된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의 합은 블루박스보조 총액 상한의 30%인 4,8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기준을 이용해 만일 쌀을 블루박스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블루박스 총액 상한은 1조 7,641억 원이 되므로(표 3-7), 신규 블루박스의 상한은 1,764억 원이 되고, 신규 블루박스 합의 한도는 5,292억 원이 된다(표 3-8).

■ 표 3-8.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 및 신규 품목특정 블루박스합의 한도 ■

	신규 품목특정 BB 한도(억 원)				신규 품목특정 BB 합의 한도(억 원)			
	선진국	개도국			선진국	개도국		
기준 년도	1995/00	1995/00	1995/04	2002/06	1995/00	1995/00	1995/04	2002/06
기준액	7,640	15,280	16,034	17,641	7,640	15,280	16,034	17,641
한도 비율	2.5%	10.0%	10.0%	10.0%	5.0%	30.0%	30.0%	30.0%
한도액	191	1,528	1,603	1,764	382	4,584	4,810	5,292

결국 우리나라는 블루박스를 지급한 실적은 없지만 기준기간 이후 감축 대상보조 지급실적 또는 생산액에 기초하여 품목특정 AMS의 상한을 설정할 수 있고(앞의 품목특정 AMS 참조), 이를 다시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행계획서 작성·제출에 앞서 어떠한 품목의 감축대상보조를

블루박스 보조로 바꿀 것인지를 미리 결정해야 한다. 일단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이미 AMS를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블루박스를 설정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보조는 품목별 AMS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신규 블루박스 보조로 전환하면 AMS 한도는 포기해야 하며, 이행에 제약이 크고, 또한 신규 블루박스 보조 합의 한도가 382억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많은 품목을 품목특정 블루박스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품목특정 블루박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MS가 없던 품목 가운데 품목특정 AMS 상한이 낮은 당근, 생강, 참다래, 유자, 기타 곡물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표 3-9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995~2004년에 최소허용보조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신규 블루박스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AMS 품목이 된다. 또한 콩은 2004년에만 최소허용보조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으므로 1995~2000년을 기준으로 하면 신규 블루박스 설정이 가능하지만, 1995~2004년을 기준으로 하면 신규 블루박스 설정이 되지 않으므로 보다 제약이 없는 AMS 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때 주의할 것은 신규 블루박스의 품목별 한도가 기준연도 설정에 따라 1,528~1,764억 원이 되고, 이에 따라 신규 블루박스합의 한도도 4,584~5,292억 원이 되므로 품목별 한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콩의 보조금 한도를 되도록 높이려면 1995~2000년을 기준기간으로 설정하고, 콩을 블루박스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블루박스 품목이 되면 AMS가 소멸되므로 보조금 지급방식이 블루박스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부담은 발생한다.

표 3-9. 품목별 블루박스 상한(억 원)

품 목 명	선진국			개도국			
	AMS 한도 전환	신규 BB	선택	AMS 한도 전환	신규 BB		선택
쌀	17450.9		AMS	18675.0			AMS
보리	476.0		AMS	283.9			AMS
옥수수	49.7		AMS	77.2			AMS
유채	11.3		AMS	2.9			AMS
콩	1041.9	191.0	AMS	592.0	1528.0		AMS
맥주보리	251.6	191.0	AMS	206.7	1528.0	1603.4	AMS
감자	288.1	191.0	AMS	511.7	1528.0	1603.4	AMS
고구마	158.8	191.0	AMS	312.7	1528.0	1603.4	AMS
소	1913.5	191.0	AMS	4134.8	1528.0	1603.4	AMS
돼지	2119.5	191.0	AMS	4935.1	1528.0	1603.4	AMS
닭	793.4	191.0	AMS	1588.4	1528.0	1603.4	AMS
우유	1099.4	191.0	AMS	2518.6	1528.0	1603.4	AMS
계란	652.9	191.0	AMS	1432.0	1528.0	1603.4	AMS
고추	1114.5	191.0	AMS	2109.0	1528.0	1603.4	AMS
마늘	848.4	191.0	AMS	1477.8	1528.0	1603.4	AMS
양파	219.2	191.0	AMS	487.3	1528.0	1603.4	AMS
파	294.9	191.0	AMS	677.3	1528.0	1603.4	AMS
당근	7.5	191.0	BB	188.6	1528.0	1603.4	AMS
생강	0	191.0	BB	127.6	1528.0	1603.4	AMS
기타채소류	3911.9	191.0	AMS	8674.7	1528.0	1603.4	AMS
버섯류	454.6	191.0	AMS	923.3	1528.0	1603.4	AMS
인삼	319.0	191.0	AMS	797.8	1528.0	1603.4	AMS
화훼류	590.9	191.0	AMS	1328.6	1528.0	1603.4	AMS
사과	661.4	191.0	AMS	1186.3	1528.0	1603.4	AMS
배	416.7	191.0	AMS	790.4	1528.0	1603.4	AMS
단감	249.4	191.0	AMS	500.6	1528.0	1603.4	AMS
참다래	20.4	191.0	BB	41.5	1528.0	1603.4	BB
감귤	657.1	191.0	AMS	1116.7	1528.0	1603.4	AMS
복숭아	198.3	191.0	AMS	379.3	1528.0	1603.4	AMS
포도	533.8	191.0	AMS	1085.4	1528.0	1603.4	AMS
유자	20.9	191.0	BB	35.1	1528.0	1603.4	BB
밤	217.4	191.0	AMS	430.9	1528.0	1603.4	AMS
대추	72.9	191.0	AMS	138.4	1528.0	1603.4	AMS
약용작물	242.3	191.0	AMS	579.7	1528.0	1603.4	AMS
기타곡물	73.1	191.0	BB	139.0	1528.0	1603.4	AMS
기타과실	157.1	191.0	AMS	352.7	1528.0	1603.4	AMS
기타임산물	760.2	191.0	AMS	1652.6	1528.0	1603.4	AMS
기타축산물	643.0	191.0	AMS	1471.8	1528.0	1603.4	AMS
기타작물	1066.6	191.0	AMS	2172.1	1528.0	1603.4	AMS
합계	40,058.5	6,685		64,135.5	53,480	54,515.6	
BB 총액한도	7640.1	7640.1			15280.1	16034.0	
신규 BB 한도		382.0			4584.1	4810.2	

한편 참다래와 유지는 AMS 지급한도가 작기 때문에 신규 블루박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나머지 품목도 블루박스 품목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소, 돼지, 우유, 고추 등 일부 품목 이외의 모든 품목에서 블루박스한도가 AMS한도 보다 크기 때문에 신규 블루박스로의 전환은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신규 블루박스 합의 한도가 5,292억 원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별 의미가 없고, 이에 따라 한도의 크기를 기준으로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모든 품목의 AMS 한도가 상당한 수준에 있으며, 여기에 쌀을 블루박스 품목으로 전환하면 Total AMS 한도 때문에 여타 품목을 블루박스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줄어든다.

결국 나머지 품목은 블루박스로 전환하기보다 AMS 품목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이 경우 블루박스 요건에 맞추어야 지원방식을 개편해야하는 어려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참다래와 유지는 AMS 한도가 매우 적으므로 신규 블루박스를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무엇보다도 개도국에게 주어진 블루박스 한도의 예외 조항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생산액이 기준기간(1995~2000 혹은 1995~2004)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5% 이상이고, 또한 감축보조(AMS)총액의 80% 이상인 품목에 지급된 경우 품목특정 AMS에서 품목특정 블루박스로 1:1 전환할 수 있으며, 이 때 품목특정 블루박스는 물론 블루박스 총액보조 상한을 초과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이 기준기간 동안 농업총생산액의 약 29%를 차지해 왔으며, 쌀에 대한 AMS가 평균적으로 총 AMS의 약 89%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표 3-10). 즉, 우리나라의 쌀에 대한 AMS는 DDA 이행과 동시에 혹은 이행기간 중에 블루박스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환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블루박스 총액 상한이 초과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블루박스의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현행 쌀에 대한 변동직불제를 기존 블루박스(Old B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생산제한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반면 새로운 신규 블루박스(New BB)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쌀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쌀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 아울러 가격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규정을 기준 생산량(기준 면적과 단수)의 85%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으로 제도변경이 불가피하다.

표 3-10. 우리나라 쌀의 AMS 지급추이

	농업총생산액 (억 원)(A)	쌀 생산액 (억 원) (B)	B/A (%)	총 AMS 상한 (억 원) (C)	쌀 AMS (억 원) (D)	D/C (%)
1995	267,361	67,598	25.3	21,826	20,160	92.4
1996	290,519	86,132	29.6	21,056	19,098	90.7
1997	303,884	91,928	30.3	20,287	18,843	92.9
1998	308,696	91,826	29.8	19,517	15,097	77.4
1999	331,774	100,451	30.3	18,748	15,031	80.2
2000	331,395	105,046	31.7	17,978	16,472	91.6
2001	335,683	107,217	31.9	17,209	15,829	92.0
2002	334,445	95,564	28.6	16,439	15,041	91.5
2003	330,163	88,359	26.8	15,670	14,255	91.0
2004	372,886	99,631	26.7	14,900	13,708	92.0
95~00 평균	305,605	90,497	29.4	19,902	17,450	87.7
95~04 평균	320,681	93,375	29.0	18,363	16,353	89.0

라.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상한

선진국의 무역왜곡보조총액(OTDS)의 감축기준은 (a) 총 AMS 한도, (b)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10%, (c) 1995~2000년 평균 농업총

생산액의 5%의 함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될 경우 기준 OTDS는 (a) Total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b)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10%인 3조 561억 원, (c)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인 1조 5,280억 원의 총합인 6조 741억 원이 된다.

개도국의 경우 기준 OTDS는 기준기간을 1995~2000년으로 정할 경우 (a) Total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b)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0%인 6조 1,121억 원, (c)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인 1조 5,280억 원의 합인 9조 1,301억 원이 된다. 기준기간을 1995~2004년으로 정한다면 OTDS 감축기준은 (a) Total AMS 한도인 1조 4,900억 원, (b) 1995~2004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20%인 6조 4,136억 원, (c) 1995~2000년 평균 농업총생산액의 5%인 1조 6,034억 원의 합인 9조 5,070억 원이 된다.

■ 표 3-11.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기준 ■

	선진국(억 원)		개도국(억 원)		
	1995~2000년 기준			1995~00년 기준	1995~04년 기준
(b) 부문	생산액의 10%	30,560.5	생산액의 20%	61,121.0	64,136.1
(c) 부문	생산액의 5%	15,280.2	생산액의 5%	15,280.2	16,034.0
(a) 부문	총 AMS 한도	14,900.0	총 AMS 한도	14,900.0	14,900.0
합 계		60,740.7	합 계	91,301.2	95,070.2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경우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은 약 52억 달러 (6조 741억 원)로 100억 달러 이하이므로 OTDS의 감축률은 55%가 된다. 그리고 이는 이행 첫날에 25%를 감축하고, 나머지를 5년 균등 감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OTDS 한도는 기준 OTDS 금액인 6조 741억

원에서 이행 첫날 25%를 감축하여 4조 5,555억 원이 되며, 그 이후 매년 6%씩 감축하여 마지막인 5년차에는 2조 7,333억 원이 된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이 되는 경우,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이 1995~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9조 1,301억 원, 1995~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9조 5,070억 원이 된다. 어느 경우나 기준 무역왜곡보조총액이 100억 달러 이하가 되므로 우리나라의 OTDS의 감축률은 55%의 2/3인 37%가 된다. 개도국의 경우 기준 OTDS는 이행 첫날 20%를 감축하고, 나머지는 8년 균등 감축해야 하므로(매년 약 2.1%씩 감축), 우리나라의 OTDS 한도는 기준 OTDS 금액인 9조 1,301억 원(1995~2000년 기준)에서 이행 첫날 20%를 감축하여 7조 3,041억 원이 되며, 그 이후 매년 2.1%씩 감축하여 마지막인 8년차에는 5조 7,824억 원이 된다. 기준기간을 1995~2004년으로 할 경우 기준 OTDS 금액은 9조 5천 70억 원에서 이행 8년차엔 6조 211억 원이 상한이 된다.(표 3-12)

■ 표 3-12. 우리나라의 무역왜곡보조총액 지급 상한액 ■

기준년도	선진국	개도국	
	1995~2000년	1995~2000년	1995~2004년
감축률(%)	55%	36.7%	
기준 금액 (억 원)	60,740.7	91,301.2	95,070.2
이행첫날	45,555.5	73,041.0	76,056.2
1년차	41,911.1	71,138.9	74,075.5
2년차	38,266.6	69,236.7	72,094.9
3년차	34,622.2	67,334.6	70,114.3
4년차	30,977.8	65,432.5	68,133.6
5년차	27,333.3	63,530.4	66,153.0
6년차		61,628.3	64,172.4
7년차		59,726.2	62,191.8
8년차		57,824.1	60,211.1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

1)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중요성

시장접근분야 협상의 기본원칙은 ‘구간별 관세감축(tiered formula)’이다. 구간별 관세감축이란 현행 양허관세의 수준에 따라 높은 관세에 더 큰 감축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민감품목, 특별품목, 열대작물 및 경사 관세 해당품목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간별 관세감축에 기초한 일반 관세감축공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융통성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이 관세감축의 일방공식에 적용되지 않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농업생산이 일부 주요 품목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표 3-13 참조). 쌀 한 품목이 농업생산액 전체의 약 1/4 을 차지하고 있고, 돼지와 한육우, 닭, 젓소 등 4대 축산물에 전체 농업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핵심 품목 21개가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농업보호 수준은 구간별 관세감축에 따른 감축률 보다는 특정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률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농업을 대표하는 핵심 품목을 어떻게 민감품목과 특별품목화하여 관세감축률을 최대로 낮추느냐가 시장접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핵심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의 핵심 농산물이라고 해서 모두가 관세가 높은 것은 아니다. 즉,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은 150~400% 이하인 관세구간과 20~50% 사이의 관세구간에 양분하여 몰려 있으며, 20~50% 관세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관세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이 적용되어도 30~40% 수준이다. 따라서 주요 품목이라고 해도 20~50% 관세구간에 속한 품목은 민감품목이

표 3-13.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생산액 비중

순위	품목	비중(%)	순위	품목	비중(%)
1	미곡	25.3	12	토마토	1.7
2	돼지	10.4	13	배추	1.7
3	한육우	8.7	14	포도	1.7
4	닭(계란)	5.9	15	감	1.6
5	젖소(우유)	4.4	16	마늘	1.5
6	고추	3.5	17	사과	1.4
7	수박	2.4	18	두류(콩, 팥)	1.3
8	딸기	1.9	19	오이	1.3
9	오리	1.9	20	감자, 고구마	1.3
10	감귤	1.8	21	참외	1.1
11	인삼	1.7		소계	82.4

주: 비중은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업통계연보

아니어도 10년에 걸쳐 매년 3~4%씩 관세를 인하하게 되어 DDA 농업협상 이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농업생산의 집중성과 농산물 관세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DDA 농업협상 이행에 따라 농업부문이 받게 될 부정적 영향은 고관세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률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양허관세가 100% 이상인 농축산물의 세번은 전체 농축산물 세번의 9%에 불과한 반면,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은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허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5% 세번은 관세감축 면제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72개 세번은 관세를 감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민감품목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개수는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에 달해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전체 세번의

17%를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핵심 농산물 대부분의 관세감축률을 최소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은 DDA 농업협상 결과를 이행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DDA 농업협상에서는 현재의 4차 의장수정안의 민감 및 특별품목의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나.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선정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활용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농산물을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화 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남은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의 선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민감품목 또는 특별품목의 선정 기준으로 농업부문의 부가가치나 자원의 유희화(재배 면적과 재배 농가수),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영양섭취량, 향후 발전 가능성과 농업부문 구조조정방향, 관세장벽의 유효성, 관세감축과 TRQ 증량과의 관계 등을 설정해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의 후보를 제시하고 있다.²³⁾ 특히 이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선정된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은 연구마다 큰 차이 없이 모두 유사하여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제품, 고추, 마늘, 양파, 사과, 배, 감귤, 포도, 땅콩, 참깨, 콩(식용) 등을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후보로 선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의 선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정책적 유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기존의 연구결과 가운데

23) 대표적인 연구로 서진교외(2005), 성진근(2006), 이상준외(2006), 한두봉(2006), 송주호(2008) 등이 있다.

가장 최신의 결과(송주호, 2008)를 그대로 인용한다.

송주호(2008)에 따르면 민감/특별품목의 선정은 제1단계로 해당 품목의 생산액이 1,000억 원인 이상인 품목 44개 가운데, i) 실행세율이 낮은 연초(실행세율 0%)와 ii) 실제 교역 가능성이 낮은 계란, 배추, 절화, 파, 분화, 무, 참외, 상추, 느타리, 산나물, 산약 등 11개 품목, iii) 수입대비 수출 비중이 월등히 높은 김 1개 품목, iv) 기타 수입비중이 낮고 실행세율도 낮으면서 동식물위생검역상 수입이 어려운 품목인 오리와, 뽕은 감, 벗짚을 제외시켰다. 대신 생산액이 1,000억 원 미만이라도 실행세율이 높은 대추, 생강, 녹차, 팥, 녹두, 잣, 땅콩, 메밀 등을 추가로 포함하고,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전분과 주정, 매니옥, 설탕을 포함시켜 1차적으로 민감품목 후보군을 40개로 압축했다. 이후 40개 후보군 품목을 다시 TRQ품목과 비TRQ 품목으로 구분했다.

제2단계로 40개 후보군을 대상으로 관세감축에 따른 생산감소액 추정치를 추산하고, 기타 관련지표(예: 성장성, 지역집중도, 검역문제, 재배농가 수 등)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특별품목과 민감품목, 일반품목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이번 DDA 농업협상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데는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선정하느냐, 즉 효율적 선정이 우리나라의 실질적 농업보호 수준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다행히 4차 의장 수정안에 기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주요 핵심 농축산물은 대부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본다.²⁴⁾

24) 주요 핵심 농산물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었기 때문에 남은 문제는 주요 농축산물을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농축산물 생산자들간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선정된 민감품목도 관세감축률에 따라 TRQ 증량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감축률과 TRQ 증량수준의 효율적 조합을 찾아야 한다. 효율적 조합문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다. 기체결 자유무역협정과 의 조화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을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데 별 다른 무리가 없다면 남은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해관계가 얽힌 생산자단체간 민감품목 및 특별품목 선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양자협상과 다자협상과의 조화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필두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싱가포르, 아세안, 미국, 인도와 FTA협상을 끝냈으며, 현재는 미국 및 인도를 제외한 4개의 FTA가 발효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EU와의 FTA협상도 본서명만 남겨둔 상태로 2010년 중에 인도 및 EU와의 FTA는 발효될 가능성도 높다. 아울러 현재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페루, GCC 등과도 FTA협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우리나라의 농축수산물 수입관세는 다양한 국가와의 FTA체결에 따른 특혜관세가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전개는 자연스럽게 FTA체결에 따른 특혜관세와 DDA 이행에 따른 다자양허관세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여기서는 먼저, 검토대상 주요 농축산물의 세번을 선정하였다. 주요 농축산물의 세번 선정은 한미 FTA를 기준으로 했다. 즉, 한미 FTA 농업분야 관세감축 스케줄 가운데 관세철폐기간이 10년 이상 장기로 설정된 522개 세번을 고려대상 세번으로 선정했다.

1차적으로 522개 세번별로 우리나라의 기존 수입실적을 조사하여, 2006~08년 3개년 평균 우리나라의 수입실적이 전혀 없는 79개 세번은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남은 443개(=522-79) 세번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맺은 6개 FTA²⁵⁾별로 수입실적을 조사해 해당 세번별로 우리나라의 총수입 대비 6개 FTA체결 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을 조사하였다.

443개 세번 가운데 6개 FTA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80%를 초과하는 세번은 122개로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이 거의 없는(수입비중이 1% 이하) 세번도 약 32%에 달하였다(표 3-14).

표 3-14.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별 세번 수

수입비중 (%)	0~1	1~40	40~60	60~80	80~90	90~99	99~100
해당 세번 수 (총 443개)	141 (31.8)	119 (26.9%)	25 (5.6%)	36 (8.1%)	33 (7.4%)	31 (7.0%)	58 (13.1%)

주: 수입비중의 구간은 초과/이하를 의미. 즉 60~80은 60% 초과 80% 이하임.

1)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낮은 세번

총수입 대비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거의 없는(수입비중이 0~1%) 141개 세번은 사실상 FTA 체결의 영향력이 매우 낮은 세번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당 세번 수입이 i) 6개 FTA 체결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거나 ii) 우리나라의 수입의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양허표상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은 국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결국 DDA의 다자차원의 관세감축 스케줄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세번을 DDA 농업협상의 민감/특별품목에 선정하는 것은 별다른 무리가 없다.

다만 이러한 세번이라도 현재 FTA협상을 하고 있는 국가(예: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로부터의 수입이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예: 80% 이상) 협상중인 FTA를 고려하여 DDA 이행계획서 작성에 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육우(기타), 산양(유용), 냉동 및 냉장쇠고기(도체와

25) 여기서는 현재 발효 중인 한·칠레, 한·EFTA,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등 4개의 FTA에 협상이 끝난 한·미 FTA와 한·EU FTA를 추가하여 총 6개 FTA를 의미한다. 한인도 CEPA는 농산물의 관세감축 수준이 높지 않아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외했다.

이분도체), 기타 면양고기, 산양고기, 사슴고기와 같은 축산물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고, 현재 이 두 나라와는 FTA협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세번에 대한 DDA 이행계획서는 현재 진행중인 호주 및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에서 관세감축(철폐) 계획과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표 3-15).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고 있고, 또한 이들 국가와 FTA 협상을 맺어 관세감축 폭을 약속했으므로 DDA 농업협상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필요도 있다. 이는 비단 DDA 농업협상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에서 해당 세번의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예를 들면 산나무(호도나무, 소나무, 편백 등)를 포함하여, 감자(종자용), 고추, 마늘, 생강, 무, 버섯류, 고구마, 녹두, 밤, 은행, 기타 가공곡물, 참깨, 인삼류 등은 대부분 중국이나 일본에서의 수입되고 있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향후 예상되는 FTA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표 3-16).

DDA 농업협상을 통하여 민감품목이나 특별품목을 활용해 관세감축을 최소화시킨 세번이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통하여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면 이는 DDA 이행계획서를 그만큼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작성하게 된 결과가 된다.

표 3-15. 협상중인 FTA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세번과 수입비중

HSK	가체결 FTA 6개 국가	협상이 진행중인 FTA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소계
0102.90.2000	0.0	100.0	0.0	0.0	100.0
0104.20.1000	0.0	37.1	62.9	0.0	100.0
0202.10.0000	0.0	100.0	0.0	0.0	100.0
0204.10.0000	0.0	100.0	0.0	0.0	100.0
0204.21.0000	0.0	0.0	100.0	0.0	100.0
0204.22.0000	0.0	87.8	12.2	0.0	100.0
0204.23.0000	0.0	60.1	39.9	0.0	100.0
0204.30.0000	0.0	59.6	40.4	0.0	100.0
0204.41.0000	0.0	94.1	5.9	0.0	100.0
0204.42.0000	0.3	67.9	31.8	0.0	99.7
0204.43.0000	0.0	89.0	11.0	0.0	100.0
0204.50.2000	0.0	100.0	0.0	0.0	100.0
0206.10.0000	0.1	98.3	1.5	0.0	99.9
0206.21.0000	0.0	86.7	9.7	0.0	96.5
0206.29.1000	0.0	85.0	11.6	0.0	96.7
0208.90.1000	0.0	16.9	83.1	0.0	100.0
0403.90.2000	0.0	99.8	0.0	0.0	99.8
0404.10.1099	0.1	0.0	0.0	99.9	99.9
0404.10.2119	0.0	0.0	0.0	100.0	100.0
0406.10.2000	0.0	100.0	0.0	0.0	100.0
1003.00.1000	0.0	96.8	0.0	0.0	96.8
1102.90.1000	0.0	6.9	93.1	0.0	100.0
1211.20.2290	0.0	0.0	0.0	100.0	100.0
1702.19.9000	0.0	0.0	100.0	0.0	100.0

표 3-16.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세번과 수입비중

HSK	기체결 FTA 6개 국가	중장기적으로 협상을 고려하는 FTA		
		중국	일본	소계
0210.99.9090	0.0	62.0	38.0	100.0
0602.20.7020	0.0	100.0	0.0	100.0
0602.90.2040	0.0	0.0	100.0	100.0
0602.90.2061	0.0	64.0	36.0	100.0
0602.90.2071	0.0	100.0	0.0	100.0
0602.90.2089	0.0	80.9	19.1	100.0
0602.90.2091	0.0	27.2	72.8	100.0
0602.90.2099	0.0	92.3	1.1	93.4
0602.90.9010	0.4	93.4	6.2	99.6
0602.90.9020	0.0	0.0	100.0	100.0
0701.10.0000	0.0	100.0	0.0	100.0
0703.20.1000	0.0	100.0	0.0	100.0
0703.20.9000	0.0	99.9	0.1	100.0
0706.90.1000	0.0	100.0	0.0	100.0
0709.10.0000	0.0	100.0	0.0	100.0
0709.52.0000	0.0	42.8	57.2	100.0
0709.59.1000	0.0	97.5	0.0	97.5
0709.59.2000	0.0	100.0	0.0	100.0
0709.59.3000	0.0	99.9	0.1	100.0
0709.59.5000	0.0	0.0	100.0	100.0
0709.60.1000	0.0	0.0	100.0	100.0
0709.90.9000	0.4	96.4	0.0	96.4
0710.80.1000	0.1	99.9	0.0	99.9
0710.80.2000	0.0	100.0	0.0	100.0
0710.80.5000	0.1	99.9	0.0	99.9
0710.80.6000	0.0	99.7	0.3	100.0
0711.59.9000	0.1	99.9	0.0	99.9
0711.90.1000	0.0	100.0	0.0	100.0
0711.90.4000	0.0	100.0	0.0	100.0
0711.90.5010	0.0	100.0	0.0	100.0
0711.90.5020	0.0	100.0	0.0	100.0
0712.39.1020	0.1	99.9	0.0	99.9
0712.39.1030	0.3	99.5	0.2	99.7

표 3-16. 계속

HSK	기체결 FTA 6개 국가	중장기적으로 협상을 고려하는 FTA		
		중국	일본	소계
0712.39.2000	0.0	100.0	0.0	100.0
0712.90.2010	0.0	99.9	0.0	99.9
0712.90.2094	0.0	100.0	0.0	100.0
0713.31.9000	0.2	99.7	0.0	99.7
0713.32.9000	0.0	99.9	0.0	99.9
0714.20.3000	0.0	100.0	0.0	100.0
0714.20.4000	0.0	100.0	0.0	100.0
0714.90.1090	0.6	99.4	0.0	99.4
0802.40.1000	0.0	99.9	0.1	100.0
0802.90.2010	0.0	100.0	0.0	100.0
0802.90.2020	0.0	99.7	0.0	99.7
0805.20.1000	0.0	0.0	100.0	100.0
0805.20.9000	0.0	0.0	100.0	100.0
0811.90.1000	0.0	100.0	0.0	100.0
0811.90.2000	0.0	100.0	0.0	100.0
0811.90.3000	0.0	100.0	0.0	100.0
0813.40.1000	0.0	100.0	0.0	100.0
0813.40.2000	0.6	99.3	0.0	99.3
0904.20.1000	0.3	99.7	0.0	99.7
0910.10.0000	0.1	99.9	0.0	99.9
1008.10.0000	0.0	99.6	0.0	99.6
1008.90.0000	0.0	100.0	0.0	100.0
1104.29.1000	0.0	100.0	0.0	100.0
1108.19.1000	0.0	98.9	1.1	100.0
1108.19.9000	0.9	98.8	0.3	99.1
1202.10.0000	0.0	99.9	0.0	99.9
1202.20.0000	0.0	100.0	0.0	100.0
1207.99.1000	0.1	99.9	0.0	99.9
1211.20.1100	0.3	99.3	0.0	99.3
1211.20.1210	0.0	95.8	0.0	95.8
1211.20.1240	0.1	98.3	0.0	98.3
1211.20.1320	0.0	97.0	0.0	97.0
1211.20.1220	0.0	100.0	0.0	100.0

표 3-16. 계속

HSK	기체결 FTA 6개 국가	중장기적으로 협상을 고려하는 FTA		
		중국	일본	소계
1211.20.2110	0.0	99.4	0.0	99.4
1211.20.2220	0.0	0.0	94.6	94.6
1211.20.9900	0.2	99.1	0.0	99.1
1212.20.6010	0.0	97.2	2.8	100.0
1302.19.1110	0.5	98.4	0.9	99.3
1302.19.1120	0.5	99.0	0.5	99.5
1404.10.1000	0.0	100.0	0.0	100.0
1515.90.1000	0.0	99.7	0.3	100.0
1602.90.9000	0.3	99.0	0.3	99.3
1603.00.2000	0.0	100.0	0.0	100.0
1905.90.9010	0.0	0.0	100.0	100.0
2001.90.9060	0.1	99.7	0.1	99.8
2003.90.1000	0.0	99.8	0.2	100.0
2003.90.2000	0.0	100.0	0.0	100.0
2009.31.9000	0.0	0.0	100.0	100.0
2101.30.9000	0.3	88.0	9.7	97.7
2103.90.1010	0.0	57.6	42.4	100.0
2103.90.1020	0.0	100.0	0.0	100.0
2103.90.9040	0.0	98.5	0.0	98.5
2106.90.3011	0.9	98.9	0.1	99.0
2205.90.0000	0.5	99.5	0.0	99.5
2208.70.2000	0.0	100.0	0.0	100.0
2306.90.1000	0.0	100.0	0.0	100.0
2308.00.1000	0.6	97.0	0.0	97.0
2403.99.3000	0.1	95.3	0.0	95.3
3505.20.2000	0.0	0.0	100.0	100.0

2) 6개 기체결 FTA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높은 세번

우리나라의 전체수입 대비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60% 이하인 세번도 다자협상차원의 관세감축 계획이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딱히 60%를 기준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입의 40% 이상은 여전히 FTA를 체결하지 않는 다른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자차원의 양허관세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 대비 6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80% 이상인 122개 세번은 사실상 다자차원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큰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자협상차원에서 높은 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6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해 다자협상차원의 관세가 실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번은 6개 FTA 체결에 따른 특혜관세 감축 스케줄에 따라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122개 세번에 대해서 FTA별로 시장스케줄을 비교함으로써 DDA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다.

먼저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를 초과하는 세번은 총 58개이다(표 3-14). 예를 들면 50kg 미만의 살아있는 돼지는 미국으로부터 100% 수입되고 있으며, 한미 FTA에 의한 양허는 10년 관세철폐로 설정되어 있다. 즉 양허관세가 18%인 50kg 미만 돼지는 한미 FTA상에서 협정발효 후 10년째 관세를 철폐한다고 합의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100%이기 때문에 한미 FTA에 의한 특혜 관세만이 유효한 관세가 된다.²⁶⁾

한편 한미 FTA에 의한 10년 관세철폐는 DDA 관세감축 이행기간이 5~10년(개도국)임을 감안한다면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할 경우 관세감축률 100%를 의미한다.²⁷⁾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 작성시에는 50kg 미만의 산돼지는 가급적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6) 물론 이는 지금까지의 수입추세에 따른 판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다른 국가로 바뀔 가능성도 있으며, 이러한 중장기 동태적 수입선 변화전망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특히 축산물은 중장기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7) 한미 FTA가 2010년에 발효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이다.

표 3-17.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세번별 수입비중

HSK	2006~08년 3개년 평균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최적 기준
	미국	EU-27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제외)	싱가포르	EFTA	
0103.91.0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0105.19.1000	0.0	100.0	0.0	0.0	0.0	0.0	EU
0207.26.1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0207.26.2090	100.0	0.0	0.0	0.0	0.0	0.0	미국
0207.27.2090	100.0	0.0	0.0	0.0	0.0	0.0	미국
0207.35.2010	0.0	100.0	0.0	0.0	0.0	0.0	EU
0207.35.2090	0.0	100.0	0.0	0.0	0.0	0.0	EU
0207.36.2010	0.0	100.0	0.0	0.0	0.0	0.0	EU
0210.92.0000	0.0	100.0	0.0	0.0	0.0	0.0	EU
0210.99.1030	14.0	86.0	0.0	0.0	0.0	0.0	EU/미국
0401.10.0000	74.4	25.2	0.0	0.0	0.0	0.4	미국/EU
0402.10.1090	100.0	0.0	0.0	0.0	0.0	0.0	미국
0402.91.1000	21.5	0.0	0.0	5.9	72.6	0.0	싱가포르/미국
0403.10.1000	0.1	89.2	0.0	0.0	0.0	10.6	EU/EFTA
0406.40.0000	0.1	99.9	0.0	0.0	0.0	0.0	EU
0407.00.1010	0.0	100.0	0.0	0.0	0.0	0.0	EU
0711.59.1000	0.0	100.0	0.0	0.0	0.0	0.0	EU
0714.10.2010	0.0	0.0	0.0	100.0	0.0	0.0	아세안
0714.10.2020	0.0	0.0	0.0	99.4	0.0	0.0	아세안
0714.20.1000	0.0	0.0	0.0	100.0	0.0	0.0	아세안
0802.31.0000	64.2	0.0	0.0	35.5	0.0	0.0	미국/아세안
0802.40.2000	0.0	99.9	0.0	0.1	0.0	0.0	EU
0804.30.0000	0.0	0.0	0.0	99.6	0.0	0.0	아세안
0806.10.0000	13.9	0.0	86.0	0.1	0.0	0.0	칠레/미국
0809.40.1000	90.0	0.0	0.0	0.0	10.0	0.0	미국/싱가포르
0810.40.0000	0.0	100.0	0.0	0.0	0.0	0.0	EU
0810.90.5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104.19.2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105.10.0000	0.1	99.8	0.0	0.0	0.0	0.0	EU

표 3-17. 계속

HSK	2006~08년 3개년 평균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에서 해당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최적 기준
	미국	EU-27	칠레	아세안 (싱가포르 제외)	싱가포르	EFTA	
1107.20.1000	0.0	99.5	0.0	0.0	0.0	0.0	EU
1108.14.0000	0.0	0.0	0.0	100.0	0.0	0.0	아세안
1210.10.0000	18.2	81.8	0.0	0.0	0.0	0.0	EU/미국
1211.20.2210	0.0	0.0	0.0	100.0	0.0	0.0	아세안
1211.20.9200	0.0	100.0	0.0	0.0	0.0	0.0	EU
1302.19.122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404.90.2010	0.0	0.0	0.0	99.7	0.0	0.0	아세안
1602.10.0000	0.4	99.6	0.0	0.0	0.0	0.0	EU
1602.20.1000	0.0	99.2	0.0	0.8	0.0	0.0	EU
1602.20.9000	0.0	100.0	0.0	0.0	0.0	0.0	EU
1602.31.1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602.39.1000	0.0	100.0	0.0	0.0	0.0	0.0	EU
1602.90.1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703.90.1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806.90.2119	100.0	0.0	0.0	0.0	0.0	0.0	미국
1806.90.2920	99.8	0.0	0.0	0.1	0.0	0.0	미국
1806.90.3091	0.0	99.6	0.0	0.0	0.0	0.0	EU
1901.10.1090	13.4	85.3	0.0	0.6	0.0	0.0	EU/미국
2003.20.0000	0.0	100.0	0.0	0.0	0.0	0.0	EU
2008.20.0000	2.7	0.3	0.0	96.0	0.5	0.0	아세안
2102.10.2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2202.90.3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2205.10.0000	35.7	60.0	4.3	0.0	0.0	0.0	EU/미국
2401.10.1000	0.0	100.0	0.0	0.0	0.0	0.0	EU
2403.10.1000	1.0	33.0	0.0	65.9	0.0	0.0	아세안/EU
2403.91.1000	0.0	99.6	0.0	0.0	0.0	0.0	EU
2403.91.9000	0.0	99.6	0.0	0.0	0.0	0.0	EU
2403.99.2000	0.0	100.0	0.0	0.0	0.0	0.0	EU
3505.10.3000	100.0	0.0	0.0	0.0	0.0	0.0	미국

185g 이하 번식용 오리는 EU에서 100% 수입되고 있고, 한EU FTA 잠정 타결안에 따르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도 보호수준을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다.

매니옥 펠리트와 칩, 신선고구마는 아세안으로부터 거의 100% 수입되고 있으며, 아세안과의 FTA에서는 이들 세번은 2016년까지 20% 관세감축 또는 TRQ 제공으로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DDA 이행계획서 작성시 관세감축은 이러한 관세감축률 및 시장개방조건과 조화시켜야 한다.

신선포도는 칠레로부터 수입이 86%,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칠레와의 FTA에서는 2014년 관세철폐를 약속한 반면, 미국과의 FTA는 계절관세를 이용해 비수기(10월 16일~4월)에는 5년 관세철폐를, 성출하기에는 17년 관세철폐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도 계절관세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성수기 17년 관세철폐를 기준으로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되, 비수기 5년 관세철폐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17년 관세철폐는 DDA 개도국 이행기간이 10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DDA 농업협상 상의 감축률의 약 59%에 해당하기 때문에, DDA 이행계획서 작성시 신선포도의 관세감축률로 59%를 기준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EU, 아세안, 칠레 등 기발효된 또는 협상이 끝난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80% 이상인 세번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FTA에서 설정된 시장개방 스케줄을 고려하여 DDA 이행계획서에서 세번별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이행계획서 작성방안이다. 다음의 <표 3-18>은 이러한 목적 아래 FTA 체결 6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세번에 대해 FTA별 시장개방 스케줄을 정리한 것이다.

■ 표 3-18. 6개 FTA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의 99% 이상인 세번의 FTA별 양허내용

	대칭레	대칭레 포도	대 EFTA			대아세안	대EU	대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 웨이	아이슬란드			
0103.91.0000	웨이(50kg 미만의 것)				2010	5	10	
0105.19.1000	오리(185g 이하/번식용의 것)				즉시	0	10	
0207.26.1000	칠면조(절단/냉장)	2014		10%감축	즉시	7	10	
0207.26.2090	칠면조 기타설육(냉장)	2014		10%감축	즉시	7	10	
0207.27.2090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2011		10%감축	즉시	7	10	
0207.35.2010	오리.기위.기니아(간장/냉장)				2008	10	10	
0207.35.2090	오리.기위.기니아(기타설육/냉장)				2008	10	10	
0207.36.2010	오리.기위.기니아(간장/냉동)				2008	7	10	
0210.92.0000	고래.돌고래류/바다소의 육과 식용설육	2014	2011		2008	7	10	
0210.99.1030	가금류(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2014			2008	10	10	
0401.10.0000	밀크와 크림(미분축/미첨가/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1이하)				20%감축	15	15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20%감축	X	ZZI+TRQ	
0402.91.1000	무당원유				20%감축	X	ZZI+TRQ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코포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5%로	10	10	
0407.00.1010	종란(신선)	2014			20%감축	10	10	
0711.59.1000	송로(일시저장처리)	2009		10%감축	2008	0	10	
0714.10.2010	매니우침(건조)				TRQ	5	10	
0714.20.1000	고구마(신선)				20%감축	15	10+TRQ+SG	
0802.40.2000	밤(탈각)				20%감축	15	15	
0810.40.0000	크렌베리.빌베리.와기타박시니엄종의과실	2014	2016	20% 감축	2008	10	10	

■ 표 3-18. 계속 ■

	대차레	대상가 포로	대 EFTA			대아세안	대EU	대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 웨이	아이슬란드			
0810.90.5000		2016				5%로	10	10
1104.19.2000						50%감축	15	10
1210.10.0000		2016				즉시	0	10
1211.20.2210						20%감축	15	15+18+SG
1211.20.9200						20%감축	15	15+18+SG
1302.19.1220						20%감축	13	15+18+SG
1602.10.0000						20%감축	0	15
1602.20.1000	2014	2016				2008	5	10
1602.20.9000	2014	2016				즉시	5	10
1602.31.1000	2011	2016				2008	15	10
1703.90.1000	2004	2006	2006		2006	즉시	5	10
1806.90.2119	2014					2008	5	12
1806.90.2920	2020					2010	0	10
2003.20.0000						2010	0	10
2102.10.2000	2009	2011	20%감축	20%감축	20%감축	즉시	0	10
2202.90.3000	2009	2011	50%감축	50%감축	50%감축	즉시	0	10
2205.10.0000	2009	2016	2016	2016	2016	2010	0	10
2401.10.1000						2010	0	10
2403.99.2000						즉시	10	10
3505.10.3000						5%로	10	10
0809.40.1000		2016				2010	5	10

제4장

이행계획서 작성 방향

1. 국내보조 분야

가. 품목의 세분화 정도

DDA 농업협상의 특징의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국내 농업통계에 기초해 생산액 통계가 존재하는 모든 품목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품목을 세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품목을 너무 세분화하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품목별 보조금의 융통성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품목분류는 가능한 한 세분화하되 그 세분화 정도는 보조금의 융통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품목별 농업생산액 통계가 존재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산액 규모가 농업총생산액의 0.5%가 되지 않는 품목은 세분화할 필요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기타 품목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의 공식통계인 농림통계연보의 품목분류에 따를 경우, 통계상의 품목구분 가능한 품목은 146개가 되고 생산액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인 품목은 기타품목으로 묶었다.

한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상의 기타 품목이 있는데, 이는 당해 연도 품목특정 감축대상보조금(AMS) 또는 최소허용보조금이 없었던 품목 전체를 통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기타 품목은 매년 감축대상보조 또는 최소허용보조를 지급했던 품목이 변함에 따라 같이 바뀌었다. 예를 들면 곡물류의 경우 쌀, 보리, 옥수수, 콩, 고구마는 매년 감축대상보조 또는 최소허용보조를 지급해 왔기 때문에 WTO에 통보되었으나, 감자는 1995~2000년까지는 WTO에 통보하다가 2001년부터 감축대상보조나 최소허용보조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타 품목으로 통보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는 품목들(표 4-1)은 일단 별도의 독립된 품목으로 분류하고, 보조금이 한 번도 지급된 적이 없는 품목만을 기타류로 분류해, 곡물류에는 쌀, 보리, 옥수수, 콩, 맥주보리, 감자, 고구마 등 7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곡물을 기타 곡물로 묶었다.

임산물에는 밤, 대추 2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임산물을 기타 임산물로 할 수 있고, 축산물은 소, 돼지, 닭, 계란, 우유 등 5개 품목을 제외한 모든 축산물을 기타 축산물로 분류했다. 과실의 경우에는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감귤, 복숭아, 포도, 유자 등 8개 품목을 제외한 품목을 기타 과실에 포함시켰으며, 채소류는 고추, 마늘, 양파, 파, 생강 등 5개 조미채소와 당근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기타 채소로 하였다. 이렇게 분류할 경우 총 품목수는 39개가 된다.

표 4-1. 우리나라의 연도별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보조금(AMS 또는 DM) 지급실적이 있었던 품목				
	곡물류	임산물	축산물	과실류	채소류
1995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닭, 계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감귤, 포도, 복숭아, 유자	양파, 파, 당근, 생강
1996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복숭아,	고추, 마늘, 양파, 당근
1997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밤	소, 돼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감귤, 포도, 복숭아, 유자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생강
1998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감귤, 포도, 복숭아, 유자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생강
1999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닭, 계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감귤, 포도, 복숭아, 유자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생강
2000	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계란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복숭아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2001	쌀, 보리, 옥수수, 콩,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우유	사과, 배, 복숭아, 참다래	마늘, 양파, 당근
2002	쌀, 보리, 옥수수, 콩,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우유	사과, 배, 단감, 참다래	마늘, 양파, 당근
2003	쌀, 보리, 옥수수, 콩, 고구마	밤, 대추	소, 돼지, 우유	사과, 배, 단감, 감귤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2004	쌀, 보리, 옥수수, 콩, 고구마	-	소, 우유	사과, 배, 단감, 감귤	고추, 마늘, 파, 양파, 당근

다만 기타 채소류는 보조금 지급실적이 있는 6개 품목을 별도로 분류하더라도 기타 채소류의 총생산액이 연도별로 5~6조 원이 되기 때문에 품목을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²⁸⁾ 그러나 생산액이 미미한 품목까지 별도 품목으로 구분하면 숫자만 늘어나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2004~06년 평균 생산액이 농업총생산액의 0.5%(약 1,800억 원) 이상인 품목을 별도 품목으로 분류하고 생산액 규모가 0.5% 이하인 품목은 기타 채소류로 통합하였다.

기타 채소류 중에 2004~06년 평균 생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배추, 수박, 딸기, 토마토, 상추, 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무 등 10가지 품목의 생산액이 1,500억 원이 넘고, 특히 배추, 수박, 딸기, 토마토 등은 2004~06년 평균 생산액이 5,000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 품목들이 앞의 기타 채소류 중에서 87% 이상의 생산액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10개 품목은 별도 분류하고 그 나머지 품목은 기타 채소류로 분류하였다.

채소류뿐만 아니라 곡물, 과일, 축산, 버섯류, 화훼류, 약용작물, 기타 작물류, 임산물도 2004~2006년 평균 총 농업생산액 대비 0.5% 이상인 품목들은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위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타축산물 가운데 오리, 버섯류 중에서는 느타리버섯, 화훼류 중에서는 절화류와 분화류, 약용작물 중에서는 산약, 기타 작물류에서는 참깨를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며, 그 결과 총 품목수는 56개가 된다(표 4-3).

28) 이는 UR 농업협상의 경우 감축대상보조 총액에만 지급상한이 설정되어 있어 많은 중요 품목을 하나로 통합해도 보조금 지급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DDA 농업협상에 따를 경우 품목별로 AMS를 규제하기 때문에 중요 품목을 하나로 통합하면 품목별 AMS 지급상한을 무력화시켜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취지와 어긋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해결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표 4-2. 기타 채소류의 품목별 생산액(억 원)

	2004	2005	2006
보조금 실적이 있는 품목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생산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품목			
배추	5,709	6,335	6,346
수박	8,200	8,920	8,294
딸기	6,432	6,457	7,596
토마토	5,899	6,288	6,242
상추	2,988	1,432	1,706
참외	3,836	3,346	4,163
오이	4,621	4,290	4,634
호박	2,722	2,735	2,637
풋고추	4,369	2,882	3,975
무	3,682	3,686	3,484
소 계(A)	48,459	46,370	49,078
기타 채소류(B)	53,547	50,372	56,669
기타 채소(A-B)	5,088	4,002	7,592
A/B(%)	90.5	92.1	86.6

주: 기타 채소류(B)는 채소 총생산액에서 보조금 지급실적이 있었던 6개 품목(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생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소의 생산액 합계를 뜻한다.

표 4-3.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품목 세분류

	곡물류	임산물	축산물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약용 작물	기타 작물
보조금 실적이 있는 품목	쌀, 콩, 보리,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맥주 보리	밤, 대추	소, 돼지, 닭, 계란, 우유	사과, 배, 단감, 참다래, 감귤, 포도, 복숭아, 유자	양파, 파, 당근, 생강, 고추, 마늘				인삼, 유채
생산액이 1,500억 원 이상인 품목		표고 버섯	오리		배추, 수박, 딸기, 토마토, 상추, 참외, 오이, 호박, 풋고추, 무	느타리 버섯	절화류 분화류	산약	참깨
기타	밀, 조, 메밀, 팥, 녹두, 동부, 강남콩	밤, 대추, 표고 버섯을 제외한 34개 품목	젓소, 산양, 사슴, 토끼, 메추리, 오리알, 메추리알, 벌꿀, 녹용	자두, 매실, 파인애플	양배추, 쪽가, 시금치, 부추, 미나리, 가지, 파프리카, 우엉, 토란, 연근, 양채류	양송이, 영지, 팽이, 새송이	구근류, 화목류, 관상수, 종자류	산약을 제외한 20개 품목	들깨, 땅콩, 삼, 차, 연초, 벗짚, 산림 버섯

나. 감축대상보조(AMS)

1) 품목별 AMS 지급상한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선진국일 경우 8,195억 원, 개도국일 경우 1조 430억 원으로 감소한다. 감축대상보조 총액의 감축 이행은 전체로서의 규제이다.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고,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며, 아울러 이들의 합은 다시 위에서 설정된 총액상한 이내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품목별 AMS 지급상한 이내에서 모든 보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를 고려하여 선진국의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상한은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 세부원칙 타결 2년전 평균 실적, 1995~2000년 생산액의 10% 등 3가지 방안 중에서 품목별로 가장 큰 상한 설정이 가능하도록 결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이에 따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으로 품목별 AMS 상한을 설정하고,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상한은 기준기간(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동안의 지급액 평균액, 당해 연도 총 AMS의 20%, 기준기간(1995~2000년 혹은 1995~2004년) 동안의 생산액 평균의 20%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모든 품목에 획일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선택기준에 따라 품목별 AMS 한도액이 달라지지만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보조금 지급가능 수준과 융통성 측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유리하므로 이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선택으로 AMS 한도가 작아지는 품목이

발생하므로²⁹⁾ 이 경우 사전에 해당 품목 생산자의 이해를 구하는 내부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품목별 AMS 지급상한은 모든 품목에 설정하여 제출한다.

품목별 AMS 한도는 필요에 따라 그 한도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책 선택의 신축성 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총 AMS 한도는 품목별 한도와 관계없이 품목별 AMS 총합의 실행 한도이기 때문에 품목별 AMS 한도는 일단 설정하는 것이 향후 농정 선택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AMS 한도를 설정하여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되, 신규 블루박스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이의 예외로 하는 것이 이행계획서 작성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3) 품목별 최소허용보조는 이행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UR 농업협정문 6조 4항에 의거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금은 총 AMS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사전에 설정한 품목별 AMS 상한에도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DDA 이행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전략적으로 작성·제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하는 일이 중요하다.

29) 고추, 마늘, 사과 등이 대표적인 품목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앞 장의 국내보조 분석결과를 참조

다. 블루박스(Blue Box: BB)

1) Old 블루박스보다 New 블루박스를 선택한다.

블루박스는 ① 생산제한하의 블루박스(Old 블루박스)와 ②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의 두 가지 유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으나, 두 가지 유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모든 품목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생산제한하의 블루박스는 전 생산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반면, New 블루박스는 기준액의 85% 이하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New 블루박스는 생산제한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생산제한이 없는 New 블루박스의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신규 New 블루박스 품목은 품목특정 AMS 상한이 낮은 일부만을

Overall 블루박스 한도는 선진국의 경우 7,640억 원이 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1조 7,641억 원이 된다. 그리고 이 한도는 이행 첫 날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한편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그 품목의 AMS 한도를 전환하거나 그 품목의 AMS를 포기하는 경우 Overall 블루박스의 일정 비율만큼 신규로 설정할 수 있다(선진국의 경우 191억 원, 개도국의 경우 1,528~1,764억 원까지 품목특정 블루박스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블루박스합의 한도가 낮아 신규 블루박스를 설정하더라도 이행이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신규 New 블루박스 대상품목으로 선진국일 경우에는 AMS가 낮은 당근, 생강, 참다래, 유자, 기타곡물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개도국일 경우에는 참다래

와 유지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AMS 한도가 낮지 않으므로 참다래와 유지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AMS 품목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 쌀은 블루박스 품목으로 전환해야

우리나라의 경우 쌀에 대한 품목특정 AMS가 총 AM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품목의 AMS 이행에 결정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개도국의 경우 쌀이 블루박스로 전환되더라도 Overall 블루박스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쌀에 대한 보조금 한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다른 품목의 보조지급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다른 품목에 블루박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Overall 블루박스한도인 7,640억 원 가까이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품목의 AMS 이행도 용이해진다.

결국 이행계획서 작성시 쌀은 블루박스 품목으로 전환해 통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무역왜곡보조총액(OTDS)

1) 감축대상보조(AMS), 최소허용보조(DM), 블루박스 보조의 총액은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한도 내에 있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6조 741억 원에서 5년차에 2조 7,333억 원 수준으로 감축되어야 하고, 개도국의 경우에도 9조 5,070억 원에서 8년차에 6조 211억 원까지 감축되어야 한다. 한편 만약 AMS와 블루박스 모두가 지급 한도액만큼 지급된다면 최소허용보조의 한도는 매우 작아진다. 따라서 AMS 한도가 큰 품목이 무역왜곡보조(OTDS)의 대부분을 잠식하여 다른 품목에 최소허용보조 수준이하의 보조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경합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보조지급은 아래의 표와 같은 한도를 사전에 미리 고려하여 집행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표 4-4. 선진국의 경우 보조금 유형별 한도와 최소허용보조(억 원)

	무역왜곡보조 총액(OTDS)	총 AMS	블루박스총액 (overall BB)	DM 한도 ¹⁾	신규 BB 합의 한도
기준	60,747.7	14,900.0	15,280.2	30,560.5	-
이행 첫날	45,555.5	13,782.5	7,640.1	24,132.9	382.0
1년차	41,911.1	12,665.0	7,640.1	21,606.0	382.0
2년차	38,266.6	11,547.5	7,640.1	19,079.0	382.0
3년차	34,622.2	10,430.0	7,640.1	16,552.1	382.0
4년차	30,977.8	9,312.5	7,640.1	14,025.2	382.0
5년차	27,333.3	8,195.0	7,640.1	11,498.2	382.0

주1) DM한도는 AMS와 블루박스가 한도까지 사용되는 경우의 DM 한도를 의미. 그러나 AMS와 블루박스 모두가 한도까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DM한도는 이보다 높아질 것임.

표 4-5. 개도국의 경우 보조금 유형별 한도와 DM(1955~04년 기준, 억 원)

	OTDS	overall BB	쌀의 BB 한도	total AMS	DM한도 ¹⁾	신규 BB의 합의 한도
기준	95,070.2	16,034.0	18,675.0	14,900.0	64,136.1	4,810.2
이행 첫날	76,056.1	16,034.0	18,675.0	14,403.3	38,167.5	4,810.2
1년차	74,075.5	16,034.0	18,675.0	13,906.7	36,683.6	4,810.2
2년차	72,094.9	16,034.0	18,675.0	13,410.0	35,199.7	4,810.2
3년차	70,114.3	16,034.0	18,675.0	12,913.3	33,715.8	4,810.2
4년차	68,133.6	16,034.0	18,675.0	12,416.7	32,231.7	4,810.2
5년차	66,153.0	16,034.0	18,675.0	11,920.0	30,747.8	4,810.2
6년차	64,172.4	16,034.0	18,675.0	11,423.3	29,263.9	4,810.2
7년차	62,191.8	16,034.0	18,675.0	10,926.7	27,779.9	4,810.2
8년차	60,211.1	16,034.0	18,675.0	10,430.0	26,295.9	4,810.2

주1) DM한도는 AMS와 블루박스가 한도까지 사용되는 경우의 DM 한도를 의미. 그러나 AMS와 블루박스 모두가 한도까지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DM한도는 이보다 높아질 것임.

2. 시장접근

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의 선정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는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그 가운데 72개 세번은 관세감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양허관세가 100% 이상인 농축산물의 세번이 전체 농축산물 세번의 9%인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유지하는 한 이번 DDA 농업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요 핵심 농축산물의 관세를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 보다는 민감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과 TRQ 증량간 최적의 조합을 찾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기체결한 FTA와의 조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 1)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계획을 수립한다.

한·미 FTA에서 10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을 설정한 522개 세번 가운데 79개 세번은 2006~08년 3개년 동안 우리나라의 수입실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세번은 일단 기체결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수입실적이 없기 때문에 다자차원에서의 관세수준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세번은 DDA 농업협정에 따라 독자적인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되,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품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감축 폭은 높은 수준도 가능한 세번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하다.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보다는 WTO의 다자차원의 관세에 의하여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DDA에 의한 세심한 관세감축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2)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은 있지만 기체결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해도 현재 협상중인 호주나 뉴질랜드,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인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고려하여 DDA 이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즉, 진행중인 FTA 협상에서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DDA 이행계획서상의 관세

감축 스케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의 FTA 대상국과의 FTA협상도 고려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 및 일본과의 FTA 협상이 예상된다면 이를 고려할 DDA 이행계획서 작성도 필수적이다. DDA 농업협상을 통해서 어렵게 지켜낸 관세감축 수준이 FTA 협상을 통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3)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체결한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WTO 다자차원의 관세보다는 FTA상의 특혜관세가 실효 관세가 된다. DDA 농업협상을 통해 고율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와의 FTA를 통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다자차원의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면, WTO차원의 다자양허관세는 국경보호차원에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해 거래비용만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관세감축속도가 늦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DDA 이행에 따른 관세감축 스케줄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 4)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40~60%를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 하되, 부분적으로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을 고려해야 한다.

기체결한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40~60%를 차지하는 경우, FTA에 의한 특혜관세와 WTO차원의 다자양허관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느 한 관세감축 스케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양자 모두의 감축스케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FTA 대상국별 적용 특혜관세율과 FTA를 체결한 여타 국가로부터의 관세수준 및 수입량을 비교·검토해, 상호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효과를 추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는 방향에서 DDA 이행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제5장

요약

DDA 농업협상은 실제 진전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들의 정치적 타결이지만 있다면 그 어느 때라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대체적인 평가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요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재임에 성공한 라미 WTO 사무총장이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DDA의 진전을 위해 제시된 세부원칙에 기초하여 연습용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비한 준비는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배포된 농업부문 세부원칙 의장 4차 수정안(2008. 12)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기초해 농업부문의 전략적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DDA 농업협상의 특징 중 하나는 국내보조분야에서 품목별로 지급 가능한 보조금의 한도를 설정해 보조금 규제가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품목별 농업보조를 지급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품목분류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선 국내 농업통계에 기초해 생산액 통계가 존재하는 모든 품목을 기준으로 가능한 한 품목을 세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품목을 너무 세분화하면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를 이용하여 지급할 수 있는 품목별 보조금의 융통성을 너무 제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품목분류는 가능한 한 세분화되되 그 세분화 정도는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품목별 농업생산액 통계가 존재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되 생산액 규모가 농업총생산액의 0.5%가 되지 않는 품목은 제외하였다. 이 경우 총 품목은 곡물류 8품목, 채소류 17품목, 축산물 7품목, 기타 작물류 4품목, 과일류 9품목, 임산물 4품목, 버섯류 2품목, 화훼류 3품목, 약용작물 2품목 등으로 모두 56개 품목 세분화가 가능하다.

한편 감축대상보조 총액(Total AMS)의 지급상한은 감축대상보조 전체로서의 규제인 반면, 품목별 AMS의 지급 상한은 품목별 한도이면서 이 한도내에서만 보조지급이 가능하다. 이를 고려하여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을 설정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일 경우 ① 쌀, 보리, 옥수수, 유채는 1995~2000년 평균 지급실적으로 설정하고, ② 콩과 맥주보리는 최근 2년 실적을, ③ 나머지 품목은 1995~2000년 생산액의 10%로 설정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개도국일 경우 품목특정 AMS 지급 상한은 1995~2004년 평균 생산액의 20%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선택으로 AMS 한도가 작아지는 품목 생산자의 이해를 구하는 내부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소허용보조는 당해 연도 품목별 생산액의 일정 비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액수가 결정될 수 없다. 다만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비율을 생산액의 5%와 10% 가운데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정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소허용보조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진 보조는 총 AMS 계산에

는 포함하지 않으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순간 총 AMS에 포함되고, 아울러 품목특정 AMS가 존재하는 것이 되므로 이행과정에서 품목의 AMS가 최소허용보조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블루박스는 생산을 요구하지 않는 블루박스(New 블루박스) 형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품목별 블루박스 한도는 AMS 한도가 극히 낮은 일부품목만 블루박스 품목으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 품목은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대상품목은 선진국일 경우 AMS가 낮은 당근, 생강, 참다래, 유자, 기타곡물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개도국일 경우 참다래와 유자를 제외한 모든 품목을 AMS 품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쌀에 대한 품목특정 AMS가 총 AMS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품목의 AMS 이행에 결정적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쌀의 경우는 AMS 보다는 New 블루박스로 전환하여 다른 품목에 대한 감축대상보조 운용의 융통성을 높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은 현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제시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수준의 보호가 가능하다. 즉,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개도국 특별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12%를, 그리고 민감품목으로 전체 세번의 4%(선진국)~5.3%(개도국)를 허용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이를 적용할 경우 HS 10단위로 174개의 세번을 특별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58~76개 세번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으로 최대 250개까지의 세번을 일반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의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품목은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상당한 보호수준 유지가 가능하지만 단순히 민감품목과 특별품목을 이용하여 주요 품목의 관세감축을 최소화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WTO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이 차이가 날 경

우, 관세가 갖는 국경보호의 비효율성은 물론 이로 인한 수입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DDA 이행계획서의 작성은 이와 같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에서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되, 우리나라에서 수입되지 않는 품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DDA 이행계획서 작성시 대폭적인 관세감축도 가능한 세번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체 수입실적은 있지만 기체결 FTA국가로부터 수입이 없거나 미미한 세번의 경우도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 작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FTA협상 결과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기체결한 FTA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DDA 농업협상에 따른 독자적 관세감축 스케줄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체결한 FTA상 관세감축 스케줄에 일치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체결한 FTA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번은 WTO 다자차원의 관세보다는 FTA상의 특혜관세와 실효 관세가 된다. DDA 농업협상을 통해 고율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이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와의 FTA를 통해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무관세가 적용되거나 다자차원의 관세보다 낮은 특혜관세가 적용된다면 WTO차원의 다자양허관세는 국경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입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해 거래비용만 증가시킨다. 따라서 이러한 세번은 기체결한 FTA상의 관세감축 스케줄을 비교·검토하여 가장 관세감축 속도가 늦은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DDA 이행에 따른 관세감축 스케줄도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농림부. 2007, 'WTO/DDA 협상 동향', 보도자료
- 농림수산물식품부. 2008, 'DDA 농수산물협상 동향 및 대응', DDA 농수산물협상동향 브리핑 자료
- _____. 2008, 'WTO DDA 각료회의, 잠정 타협안 도출', 보도자료
- _____. 2009, '2008 DDA/FTA 농업협상포럼 발표자료집.'
- 서진교, 임소영. 2005, 『2005 DDA 농업협상 대응전략』, R49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외. 2006,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서진교 2007, “농업협상 해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나?”, 『시선집중』, GSnJ 제48호 (2007. 11.21)
- _____. 2008, “DDA 농업협상, 우리 농업의 미래설계도를 요구하고 있다”, 『시선집중』, GSnJ 제60호 (2008. 6.9)
- _____. 2008, “DDA 협상 결렬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책”, 『시선집중』, GSnJ 제63호 (2008. 8.8)
- 성진근. 2006, 『민감품목 선정을 위한 연구의 결론 유도를 위한 검토』, 농업통상대책 연구협의회 토론회 자료
- 송주호 2008, 『민감품목 선정방안 검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_____. 2009, “WTO에서의 주요국 국내보조 비교와 시사점”, 『농촌경제』, 제32권 1호: 131~1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상준외. 2006, 『WTO/DDA 협상에 따른 원예산업 민감품목 분석』, 내부 자료
- 임송수외. 2006, 『DDA 농업 모델리티 협상안의 평가와 대응방안』, R53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두봉. 2006, 『평점방식을 활용한 민감품목 선정』, 농업통상대책 연구협의회 토론회자료
- GSnJ Institute. 2008, 『WTO/DDA 농업협상 국내보조 주요 내용 및 양허 방향 검토』, 내부자료
- 외교통상부. 2008, ‘농업/NAMA Modalities 4차 수정안 내용’, 보도자료 _____,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 <http://www.fta.go.kr/user/index.asp>

● ● 해외문헌

- Blanford D. and D. Orden. 2008, “Unites States: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IFPRI Discussion Paper 00821, November 2008
- David Blandford, David Laborde and Will Martin. 2008,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of the Ma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Fuzhi Cheng. 2008, “China: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IFPRI Discussion Paper 00793, September 2008
- Jean, Josling, and Laborde. 2008, “Implications for European Union of Jul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Josling T. and A. Swinbank. 2008, “European Union: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IFPRI Discussion Paper 00809, October 2008

- Mike Gifford and Raul Montemayor. 2008, “An Overview Assessment of the Revised Draft WTO Modalities for Agriculture”, ICTSD.
- Munisamy Gopinath. 2008, “India: Shadow WTO Agricultural Domestic Support Notifications”, IFPRI Discussion Paper 00792, September 2008
- Munisamy Gopinath and David Laborde. 2008, “Implications for India of the Ma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Nassar, A, Cabral da Costa, C, and Chiodi, L. 2008, “Implications for Brazil of the Jul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Sébastien Jean, Tim Josling and David Laborde. 2008, “Implications for the European Union of the May 2008 Draft Agricultural Modalities”, ICTSD.
- WTO. 2006, Draft Possible Modalities on Agriculture, TN/AG/W/3, 12, July 2006
- _____. 2007,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 and Corr.1 1 August 2007
-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1, 8 February 2008
-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2, 19 May 2008
-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3, 10 July 2008
-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TN/AG/W/4/Rev.4, 6 December 2008
-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Tariff Quota Creation TN/AG/W/6, 6 December 2008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TN/AG/W/5, 6 December 2008

_____. 2008,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Special
Safeguard Mechanism TN/AG/W/7, 6 December 2008

부표 1. 기체결 FTA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의 90~99% 인 세번의 FTA별 관세감축계획

	대차레	대상가포르	대EFTA			대아세안	대EU	대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0207.14.2090						D	10	10
	닭기타설육(냉동)					E-2	X	ZZ1+TRQ
0402.21.9000	2014					E-2	10	1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20%감축	20%감축		D	10	10+TRQ
0403.10.2000						D	10	10+TRQ
	요구르트(냉동)					D	10	10+TRQ
0404.10.1019						E-2	15	15
	유장분말					A	0	12
0408.99.1000	2014	2016				D	7	10
	조란(닭의 것)					E-2	15	15
0504.00.1090	2009	2016				E-1	5	ZZ3+TRQ
	장기타동물)					C	X	12
0712.90.2070						D	S	12
	토란줄기(건조)					E-2	15	10
0802.90.1020						E-2	0	10
	차(탈카)					E-3	0	15+TRQ+SG
0805.10.0000						E-2	5	10+TRQ+SG
	오렌지(신선/건조)					D	0	15
0807.11.0000						B	0	10
	수박(신선)					B	0	10
0807.19.0000	2014	2016				E-2	15	10
	멜론(기타신선)					E-2	0	10
0810.90.2000	2014	2016				E-2	0	15+TRQ+SG
	담감(신선)					E-2	5	10+TRQ+SG
0813.30.0000	2014	2016				E-2	5	15+TRQ+SG
	사과(건조)					D	0	15
1003.00.9020						B	0	10
	쌀보리					B	0	10
1105.20.0000	2004	2011	2006	2006	2006	B	0	10
	감지플레이크 임펫펠리트		20%감축	20%감축	20%감축	B	10	10
1108.13.0000	2009	2011	20%감축	20%감축	20%감축	B	10	10
	진분(감자의 것)					B	10	10
1214.90.1000						B	10	10
	사료용근채류					B	10	10
1301.90.1000						B	10	10
	올레오레진					B	10	10
1901.10.9090						B	10	10
	조제식료품(기 타)					B	10	10

부표 1. 계속

	대칠레	대상기포르	대EFTA			대아세안	대EU	대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1905.20.0000	2009	2011	50%감축	50%감축	A	10	10	
1905.90.1010	2009	2011	50%감축	50%감축	B	5	10	
2006.00.1000	2009		10%감축		E-2	10	15	
2007.91.1000	2014	2016	20%감축	20%감축	D	5	10	
2008.80.0000	2020	2016			D	7	15	
2009.80.1010	2014	2016	10%감축		E-2	0	10	
2009.21.0000					A	3	10	
2309.90.1091		2016	20%감축		B	0	10	
2309.90.2020		2016	20%감축		E-2	10	12+TRQ	
2402.20.9000	2014	2016	10%감축		B	10	15	
3505.10.5000					E-2	12	10+TRQ+SG	

부표 2. 기체결 FTA대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우리나라 총수입의 80~99% 인 세번의 FTA별 관세감축계획

	대질레	대싱가포르	대EFTA			대아세안	대EU	대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0207.14.1090	담기타절단육(냉동)					E-5	10	10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C	15	15
0401.30.9000	크림기타(미농축미침가지지방분이 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					E-2	13	12
0403.10.9000	요구르트(기타)	2014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10	10
0404.10.2139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D	10	10+TRQ
0406.20.0000	치즈(칼았거나 분상의 모든 종류)					E-2	15	15+TRQ
0407.00.1090	조란기타(신신)	2014				D	15	15
0408.19.0000	난황(기타)					C	13	12
0408.99.9000	조란기타					D	10	10
0704.20.0000	방울다다기양배추(신신/냉장)	2014	2016			D	0	10
0713.10.9000	완두(기타)	2014	2016			C	7	10
0805.50.2010	라이(시트리스.오란티폴리아)	2014				A	15	10
0808.20.1000	배(신신)					E-1	10	10
1104.19.9000	압착플레이크(기타/곡물)					E-3	13	15+TRQ+SG
1104.30.1000	곡물배아(쌀의것)					D	15	10
1211.20.2120	인삼타브렛또는인삼캡슐		2016			D	X	10
1214.90.9090	사료용근채류(기타)		2016			D	0	15+TRQ
1302.19.1210	인삼류(홍삼엑스)					E-2	13	15+18+SG
1701.99.0000	사탕수수, 무양기타					E-2	0	16+20+SG
1905.10.0000	귀리빵	2009	2011	50%감축	50%감축	A	0	10
2007.99.1000	젠.제리.마어말레이드기타	2011	2016	20%감축	20%감축	E-2	5	10

부표 2. 계속

	대칠레	대싱가포르	대EFTA			대아세안	대EU	대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2008.60.0000	버찌(조제저장처리)	2016			D	5	10	
2009.71.0000	시과류스(브릭스 값이 20을 미초과)	2016			D	5	10	
2009.80.1020	딸기류스	2016	40%감축		A	7	10	
2009.80.2000	체소류스	2009			A	7	5	
2009.90.1090	혼합류스(기타과실을 주기제로 한정)	2020			C	7	10	
2309.90.2010	보조사료(무기물/평물질을 주로 한정)	2016	20%감축		E-2	0	12+TRQ	
2309.90.2099	보조사료(기타)	2016	20%감축		E-2	10	12+TRQ	
2401.10.9000	알담배(기타)	2016		10%감축	B	10	10	
2401.20.9000	알담배(기타/주매제거)	2014			B	10	10	
2402.10.3000	시가틸로				A	10	10	
3505.10.2000	기용성진분(아밀로겐)	2009			A	0	10	
4101.50.1019	원피(소/마속동물의 전신/16kg초과/기타/콘베쇼날/유연처리 하지않은것)	2004	2006	2006	2006	0	10	

주: 1) 대 아세안의 경우, A는 즉시 철폐, B는 2008년까지 관세철폐, C는 2010년까지 관세철폐, D는 2016년까지 5%로 관세인하, E-1은 2016년까지 관세를 50% 이하로 유지, E-2는 2016년까지 관세 20% 감축, E-3는 2016년까지 관세 50% 관세감축, E-4는 일정물량 관세인하(TRQ 제공), E-5는 양허 제외를 의미함.
 2) 대 칠레의 경우 빈 공란은 관세철폐계획을 도하게받아준다. 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협상을 하거나 관세가 철폐되지 않는 경우임.
 3) 미국의 경우 ZZ1은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설정 증명하는 경우임.
 4) EU의 경우 X는 현행 관세를 유지하는 경우임.

부표 3. 주요 세번의 FTA별 2006~08년 3개년 평균 수입비중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101.90.9000	0.0	0.0	0.0	0.0	0.0	60.4	60.4	0.0	18.0	21.6	0.0	0.0	39.6	100.0
0102.90.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0103.91.0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103.92.0000	0.0	0.0	0.0	0.0	13.4	0.0	13.4	0.0	0.0	0.0	0.0	86.6	86.6	100.0
0104.20.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7.1	62.9	0.0	100.0	100.0
0105.19.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1.10.0000	0.0	0.0	0.0	0.0	17.0	0.0	17.0	0.0	0.0	83.0	0.0	0.0	83.0	100.0
0201.20.0000	0.0	0.0	0.0	0.0	1.8	0.0	1.8	0.0	0.0	95.9	2.3	0.0	98.2	100.0
0201.30.0000	0.0	0.0	0.0	0.0	3.6	0.0	3.6	0.0	0.0	92.4	4.0	0.0	96.4	100.0
0202.10.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0202.20.0000	0.0	0.0	0.0	0.0	10.8	0.0	10.8	0.0	0.0	57.6	28.2	0.0	85.8	96.7
0202.30.0000	0.0	0.0	0.0	0.0	14.3	0.0	14.3	0.0	0.0	66.9	16.9	0.0	83.8	98.1
0203.19.1000	5.5	0.0	0.0	0.0	59.1	2.5	67.1	0.0	0.0	0.5	0.0	30.7	31.2	98.3
0203.19.9000	1.8	0.0	0.0	0.0	65.2	0.0	67.1	0.0	0.0	0.1	0.0	32.3	32.4	99.5
0204.10.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0204.21.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0204.22.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7.8	12.2	0.0	100.0	100.0
0204.23.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1	39.9	0.0	100.0	100.0
0204.30.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59.6	40.4	0.0	100.0	100.0
0204.41.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4.1	5.9	0.0	100.0	100.0
0204.42.0000	0.0	0.3	0.0	0.0	0.0	0.0	0.3	0.0	0.0	67.9	31.8	0.0	99.7	100.0
0204.43.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9.0	11.0	0.0	100.0	100.0
0204.50.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206.10.0000	0.0	0.0	0.0	0.0	0.1	0.0	0.1	0.0	0.0	98.3	1.5	0.0	99.9	100.0
0206.21.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6.7	9.7	0.0	96.5	96.5
0206.22.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7.2	50.7	0.0	87.8	87.8
0206.29.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85.0	11.6	0.0	96.7	96.7
0206.29.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60.0	12.6	0.0	72.6	72.6
0206.29.9000	0.0	0.0	0.0	0.0	2.0	0.0	2.0	0.0	0.0	76.9	18.5	0.0	95.4	97.5
0206.90.0000	0.0	0.0	0.0	0.0	47.9	0.0	47.9	0.0	0.0	48.0	4.1	0.0	52.1	100.0
0207.12.9000	0.0	0.0	0.0	0.0	21.6	0.0	21.6	0.0	32.5	0.0	0.0	0.0	32.5	54.1
0207.14.1010	0.0	0.0	0.0	0.0	56.3	0.4	56.7	0.0	0.0	0.0	0.0	0.1	0.1	56.7
0207.14.1020	0.0	0.0	0.0	0.0	12.6	0.5	13.2	0.0	0.1	0.0	0.0	0.0	0.1	13.2
0207.14.1030	0.0	0.0	0.0	0.0	6.6	21.3	27.9	0.0	0.0	0.0	0.0	0.0	0.0	27.9
0207.14.1090	0.0	0.0	0.0	0.0	76.1	4.2	80.3	0.0	0.3	0.0	0.0	0.0	0.3	80.6
0207.14.2090	0.0	0.0	0.0	0.0	5.7	85.3	91.0	0.0	0.0	0.0	0.0	0.0	0.0	91.0
0207.26.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7.26.209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7.27.209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7.33.0000	0.0	0.0	0.0	0.0	7.1	0.0	7.1	0.0	0.0	0.0	0.0	0.0	0.0	7.1
0207.35.201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7.35.209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7.36.1000	0.0	0.0	0.0	0.0	12.1	1.8	13.9	2.0	1.6	0.0	0.0	0.0	3.6	17.5
0207.36.201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08.90.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9	83.1	0.0	100.0	100.0
0208.90.9090	0.0	0.0	0.0	16.0	0.0	0.1	16.0	15.4	0.0	61.8	6.7	0.0	84.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210.20.1000	0.0	0.0	0.0	0.0	0.1	0.0	0.1	0.0	0.0	0.1	0.0	0.0	0.1	0.1
0210.20.9000	0.0	0.0	0.0	0.0	81.1	0.0	81.1	0.0	0.0	18.9	0.0	0.0	18.9	100.0
0210.92.00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10.93.0000	0.0	0.0	0.0	0.0	0.0	0.0	0.0	20.9	48.4	0.0	0.0	0.0	69.3	69.3
0210.99.1030	0.0	0.0	0.0	0.0	14.0	86.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210.99.1090	0.0	0.0	0.0	0.0	0.0	0.0	0.0	8.7	50.3	0.0	0.0	0.0	59.0	59.0
0210.99.9020	0.0	0.0	0.0	0.0	13.0	1.3	14.4	85.6	0.0	0.0	0.0	0.0	85.6	100.0
0210.99.9090	0.0	0.0	0.0	0.0	0.0	0.0	0.0	62.0	38.0	0.0	0.0	0.0	100.0	100.0
0401.10.0000	0.0	0.0	0.4	0.0	74.4	25.2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401.20.0000	0.0	0.0	0.0	0.0	6.4	0.0	6.4	0.0	29.2	14.7	49.7	0.0	93.6	100.0
0401.30.1000	0.0	0.0	0.0	0.0	1.4	0.4	1.8	0.0	0.0	95.8	0.0	0.0	95.8	97.7
0401.30.9000	0.0	0.0	0.0	0.7	0.1	89.0	89.8	0.0	0.1	5.0	5.1	0.0	10.2	100.0
0402.10.1010	0.0	0.0	0.0	0.0	1.2	18.3	19.5	0.0	0.0	62.3	17.2	0.0	79.5	99.1
0402.10.109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402.10.9000	0.0	0.0	0.0	0.0	5.2	0.1	5.2	0.0	0.0	0.0	80.8	0.0	80.8	86.1
0402.21.1000	0.0	0.0	0.0	0.0	0.2	8.5	8.7	0.0	0.0	86.4	4.9	0.0	91.3	100.0
0402.21.9000	0.0	0.0	0.0	0.0	98.0	0.2	98.1	0.0	0.0	0.0	0.0	0.0	0.0	98.1
0402.29.0000	0.0	0.0	0.0	21.8	2.0	0.0	23.8	0.0	0.0	0.2	67.9	1.6	69.7	93.5
0402.91.1000	0.0	72.6	0.0	5.9	21.5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402.91.9000	0.0	0.0	0.0	0.0	55.4	0.0	55.4	0.0	20.6	0.0	0.0	0.0	20.6	76.0
0402.99.1000	0.0	55.3	0.0	0.0	0.0	0.0	55.3	0.0	43.5	1.2	0.0	0.0	44.7	100.0
0402.99.9000	0.0	0.1	0.0	0.0	50.2	12.3	62.6	0.0	0.1	0.0	37.3	0.0	37.4	100.0
0403.10.1000	0.0	0.0	10.6	0.0	0.1	89.2	99.9	0.0	0.0	0.1	0.0	0.0	0.1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403.10.2000	0.0	0.0	0.0	0.0	0.3	89.8	90.2	0.0	0.0	0.0	9.8	0.0	9.8	100.0
0403.10.9000	0.0	0.0	0.0	0.0	2.7	78.5	81.2	0.0	1.1	5.7	12.0	0.0	18.8	100.0
0403.90.1000	0.0	0.0	0.0	0.0	0.0	77.1	77.1	0.0	0.0	0.0	22.9	0.0	22.9	100.0
0403.90.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2	99.8	0.0	0.0	100.0	100.0
0403.90.9000	0.0	0.0	0.0	0.0	4.9	55.9	60.7	0.0	30.6	5.3	3.3	0.0	39.3	100.0
0404.10.1019	0.0	0.0	0.0	0.0	42.6	49.0	91.6	0.0	0.0	1.1	1.3	1.5	3.8	95.4
0404.10.1099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0	99.9	99.9	100.0
0404.10.211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0404.10.2129	0.0	0.0	0.0	0.0	0.0	98.9	98.9	0.0	0.0	0.0	0.0	0.0	0.0	98.9
0404.10.2139	0.0	0.0	0.0	0.0	13.2	69.4	82.6	0.0	0.0	0.0	11.9	0.0	11.9	94.4
0404.10.2199	0.0	0.0	0.0	0.0	23.3	51.5	74.9	0.0	0.8	17.9	6.3	0.0	25.1	100.0
0404.90.0000	0.1	0.4	0.6	0.1	2.6	61.5	65.3	0.0	0.0	1.9	4.8	27.9	34.6	100.0
0405.10.0000	0.0	0.7	0.0	0.0	1.3	23.0	25.0	0.0	0.0	13.3	61.3	0.0	74.6	99.6
0405.90.0000	0.0	0.0	0.0	0.0	4.5	69.8	74.3	0.0	0.0	1.5	0.0	0.0	1.5	75.8
0406.10.1000	0.0	0.0	0.9	0.0	5.5	17.2	23.7	0.0	0.0	18.2	28.3	0.1	46.6	70.3
0406.10.2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100.0	100.0
0406.20.0000	0.0	0.0	0.0	0.0	32.2	53.8	86.0	0.0	0.2	11.9	1.9	0.0	14.0	100.0
0406.30.0000	0.0	1.6	0.8	0.0	29.8	38.3	70.6	0.0	0.7	22.6	5.0	0.1	28.5	99.1
0406.40.0000	0.0	0.0	0.0	0.0	0.1	99.9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406.90.1000	0.0	0.1	0.0	0.0	8.4	6.6	15.1	0.0	0.0	26.8	55.5	0.0	82.2	97.4
0406.90.2000	8.0	0.0	0.0	0.0	0.0	30.4	38.4	0.0	0.0	0.0	47.0	0.0	47.0	85.4
0407.00.101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407.00.1090	0.0	0.0	0.0	0.0	83.5	3.3	86.8	13.2	0.0	0.0	0.0	0.0	13.2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407.00.9000	0.0	0.0	0.0	0.0	7.6	0.0	7.6	91.7	0.0	0.0	0.0	0.0	91.7	99.3
0408.11.0000	0.0	0.0	0.0	0.0	42.0	12.2	54.2	42.6	2.3	0.0	0.0	0.7	45.7	99.9
0408.19.0000	0.0	0.0	0.1	7.5	66.1	7.2	81.0	0.7	15.3	0.0	0.0	2.2	18.1	99.1
0408.91.0000	0.0	0.0	0.0	0.0	48.2	16.1	64.2	31.1	0.0	0.0	0.0	4.1	35.3	99.5
0408.99.1000	0.0	0.0	0.0	0.0	0.0	97.1	97.1	2.9	0.0	0.0	0.0	0.0	2.9	100.0
0408.99.9000	0.0	0.0	0.0	0.0	76.3	7.5	83.8	15.7	0.0	0.0	0.0	0.0	15.8	99.5
0409.00.0000	0.0	0.1	1.8	6.7	54.1	4.7	67.4	6.7	0.2	2.6	14.0	6.5	30.0	97.4
0410.00.3000	0.0	0.0	0.0	0.4	22.7	0.0	23.2	36.8	3.1	33.4	0.0	0.6	73.9	97.1
0504.00.1010	0.0	0.0	0.0	0.0	0.0	0.1	0.1	0.0	0.0	0.0	20.8	0.0	88.7	88.7
0504.00.1090	2.2	0.0	0.0	0.0	74.2	16.0	92.4	0.5	0.0	2.9	0.2	3.5	7.1	99.5
0504.00.3000	2.1	0.0	0.0	0.0	0.6	2.9	5.6	0.0	0.0	36.2	53.7	2.1	92.0	97.6
0506.90.2000	0.0	0.0	0.0	0.0	1.9	0.2	2.0	0.4	38.7	56.2	0.9	1.6	97.8	99.8
0507.90.1110	0.0	0.0	0.0	0.0	0.0	0.0	0.0	14.0	0.0	1.6	59.9	0.0	75.6	75.6
0507.90.1190	0.0	0.0	0.0	0.0	0.0	0.0	0.0	24.3	0.0	2.5	40.0	0.0	66.9	66.9
0507.90.1200	0.0	0.0	0.0	0.0	0.0	0.0	0.0	13.6	0.0	0.0	4.9	0.0	18.5	18.5
0511.99.4000	0.0	0.0	0.0	0.0	37.5	0.0	37.5	0.0	0.0	61.4	1.0	0.0	62.5	100.0
0602.10.9000	0.0	0.1	0.0	7.9	1.7	29.4	39.1	44.4	1.9	0.0	0.2	0.0	46.5	85.6
0602.20.7010	0.0	0.0	0.0	77.9	0.0	0.0	77.9	22.1	0.0	0.0	0.0	0.0	22.1	100.0
0602.20.702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602.20.9000	0.0	0.0	0.0	21.5	10.5	3.0	35.0	47.7	8.9	0.5	1.8	0.0	58.9	93.9
0602.30.0000	0.0	0.0	0.0	0.0	28.6	0.0	28.6	12.7	58.7	0.0	0.0	0.0	71.4	100.0
0602.90.2019	0.0	0.0	0.0	0.0	0.3	0.0	0.3	0.0	57.1	42.6	0.0	0.0	99.7	100.0
0602.90.204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602.90.2061	0.0	0.0	0.0	0.0	0.0	0.0	0.0	64.0	36.0	0.0	0.0	0.0	100.0	100.0
0602.90.2069	0.0	0.0	0.0	0.0	10.8	0.0	10.8	87.6	1.6	0.0	0.0	0.0	89.2	100.0
0602.90.2071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602.90.2089	0.0	0.0	0.0	0.0	0.0	0.0	0.0	80.9	19.1	0.0	0.0	0.0	100.0	100.0
0602.90.2091	0.0	0.0	0.0	0.0	0.0	0.0	0.0	27.2	72.8	0.0	0.0	0.0	100.0	100.0
0602.90.2099	0.0	0.0	0.0	0.0	0.0	0.0	0.0	92.3	1.1	0.0	0.0	0.0	93.4	93.4
0602.90.9010	0.0	0.0	0.0	0.0	0.0	0.4	0.4	93.4	6.2	0.0	0.0	0.0	99.6	100.0
0602.90.902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603.10.9000	0.0	1.3	0.0	26.4	3.9	22.0	53.6	8.4	0.1	13.9	18.4	0.5	41.3	94.9
0603.90.0000	0.0	0.2	0.0	4.0	2.0	20.2	26.3	31.8	1.8	12.9	16.0	0.0	62.6	88.9
0604.10.0000	73.7	0.0	0.0	0.0	0.0	0.0	73.7	13.5	0.3	0.0	11.5	0.0	25.3	99.0
0604.91.1090	0.0	0.4	0.0	11.0	28.0	0.5	39.9	16.6	0.6	6.1	0.2	7.5	31.0	70.9
0701.10.0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03.10.1000	0.2	0.0	0.0	0.5	5.5	0.0	6.1	93.9	0.0	0.0	0.0	0.0	93.9	100.0
0703.2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03.20.9000	0.0	0.0	0.0	0.0	0.0	0.0	0.0	99.9	0.1	0.0	0.0	0.0	100.0	100.0
0704.20.0000	0.0	0.0	0.0	0.0	85.1	0.0	85.1	14.9	0.0	0.0	0.0	0.0	14.9	100.0
0705.11.0000	0.0	0.0	0.0	0.0	31.1	0.0	31.1	68.7	0.2	0.0	0.0	0.0	68.9	100.0
0705.19.0000	0.0	0.0	0.0	0.0	54.8	0.0	54.8	45.2	0.0	0.0	0.0	0.0	45.2	100.0
0706.9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09.10.0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09.51.7000	0.0	0.0	0.0	0.0	6.3	0.0	6.3	93.7	0.0	0.0	0.0	0.0	93.7	100.0
0709.51.9000	0.0	0.0	0.0	0.0	0.9	0.0	0.9	8.9	0.0	0.0	0.0	0.0	8.9	9.8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709.52.0000	0.0	0.0	0.0	0.0	0.0	0.0	0.0	42.8	57.2	0.0	0.0	0.0	100.0	100.0
0709.59.1000	0.0	0.0	0.0	0.0	0.0	0.0	0.0	97.5	0.0	0.0	0.0	0.0	97.5	97.6
0709.59.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09.59.3000	0.0	0.0	0.0	0.0	0.0	0.0	0.0	99.9	0.1	0.0	0.0	0.0	100.0	100.0
0709.59.5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0709.59.9000	0.0	0.0	0.0	0.0	2.9	0.1	3.0	23.1	0.1	0.0	0.0	0.0	23.2	26.1
0709.60.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0709.60.9000	0.0	0.0	0.0	10.7	0.1	0.0	10.8	41.5	47.7	0.0	0.0	0.0	89.2	99.9
0709.90.1000	0.0	0.0	0.0	0.0	2.0	0.0	2.0	97.3	0.6	0.0	0.0	0.0	98.0	100.0
0709.90.9000	0.0	0.0	0.0	0.1	0.0	0.3	0.4	96.4	0.0	0.0	3.1	0.0	99.6	100.0
0710.80.1000	0.0	0.0	0.0	0.0	0.0	0.1	0.1	99.9	0.0	0.0	0.0	0.0	99.9	100.0
0710.80.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0.80.3000	0.0	0.0	0.0	61.9	0.0	0.0	61.9	20.9	7.9	0.0	0.0	0.0	28.8	90.7
0710.80.5000	0.0	0.0	0.0	0.0	0.1	0.0	0.1	99.9	0.0	0.0	0.0	0.0	99.9	100.0
0710.80.6000	0.0	0.0	0.0	0.0	0.0	0.0	0.0	99.7	0.3	0.0	0.0	0.0	100.0	100.0
0710.80.7000	0.0	0.0	0.0	5.4	0.0	0.0	5.4	94.6	0.0	0.0	0.0	0.0	94.6	100.0
0711.40.0000	0.0	0.0	0.0	0.0	0.0	0.0	0.0	85.2	0.0	0.0	0.0	0.1	85.3	85.3
0711.59.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711.59.9000	0.0	0.0	0.0	0.0	0.0	0.1	0.1	99.9	0.0	0.0	0.0	0.0	99.9	100.0
0711.9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1.90.3000	0.0	0.0	0.0	6.9	0.0	0.0	6.9	58.2	34.9	0.0	0.0	0.0	93.1	100.0
0711.90.4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1.90.501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711.90.502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1.90.5091	0.0	0.0	0.0	0.0	13.6	0.0	13.6	82.1	1.3	0.0	0.0	0.0	83.4	97.0
0712.20.0000	0.0	0.0	0.0	0.1	9.6	0.0	9.7	83.1	4.1	0.0	0.0	0.0	87.2	96.9
0712.31.1000	0.0	0.0	0.0	0.0	0.0	4.8	4.8	95.2	0.0	0.0	0.0	0.0	95.2	100.0
0712.32.0000	0.0	0.0	0.0	1.5	0.0	0.0	1.5	98.5	0.0	0.0	0.0	0.0	98.5	100.0
0712.39.1010	0.0	0.0	0.0	0.0	4.3	0.0	4.3	95.7	0.0	0.0	0.0	0.0	95.7	100.0
0712.39.1020	0.0	0.0	0.0	0.0	0.0	0.1	0.1	99.9	0.0	0.0	0.0	0.0	99.9	100.0
0712.39.1030	0.0	0.0	0.0	0.3	0.0	0.0	0.3	99.5	0.2	0.0	0.0	0.0	99.7	100.0
0712.39.1040	0.0	0.0	0.0	0.0	38.5	0.0	38.5	61.5	0.0	0.0	0.0	0.0	61.5	100.0
0712.39.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2.90.1000	0.0	0.0	0.0	0.0	1.3	0.0	1.4	98.6	0.0	0.0	0.0	0.0	98.6	100.0
0712.90.2010	0.0	0.0	0.0	0.0	0.0	0.0	0.0	99.9	0.0	0.0	0.0	0.0	99.9	99.9
0712.90.2040	0.0	0.0	2.2	0.0	2.5	13.0	17.7	82.3	0.0	0.0	0.0	0.0	82.3	100.0
0712.90.2050	0.0	0.0	0.0	55.7	0.0	0.0	55.7	40.0	0.0	0.0	4.3	0.0	44.3	100.0
0712.90.2060	0.0	0.0	0.0	1.7	0.0	0.0	1.7	98.3	0.0	0.0	0.0	0.0	98.3	100.0
0712.90.2070	0.0	0.0	0.0	96.9	0.0	0.0	96.9	3.1	0.0	0.0	0.0	0.0	3.1	100.0
0712.90.2094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3.10.9000	0.0	0.0	0.0	0.0	76.5	5.5	82.1	3.4	0.0	0.0	0.0	14.6	17.9	100.0
0713.20.0000	0.0	0.0	0.0	6.7	2.1	16.4	25.1	0.1	0.0	23.9	0.0	0.0	24.0	49.1
0713.31.9000	0.0	0.1	0.0	0.1	0.0	0.0	0.2	99.7	0.0	0.0	0.0	0.0	99.7	99.9
0713.32.9000	0.0	0.0	0.0	0.0	0.0	0.0	0.0	99.9	0.0	0.0	0.0	0.0	99.9	99.9
0713.33.9000	0.0	0.3	0.0	33.2	11.8	0.0	45.2	29.2	0.0	0.0	0.0	25.6	54.8	100.0
0713.40.0000	0.0	2.1	0.0	1.6	3.0	16.5	23.3	0.0	0.0	15.9	0.0	1.8	17.7	41.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714.10.201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714.10.2020	0.0	0.0	0.0	99.4	0.0	0.0	99.4	0.0	0.0	0.0	0.0	0.0	0.0	99.4
0714.20.10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714.20.3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4.20.4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714.90.1090	0.0	0.0	0.0	0.6	0.0	0.0	0.6	99.4	0.0	0.0	0.0	0.0	99.4	100.0
0714.90.9090	0.0	0.0	0.0	1.9	0.0	0.0	1.9	98.1	0.0	0.0	0.0	0.0	98.1	100.0
0802.22.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1
0802.31.0000	0.0	0.0	0.0	35.5	64.2	0.0	99.7	0.3	0.0	0.0	0.0	0.0	0.3	100.0
0802.40.1000	0.0	0.0	0.0	0.0	0.0	0.0	0.0	99.9	0.1	0.0	0.0	0.0	100.0	100.0
0802.40.2000	0.0	0.0	0.0	0.1	0.0	99.9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802.90.1020	0.0	0.0	0.0	0.0	94.7	0.0	94.7	5.1	0.0	0.0	0.0	0.2	5.3	100.0
0802.90.201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802.90.2020	0.0	0.0	0.0	0.0	0.0	0.0	0.0	99.7	0.0	0.0	0.0	0.0	99.7	99.7
0804.10.0000	0.0	0.0	0.0	0.0	9.3	3.2	12.5	0.0	0.0	0.0	0.0	0.0	0.0	12.5
0804.30.0000	0.0	0.0	0.0	99.6	0.0	0.0	99.6	0.0	0.0	0.0	0.0	0.0	0.0	99.6
0804.50.2000	0.0	0.0	0.0	65.2	0.2	0.0	65.4	0.1	0.0	0.0	0.0	0.0	0.1	65.5
0804.50.3000	0.0	0.0	0.0	1.9	0.0	0.0	1.9	0.0	0.0	0.0	0.0	0.0	0.0	1.9
0805.10.0000	2.0	0.0	0.0	0.0	93.9	0.5	96.5	0.0	0.0	0.6	0.0	0.0	0.7	97.2
0805.20.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0805.20.9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0805.50.2010	0.0	0.0	0.0	0.0	89.6	0.0	89.6	0.0	0.0	0.0	0.0	10.4	10.4	100.0
0806.10.0000	86.0	0.0	0.0	0.1	13.9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0807.11.0000	0.0	0.0	0.0	0.0	92.2	0.0	92.2	0.0	6.9	0.0	0.3	0.0	7.2	99.5
0807.19.0000	0.0	0.0	0.0	0.0	94.3	0.0	94.3	0.0	5.3	0.0	0.0	0.0	5.3	99.6
0808.20.1000	0.0	0.0	0.0	0.0	84.9	0.0	84.9	0.0	4.6	0.0	0.0	0.0	4.6	89.4
0809.40.1000	0.0	10.0	0.0	0.0	9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810.40.0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810.50.0000	13.8	0.0	0.0	0.0	5.7	0.0	19.5	0.0	0.0	0.0	80.5	0.0	80.5	100.0
0810.90.2000	0.0	0.0	0.0	95.6	0.0	0.0	95.6	0.0	4.4	0.0	0.0	0.0	4.4	100.0
0810.90.5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810.90.9000	0.0	0.0	0.0	0.0	14.9	0.0	15.0	0.0	0.1	0.0	0.0	0.0	0.1	15.1
0811.9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811.90.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811.90.3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813.30.0000	0.0	0.0	0.0	0.0	72.4	20.5	92.9	7.1	0.0	0.0	0.0	0.0	7.1	100.0
0813.4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0813.40.2000	0.0	0.0	0.0	0.0	0.6	0.0	0.6	99.3	0.0	0.0	0.0	0.0	99.3	100.0
0902.10.0000	0.0	0.0	0.0	0.0	31.5	0.4	31.9	1.1	64.4	0.4	0.0	1.8	67.8	99.7
0902.20.0000	0.0	0.1	0.0	1.2	0.3	0.2	1.8	94.1	4.1	0.0	0.0	0.0	98.1	99.9
0904.20.1000	0.0	0.0	0.0	0.2	0.0	0.1	0.3	99.7	0.0	0.0	0.0	0.0	99.7	100.0
0904.20.2000	0.0	0.0	0.0	1.5	1.6	0.3	3.4	85.1	3.5	0.0	0.0	0.0	88.6	92.0
0910.10.0000	0.0	0.0	0.0	0.0	0.0	0.0	0.1	99.9	0.0	0.0	0.0	0.0	99.9	100.0
1003.00.1000	0.0	0.0	0.0	0.0	0.0	0.0	0.0	0.1	0.0	96.8	0.0	0.0	96.9	96.9
1003.00.9010	0.0	0.0	0.0	0.0	0.0	0.0	0.0	57.0	0.0	1.2	0.0	41.8	100.0	100.0
1003.00.9020	0.0	0.0	0.0	0.0	96.7	0.0	96.7	3.3	0.0	0.0	0.0	0.0	3.3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1003.00.9090	57.1	0.0	0.0	0.0	0.0	0.0	57.1	0.0	0.0	0.0	0.0	0.0	0.0	57.1
1007.00.1000	0.0	0.0	0.0	0.0	54.6	0.0	54.6	0.0	45.4	0.0	0.0	0.0	45.4	100.0
1008.10.0000	0.0	0.0	0.0	0.0	0.0	0.0	0.0	99.6	0.0	0.0	0.0	0.0	99.6	99.6
1008.90.0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1102.90.1000	0.0	0.0	0.0	0.0	0.0	0.0	0.0	0.0	6.9	93.1	0.0	0.0	100.0	100.0
1102.90.9000	0.0	0.0	0.0	0.0	79.7	0.0	79.7	12.9	5.9	0.0	0.1	20.3	100.0	100.0
1103.11.0000	0.0	0.0	0.0	0.0	0.0	0.0	0.0	0.0	29.9	0.0	0.0	29.9	29.9	29.9
1103.13.0000	0.0	0.0	0.0	0.0	0.1	34.1	34.2	0.0	65.0	0.0	0.0	65.0	99.3	99.3
1104.19.2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104.19.9000	0.0	0.0	0.0	44.4	40.3	0.0	84.7	0.0	15.1	0.0	0.0	0.0	15.1	99.7
1104.23.0000	0.0	0.0	0.0	0.0	0.1	1.1	1.2	0.0	49.3	0.0	0.0	49.3	50.5	50.5
1104.29.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100.0
1104.29.9000	0.0	0.0	0.0	0.0	0.3	0.0	0.3	82.7	0.0	0.0	0.0	82.7	83.0	83.0
1104.30.1000	0.0	0.0	0.0	83.3	0.0	0.0	83.3	0.0	0.0	0.0	16.7	16.7	100.0	100.0
1105.10.0000	0.0	0.0	0.0	0.0	0.1	99.8	99.9	0.0	0.1	0.0	0.0	0.1	100.0	100.0
1105.20.0000	0.0	0.0	0.0	0.0	98.2	0.0	98.2	1.3	0.0	0.0	0.5	1.8	100.0	100.0
1107.10.0000	0.0	0.0	0.0	0.0	7.8	1.1	8.9	24.2	54.1	0.0	12.7	91.1	100.0	100.0
1107.20.1000	0.0	0.0	0.0	0.0	0.0	99.5	99.5	0.5	0.0	0.0	0.0	0.5	100.0	100.0
1108.11.0000	0.0	0.0	0.0	0.0	0.1	4.1	4.2	62.4	32.9	0.0	0.0	95.3	99.4	99.4
1108.12.0000	0.0	0.0	0.0	0.0	0.0	1.2	1.2	98.6	0.1	0.0	0.0	98.8	100.0	100.0
1108.13.0000	0.0	0.0	0.0	0.0	0.5	98.4	99.0	0.8	0.2	0.0	0.0	1.0	100.0	100.0
1108.14.000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1108.19.1000	0.0	0.0	0.0	0.0	0.0	0.0	0.0	98.9	1.1	0.0	0.0	100.0	100.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1108.19.9000	0.0	0.0	0.0	0.0	0.4	0.5	0.9	98.8	0.3	0.0	0.0	0.0	99.1	100.0
1201.00.9090	0.0	0.0	0.0	0.0	22.5	0.0	22.5	71.0	0.0	0.0	0.0	2.9	73.9	96.4
1202.10.0000	0.0	0.0	0.0	0.0	0.0	0.0	0.0	99.9	0.0	0.0	0.0	0.0	99.9	99.9
1202.20.0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1207.40.0000	0.0	0.0	0.0	0.8	0.0	0.0	0.8	46.9	0.0	0.0	0.0	0.0	46.9	47.8
1207.99.1000	0.0	0.0	0.0	0.1	0.0	0.0	0.1	99.9	0.0	0.0	0.0	0.0	99.9	100.0
1210.10.0000	0.0	0.0	0.0	0.0	18.2	81.8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211.20.1100	0.0	0.0	0.0	0.0	0.3	0.0	0.3	99.3	0.0	0.0	0.0	0.4	99.7	100.0
1211.20.1210	0.0	0.0	0.0	0.0	0.0	0.0	0.0	95.8	0.0	0.0	0.0	0.0	95.8	95.8
1211.20.122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1211.20.1240	0.0	0.0	0.0	0.0	0.1	0.0	0.1	98.3	0.0	0.0	0.0	1.6	99.9	100.0
1211.20.1310	0.0	0.0	0.0	1.0	0.2	0.0	1.2	83.3	0.0	0.0	0.0	0.0	83.3	84.5
1211.20.1320	0.0	0.0	0.0	0.0	0.0	0.0	0.0	97.0	0.0	0.0	0.0	0.0	97.0	97.0
1211.20.1330	0.0	0.0	0.0	0.0	10.3	0.0	10.3	20.5	0.0	0.0	0.0	0.0	20.5	30.9
1211.20.2110	0.0	0.0	0.0	0.0	0.0	0.0	0.0	99.4	0.0	0.0	0.0	0.6	100.0	100.0
1211.20.2120	0.0	5.5	0.0	0.0	38.0	36.6	80.1	17.1	0.0	0.0	0.0	0.0	17.1	97.2
1211.20.2190	0.0	0.0	0.0	2.0	22.4	0.0	24.5	75.5	0.0	0.0	0.0	0.0	75.5	100.0
1211.20.2210	0.0	0.0	0.0	10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211.20.2220	0.0	0.0	0.0	0.0	0.0	0.0	0.0	0.0	94.6	0.0	0.0	0.0	94.6	94.6
1211.20.229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00.0	100.0
1211.20.92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211.20.9900	0.0	0.0	0.0	0.0	0.2	0.0	0.2	99.1	0.0	0.0	0.0	0.0	99.1	99.4
1212.20.2010	0.0	0.0	0.0	0.0	1.4	0.0	1.4	95.9	2.7	0.0	0.0	0.0	98.6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1212.20.6010	0.0	0.0	0.0	0.0	0.0	0.0	0.0	97.2	2.8	0.0	0.0	0.0	100.0
1214.90.1000	0.0	0.0	0.0	0.0	96.4	0.0	96.4	0.0	0.0	0.0	0.0	3.6	100.0
1214.90.9090	0.0	0.0	0.0	0.0	80.8	0.2	81.0	1.8	0.0	11.9	0.0	5.3	99.9
1301.90.1000	0.0	0.0	0.0	30.0	0.0	66.4	96.3	0.8	0.0	0.0	0.0	0.0	97.1
1301.90.9000	0.0	0.0	0.0	51.0	1.3	6.4	58.7	37.1	4.2	0.0	0.0	0.0	100.0
1302.19.1110	0.0	0.0	0.0	0.0	0.0	0.5	0.5	98.4	0.9	0.0	0.0	0.0	99.8
1302.19.1120	0.0	0.0	0.0	0.0	0.5	0.0	0.5	99.0	0.5	0.0	0.0	0.0	100.0
1302.19.1190	0.0	0.0	11.5	0.0	0.0	0.0	11.5	84.6	1.2	0.0	0.0	0.0	97.3
1302.19.1210	0.0	0.0	0.0	0.6	83.6	0.0	84.2	15.1	0.2	0.0	0.0	0.0	99.5
1302.19.122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302.19.1900	0.0	0.0	0.0	0.0	4.0	23.3	27.3	6.1	66.4	0.0	0.0	0.1	99.8
1402.00.0000	0.0	0.0	0.0	79.9	0.0	0.0	79.9	20.1	0.0	0.0	0.0	0.0	100.0
1403.00.0000	0.0	0.0	0.0	25.9	0.0	0.0	25.9	14.0	0.0	0.0	0.0	0.0	39.8
1404.1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404.10.9000	0.0	0.0	0.0	0.0	0.6	0.0	0.6	0.0	1.2	0.0	0.0	0.0	1.9
1404.90.1000	0.0	0.0	0.0	5.2	52.8	0.0	58.0	42.0	0.0	0.0	0.0	0.0	100.0
1404.90.2010	0.0	0.0	0.0	99.7	0.0	0.0	99.7	0.3	0.0	0.0	0.0	0.0	100.0
1404.90.2090	0.0	0.0	0.0	4.1	1.4	0.0	5.4	6.2	3.7	0.0	56.6	0.0	72.0
1404.90.9000	0.0	0.1	0.0	8.2	0.2	0.3	8.8	10.1	2.0	0.0	0.0	0.0	21.0
1507.10.0000	0.0	0.0	0.0	0.1	19.3	0.0	19.3	0.0	0.0	0.0	0.0	0.0	19.3
1507.90.9000	0.0	0.0	0.0	2.7	12.8	31.3	46.7	10.5	42.5	0.0	0.0	0.0	99.7
1514.11.0000	0.0	0.0	0.0	0.0	1.5	0.0	1.6	0.0	0.0	23.0	0.0	75.4	100.0
1514.91.1000	0.0	0.0	0.0	0.0	1.7	0.0	1.7	0.2	0.0	2.1	0.0	96.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1515.50.0000	0.0	0.0	0.0	0.0	1.8	1.4	3.3	81.7	5.1	0.0	0.0	0.0	86.9	90.1
1515.90.1000	0.0	0.0	0.0	0.0	0.0	0.0	0.0	99.7	0.3	0.0	0.0	0.0	100.0	100.0
1516.20.1050	0.0	0.0	0.0	0.0	21.4	0.0	21.4	0.0	78.6	0.0	0.0	0.0	78.6	100.0
1602.10.0000	0.0	0.0	0.0	0.0	0.4	99.6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602.20.1000	0.0	0.0	0.0	0.8	0.0	99.2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602.20.9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602.31.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602.32.1010	0.0	0.0	0.0	0.0	53.2	0.0	53.2	41.3	5.5	0.0	0.0	0.0	46.8	100.0
1602.32.1090	0.0	0.0	0.0	27.6	2.3	0.0	29.9	70.1	0.1	0.0	0.0	0.0	70.1	100.0
1602.32.9000	0.0	0.0	0.0	31.4	0.4	0.0	31.7	68.3	0.0	0.0	0.0	0.0	68.3	100.0
1602.39.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602.39.9000	0.0	0.0	0.0	0.3	0.0	2.6	2.9	97.0	0.1	0.0	0.0	0.0	97.1	100.0
1602.50.1000	0.0	0.0	0.0	17.9	0.1	0.0	18.0	4.5	0.0	54.3	1.6	0.0	60.5	78.4
1602.50.9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5	56.5	0.0	66.0	66.0
1602.90.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1602.90.9000	0.0	0.0	0.0	0.0	0.0	0.3	0.3	99.0	0.3	0.1	0.3	0.0	99.7	100.0
1603.00.1000	0.0	0.0	0.0	0.0	0.0	2.8	2.8	46.0	0.3	12.8	27.2	0.0	86.2	89.0
1603.00.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1701.91.0000	0.0	0.0	0.0	14.8	45.4	2.5	62.6	0.0	27.6	0.1	0.0	9.5	37.3	99.9
1701.99.0000	0.0	0.0	0.0	64.6	17.6	2.5	84.8	2.7	0.7	1.2	0.0	0.0	4.6	89.3
1702.19.9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1702.90.1000	0.0	8.5	0.0	0.1	9.1	0.1	17.8	0.0	38.8	3.1	36.5	0.5	78.9	96.7
1703.90.1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1704.90.1000	0.0	0.0	0.0	0.0	0.0	0.0	0.0	0.0	61.0	0.0	0.0	0.0	61.0
1806.90.2111	0.0	0.2	0.0	0.0	74.1	4.4	78.7	0.0	9.4	0.0	3.7	0.0	13.1
1806.90.2119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806.90.2920	0.0	0.0	0.0	0.1	99.8	0.0	100.0	0.0	0.0	0.0	0.0	0.0	100.0
1806.90.3091	0.0	0.0	0.0	0.0	0.0	99.6	99.6	0.0	0.2	0.0	0.0	0.0	99.8
1901.10.1010	0.0	0.0	0.0	0.0	1.6	2.5	4.1	0.1	0.1	41.8	53.9	0.0	95.9
1901.10.1090	0.0	0.0	0.0	0.6	13.4	85.3	99.3	0.0	0.6	0.0	0.1	0.0	0.7
1901.10.9090	0.0	0.0	2.3	0.0	5.6	87.6	95.5	0.5	2.8	0.0	1.1	0.0	4.5
1901.90.2000	0.0	0.1	0.0	0.3	8.7	63.7	72.9	0.0	16.0	8.2	2.8	0.0	27.1
1904.90.1000	0.0	0.0	0.0	8.5	0.1	1.5	10.1	89.4	0.2	0.0	0.0	0.0	89.6
1905.10.0000	0.0	35.6	0.0	30.0	14.7	0.0	80.2	0.0	0.0	3.2	0.0	0.0	3.2
1905.20.0000	0.0	8.7	0.5	0.0	32.0	55.8	97.1	0.0	2.3	0.0	0.0	0.0	2.3
1905.90.1010	0.0	0.0	0.0	0.0	90.0	0.6	90.7	0.0	0.0	0.1	0.0	0.0	0.1
1905.90.901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2001.90.9060	0.0	0.0	0.0	0.1	0.0	0.0	0.1	99.7	0.1	0.0	0.0	0.1	99.9
2001.90.9070	0.0	1.0	0.0	0.5	4.6	43.6	49.7	49.9	0.0	0.0	0.0	0.0	49.9
2003.20.0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2003.90.1000	0.0	0.0	0.0	0.0	0.0	0.0	0.0	99.8	0.2	0.0	0.0	0.0	100.0
2003.90.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2005.60.0000	0.0	0.0	0.0	0.0	40.4	0.0	40.4	59.5	0.1	0.0	0.0	0.0	59.6
2005.90.2000	0.0	0.0	0.0	4.5	0.0	0.0	4.5	95.5	0.0	0.0	0.0	0.0	95.5
2006.00.1000	0.0	0.0	0.0	0.0	0.0	92.9	92.9	0.0	7.1	0.0	0.0	0.0	7.1
2007.91.1000	0.0	2.4	8.4	0.0	65.5	21.1	97.5	0.0	0.0	2.4	0.0	0.0	2.4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2007.99.1000	0.0	0.4	11.3	0.0	46.0	22.5	80.1	18.2	0.3	0.8	0.0	0.3	19.6	99.7
2007.99.9000	2.2	0.1	0.0	1.2	5.2	5.4	14.1	8.4	0.2	0.0	0.9	0.2	9.7	23.8
2008.11.1000	0.0	0.0	0.0	0.0	41.8	0.0	41.9	46.5	0.1	0.0	0.0	2.7	49.3	91.2
2008.11.9000	0.0	0.0	0.0	0.2	4.9	0.0	5.1	93.9	0.1	0.3	0.0	0.0	94.3	99.4
2008.19.1000	0.0	0.0	0.0	0.0	0.1	1.0	1.1	98.2	0.7	0.0	0.0	0.0	98.8	99.9
2008.19.9000	0.0	0.0	0.3	0.5	23.7	2.3	26.9	57.4	3.1	0.1	0.0	0.3	60.9	87.8
2008.20.0000	0.0	0.5	0.0	96.0	2.7	0.3	99.5	0.4	0.0	0.0	0.0	0.0	0.4	99.9
2008.30.0000	0.0	0.0	0.3	2.1	6.2	1.9	10.5	84.1	0.5	0.0	0.0	0.0	84.6	95.1
2008.40.0000	0.0	0.1	0.0	0.0	4.2	39.6	44.0	38.4	0.0	0.0	0.0	0.0	38.4	82.4
2008.60.0000	0.0	0.0	0.0	0.0	71.7	13.4	85.1	14.9	0.0	0.0	0.0	0.0	14.9	100.0
2008.70.1000	1.5	0.0	0.0	6.2	0.4	27.7	35.9	40.8	0.0	0.0	0.0	0.0	40.8	76.6
2008.80.0000	0.0	0.6	2.6	0.0	78.7	15.9	97.8	0.7	0.0	0.9	0.6	0.0	2.2	100.0
2008.91.0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2008.99.9000	0.0	0.0	0.1	29.0	10.2	3.6	42.9	53.0	1.1	0.2	0.6	0.4	55.2	98.1
2009.21.0000	0.0	0.0	0.0	0.0	83.0	13.4	96.3	0.0	0.0	0.0	0.0	0.0	0.0	96.3
2009.29.0000	0.0	0.0	0.0	0.0	7.0	0.0	7.0	0.0	52.4	1.0	0.0	0.9	54.3	61.3
2009.31.9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2009.39.1000	0.0	0.0	0.0	0.1	37.9	41.8	79.8	0.0	0.2	0.0	0.0	0.0	0.3	80.1
2009.39.9000	0.0	0.0	0.0	0.1	3.8	22.7	26.5	0.0	0.1	0.0	0.0	0.0	0.1	26.6
2009.49.0000	0.0	0.0	0.5	62.9	11.1	3.7	78.3	0.8	0.0	0.3	0.0	1.6	2.7	80.9
2009.71.0000	0.0	0.0	0.0	0.0	83.0	0.7	83.7	11.9	0.0	1.5	2.7	0.0	16.2	99.9
2009.80.1010	0.1	0.0	0.0	0.0	81.3	8.8	90.3	9.1	0.0	0.0	0.0	0.1	9.3	99.6
2009.80.1020	5.2	0.0	0.0	0.0	38.5	38.3	82.1	0.0	0.2	0.1	0.0	0.0	0.3	82.4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2009.80.1090	0.7	0.0	0.0	0.8	23.8	7.0	32.3	13.6	1.4	0.1	2.0	0.1	17.0	49.3
2009.80.2000	0.0	0.0	0.2	0.0	50.0	31.8	81.9	4.7	0.7	0.0	0.4	0.0	5.8	87.7
2009.90.1010	0.0	0.0	0.0	0.0	0.2	73.5	73.7	0.0	0.0	23.2	0.0	0.0	23.3	97.0
2009.90.1020	0.0	0.0	0.0	0.7	23.3	8.5	32.6	0.0	0.0	12.7	32.8	0.0	45.5	78.1
2009.90.1030	0.0	0.0	0.2	0.3	17.6	56.5	74.6	0.0	0.0	0.0	0.0	0.0	0.0	74.6
2009.90.1090	0.0	0.0	0.1	0.5	82.7	6.6	89.9	0.0	0.1	1.0	2.7	0.0	3.9	93.8
2009.90.9000	0.0	0.0	0.4	0.5	58.4	8.3	67.6	7.6	0.4	3.0	0.0	0.0	11.1	78.7
2101.20.9000	0.1	0.0	2.8	0.0	31.6	1.3	35.9	33.7	29.0	0.0	0.0	0.1	62.8	98.7
2101.30.9000	0.0	0.0	0.0	0.0	0.0	0.3	0.3	88.0	9.7	0.0	0.0	0.0	97.7	98.0
2102.10.2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102.10.4000	0.0	0.0	0.9	0.0	0.0	42.7	43.6	12.1	11.3	0.0	0.0	0.0	23.4	67.0
2102.20.2000	0.0	0.0	0.0	11.7	0.0	0.0	11.7	35.8	52.5	0.0	0.0	0.0	88.3	100.0
2102.30.0000	0.0	0.0	0.0	0.1	0.0	10.1	10.2	71.7	18.1	0.0	0.0	0.0	89.8	100.0
2103.90.1010	0.0	0.0	0.0	0.0	0.0	0.0	0.0	57.6	42.4	0.0	0.0	0.0	100.0	100.0
2103.90.102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2103.90.9010	0.0	0.0	0.6	3.4	53.6	4.0	61.6	0.0	37.7	0.0	0.0	0.0	37.7	99.3
2103.90.9040	0.0	0.0	0.0	0.0	0.0	0.0	0.0	98.5	0.0	0.0	0.0	0.0	98.5	98.5
2106.90.3011	0.0	0.0	0.0	0.3	0.4	0.2	0.9	98.9	0.1	0.0	0.0	0.0	99.0	100.0
2106.90.3021	0.0	0.1	0.0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2
2106.90.3029	0.0	22.4	0.0	0.0	46.7	0.4	69.5	0.0	20.3	0.0	0.0	0.0	20.3	89.8
2106.90.9091	0.0	0.7	0.0	0.4	18.3	0.9	20.2	11.1	0.7	49.2	18.3	0.3	79.6	99.8
2201.90.1000	0.0	0.0	0.0	0.0	0.0	66.4	66.4	9.0	0.0	0.0	0.0	0.0	9.0	75.5
2202.90.2000	0.0	0.0	0.4	11.9	53.6	14.0	79.9	0.3	1.5	0.3	0.1	15.5	17.7	97.6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2202.90.3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205.10.0000	4.3	0.0	0.0	0.0	35.7	6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205.90.0000	0.0	0.0	0.0	0.0	0.5	0.0	0.5	99.5	0.0	0.0	0.0	0.0	99.5	100.0
2207.10.1000	0.0	0.0	0.0	2.3	0.0	0.0	2.3	37.9	0.7	0.0	0.0	0.0	38.6	40.9
2207.10.9010	0.0	0.0	0.0	2.9	0.0	0.0	2.9	35.6	0.0	0.0	0.0	0.0	35.6	38.5
2208.70.2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2208.90.1000	0.0	0.0	0.0	2.1	0.5	63.2	65.8	0.0	0.1	0.0	0.0	0.0	0.1	65.9
2209.00.9000	0.0	0.6	0.0	1.8	1.6	32.8	36.8	2.3	53.1	0.0	6.7	0.0	62.1	98.9
2306.90.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0.0
2308.00.1000	0.0	0.0	0.0	0.6	0.0	0.0	0.6	97.0	0.0	0.0	0.0	0.0	97.0	97.6
2308.00.9000	0.0	0.0	0.0	4.0	0.4	0.0	4.5	93.4	0.1	0.0	0.0	0.0	93.5	98.0
2309.90.1091	0.0	0.0	0.0	0.0	0.2	91.6	91.8	0.0	0.0	0.0	8.2	0.0	8.2	100.0
2309.90.2010	0.0	43.3	0.0	6.0	12.2	24.4	85.9	1.2	0.2	2.4	0.0	0.0	3.9	89.8
2309.90.2020	0.0	0.0	5.6	0.1	14.9	78.2	98.8	1.0	0.0	0.2	0.0	0.0	1.2	100.0
2309.90.2099	0.0	11.1	0.1	5.7	20.2	46.8	83.7	5.0	0.9	1.3	0.0	5.6	12.9	96.7
2309.90.9000	0.6	6.3	0.1	5.4	22.2	27.9	62.6	11.5	17.2	2.2	0.0	4.6	35.5	98.1
2401.10.1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2401.10.3000	0.0	0.0	0.0	0.0	0.0	62.6	62.6	0.0	0.0	0.0	0.0	0.0	0.0	62.6
2401.10.9000	0.0	0.0	0.0	1.5	87.9	0.0	89.4	4.6	0.0	0.0	0.0	0.0	4.6	94.0
2401.20.1000	0.0	0.0	0.0	0.0	22.0	4.2	26.2	15.8	0.0	0.0	0.0	0.0	15.8	42.0
2401.20.2000	0.0	0.0	0.0	3.5	14.8	0.0	18.3	0.0	0.0	0.0	0.0	0.0	0.0	18.3
2401.20.3000	0.0	0.0	0.0	0.0	4.9	52.8	57.7	0.0	0.0	0.0	0.0	0.0	0.0	57.7
2401.20.9000	0.0	0.0	0.0	0.0	32.0	53.7	85.6	0.0	0.0	0.0	0.0	0.0	0.0	85.6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2401.30.1000	0.0	0.0	0.0	0.0	0.1	0.0	0.1	32.3	0.0	0.0	0.0	0.0	32.3
2401.30.2000	0.0	0.0	0.0	0.1	16.1	0.0	16.2	0.0	0.0	0.0	0.0	0.0	0.0
2401.30.9000	0.0	0.0	0.0	1.6	0.0	12.7	14.3	0.0	0.0	0.0	0.0	0.0	16.2
2402.10.1000	0.0	0.0	0.1	0.1	4.5	3.5	8.1	0.0	0.0	0.0	0.6	0.6	8.7
2402.10.2000	0.0	0.0	0.0	0.0	0.9	0.0	0.9	13.8	0.0	0.0	0.0	0.0	14.7
2402.10.3000	0.0	0.0	20.6	0.0	29.0	38.5	88.1	0.0	0.0	0.0	0.0	0.0	88.1
2402.20.1000	0.0	0.0	4.4	11.1	10.0	7.1	32.6	4.8	54.5	0.0	0.0	0.0	59.3
2402.20.9000	0.0	6.3	0.0	91.0	0.8	0.9	98.9	0.0	0.7	0.0	0.0	0.0	99.6
2402.90.0000	0.0	0.0	0.0	29.2	0.2	0.0	29.4	0.1	0.0	0.0	0.0	0.0	29.5
2403.10.1000	0.0	0.0	0.0	65.9	1.0	33.0	100.0	0.0	0.0	0.0	0.0	0.0	100.0
2403.10.9000	0.0	0.0	0.2	67.2	0.0	5.2	72.7	0.0	26.3	0.0	0.0	0.0	99.1
2403.91.1000	0.0	0.0	0.0	0.0	0.0	99.6	99.6	0.2	0.0	0.0	0.0	0.0	99.8
2403.91.9000	0.0	0.0	0.0	0.0	0.0	99.6	99.7	0.0	0.0	0.0	0.0	0.0	99.7
2403.99.1000	0.0	0.0	0.0	0.0	1.1	13.1	14.2	0.0	83.5	0.0	0.0	0.0	97.7
2403.99.2000	0.0	0.0	0.0	0.0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2403.99.3000	0.0	0.0	0.0	0.1	0.0	0.0	0.1	95.3	0.0	0.0	0.0	0.0	95.3
2403.99.9000	0.0	0.0	10.6	51.4	0.0	0.0	61.9	0.0	38.0	0.0	0.0	0.0	100.0
2905.43.0000	0.0	0.0	12.6	0.0	2.2	42.0	56.8	28.0	2.8	0.0	0.0	0.0	87.7
3505.10.2000	0.0	0.0	8.4	0.0	76.3	0.0	84.7	10.3	3.0	0.0	0.0	0.0	98.0
3505.10.3000	0.0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3505.10.4000	0.0	40.8	0.0	17.2	19.5	1.8	79.3	0.0	2.1	18.5	0.0	0.1	100.0
3505.10.5000	0.0	0.1	0.0	21.4	2.3	72.5	96.3	0.9	1.1	1.4	0.0	0.0	99.7
3505.10.9000	0.0	0.0	0.0	40.3	2.9	0.8	44.0	47.9	6.5	1.0	0.0	0.0	99.4

부표 3. 계속

주요 세번별	기타결 및 추진중 FTA					합상 진행중 FTA					A+B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미국	EU	비중(A)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비중(B)
3505.20.1000	0.0	0.0	0.0	0.0	0.0	22.7	22.7	2.4	0.5	0.0	0.0	0.0	3.0	25.7
3505.20.2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100.0	100.0
3505.20.9000	0.0	0.0	0.0	2.0	8.6	0.0	10.7	63.2	3.5	22.6	0.0	0.0	89.3	100.0
3824.60.0000	0.0	0.0	0.0	13.0	0.0	38.2	51.2	48.2	0.7	0.0	0.0	0.0	48.8	100.0
4101.50.1013	0.0	0.0	0.0	0.0	0.0	0.0	0.0	0.0	59.3	38.8	2.0	0.0	100.0	100.0
4101.50.1019	0.0	0.0	0.0	0.0	86.3	2.9	89.2	0.0	10.8	0.0	0.0	0.0	10.8	100.0

부표 4. 주요 세번별 FTA별 관세감축 스케줄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0101.90.9000	당나귀, 노새와버새(번식용이외)	2009	2011	50%감축	20%감축	50%감축	A	5	10
0102.90.2000	육우(기타)						E-2	15	15
0103.91.0000	돼지(50kg 미만의 것)						C	5	10
0103.92.0000	돼지(50kg 이상의 것)						C	5	10
0104.20.1000	산양(유웅)	2009	2011	20%감축	20%감축	20%감축	B	7	10
0105.19.1000	오리(185g 이하/번식용의 것)						A	0	10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와 이분도체)						E-2	15	15+SG
0201.20.0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뼈채절단)						E-2	15	15+SG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없는 것)						E-2	15	15+SG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와 이분도체)						E-2	15	15+SG
0202.20.0000	쇠고기(냉동/기타/뼈채절단)						E-5	15	15+SG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없는 것)						E-5	15	15+SG
0203.19.1000	돼지고기(냉장/삼겹살)	2014					E-5	10	10+SG
0203.19.9000	돼지고기(냉장/기타)	2014					E-5	10	10+SG
0204.10.0000	어린면양(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014	2016		50%감축	2011	A	7	10
0204.21.0000	면양기타(냉장/도체와 이분도체)	2014	2016		50%감축	2011	B	7	10
0204.22.0000	면양기타(냉장/기타/뼈채로 절단)	2014	2016		50%감축	2011	A	7	10
0204.23.0000	면양기타(냉장/뼈없는 것)	2014	2016		50%감축	2011	B	7	10
0204.30.0000	어린면양(냉동/도체, 이분도체)	2009	2016		50%감축	2011	A	7	10
0204.41.0000	면양기타(냉동/도체와 이분도체)	2014	2016		50%감축	2011	A	7	10
0204.42.0000	면양기타(냉동/뼈채로 절단한 것)	2009	2016		50%감축	2011	B	7	10
0204.43.0000	면양기타(냉동/뼈없는 것)	2014	2016		50%감축	2011	B	7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204.50.2000	산양(냉동한 것)	2014	2016		10%감축	10%감축	A	7	10
0206.10.0000	소식용설육(신선/냉장)	2014					D	15	15
0206.21.0000	소식용설육(희/냉동)	2009					D	15	15
0206.22.0000	소식용설육(간장/냉동)	2014					D	15	15
0206.29.1000	소식용설육(꼬리/냉동)	2009					E-2	15	15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2009					E-2	15	15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2009					E-2	15	15
0206.90.0000	식용칠육(기타/냉동)	2014					E-2	15	12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2014					E-2	10	10
0207.14.1010	닭다리(냉동)						E-5	10	10
0207.14.1020	닭가슴(냉동)						E-5	13	12
0207.14.1030	닭날개(냉동)						E-5	13	12
0207.14.1090	닭기타절단육(냉동)						E-5	10	10
0207.14.2090	닭기타설육(냉동)						D	10	10
0207.26.1000	칠면조(절단/냉장)	2014	2016			10%감축	A	7	10
0207.26.2090	칠면조 기타설육(냉장)	2014	2016			10%감축	A	7	10
0207.27.2090	칠면조 기타설육(냉동)	2011	2016			10%감축	A	7	10
0207.33.0000	오리.거위.기니아미절단/냉동)						E-2	13	12
0207.35.2010	오리.거위.기니아(간장/냉장)						B	10	10
0207.35.2090	오리.거위.기니아(기타설육/냉장)						B	10	10
0207.36.1000	오리.거위.기니아(절단/냉동)						E-5	13	12
0207.36.2010	오리.거위.기니아(간장/냉동)						B	7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철대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208.90.1000	사슴고기(기타육과 식용설육)		2016			10%감축	B	7	10
0208.90.9090	육식용설육기타(해양동물의것제외)		2016			10%감축	B	7	10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진조/훈제))						D	15	15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C	15	15
0210.92.00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육과식용설육)	2014	2011				B		1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 포함한다)	2014	2016			30%감축	A	0	10
0210.99.1030	가금류(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2014					B	10	10
0210.99.1090	육 또는 식용설육(기타/분.조분)	2014	2016	30%감축	30%감축	30%감축	A	7	10
0210.99.9020	가금류(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2014				30%감축	B	10	10
0210.99.9090	기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2014	2016	30%감축		30%감축	B	7	10
0401.10.0000	밀크와 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진중량의 100분의1이하)						E-2	15	15
0401.20.0000	밀크와 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고 100분의 6 이하)						E-2	15	15
0401.30.1000	냉동크림(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진중량의 100분의6을 초과)						E-2	10	10
0401.30.9000	크림기타(미농축/미첨가/지방분이 진중량의 100분의 6을 초과)						E-2	13	12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 진중량 1.5%이하)						E-2	X	ZZI+TRQ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E-2	X	ZZI+TRQ
0402.10.9000	분유기타(감미 첨가)						E-2	X	ZZI+TRQ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철폐	상가 포프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402.21.1000	진지분유(지방분 진중량 1.5%초과)						E-2	X	ZZ1+TRQ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E-2	X	ZZ1+TRQ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E-2	X	ZZ1+TRQ
0402.91.1000	무당인유						E-2	X	ZZ1+TRQ
0402.91.9000	연유기타(설탕.감미료 미첨가)						E-2	X	ZZ1+TRQ
0402.99.1000	가당인유						E-2	X	ZZ1+TRQ
0402.99.9000	연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E-2	X	ZZ1+TRQ
0403.10.1000	요구르트(액상)	2014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10	10
0403.10.2000	요구르트(냉동)	2014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10	10
0403.10.9000	요구르트(기타)	2014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10	10
0403.90.1000	버터밀크						E-2	X	ZZ1+TRQ
0403.90.2000	응고유와 응고크림						D	7	10
0403.90.9000	밀크와크림기타(발효또는산성화된)			20%감축	20%감축	20%감축	D	7	10
0404.10.1019	유장분말						D	10	10+TRQ
0404.10.1099	유장(기타)						D	10	10+TRQ
0404.10.2119	변성유장(유당제거)						D	10	10+TRQ
0404.10.2129	변성유장(무기질제거)						D	10	10+TRQ
0404.10.2139	변성유장(유장농축단백질)						D	10	10+TRQ
0404.10.2199	변성유장(기타/유당,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 제거)						D	10	10+TRQ
0404.90.0000	유장기타						E-5	10	10
0405.10.0000	버터						E-2	10	10+TRQ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405.90.0000	밀크에서 얻어진 기타 지와 유						E-2	10	10+TRQ
0406.10.1000	치즈(신선)						E-1	15	15+TRQ
0406.10.2000	키드						D	10	10
0406.20.0000	치즈(길았거나 분상의 모든 종류)						E-2	15	15+TRQ
0406.30.0000	치즈(가공/길았거나 분상 제외)						E-2	15	15+TRQ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터로 생산된 바인을 함유한 기타 치즈						D	10	10
0406.90.1000	치즈기타	2014			2016(TRQ)	40%감축	E-1	15	10+TRQ
0406.90.2000									15+TRQ
0407.00.1010	종련(신선)	2014					E-2	10	10
0407.00.1090	조란기타(신선)	2014					D	15	15
0407.00.9000	조란기타	2014					D	10	10
0408.11.0000	난황(건조한 것)						C	13	12
0408.19.0000	난황(기타)						C	13	12
0408.91.0000	조란(건조한 것)	2014					D	10	10
0408.99.1000	조란(닭의 것)						E-2	15	15
0408.99.9000	조란기타						D	10	10
0409.00.0000	천연꿀						E-2	X	ZZ2+TRQ
0410.00.3000	로얄제리	2009					B	10	10
0504.00.1010	장(소의 것)	2014	2016				C	0	15
0504.00.1090	장(기타동물)	2014	2016				A	0	12
0504.00.3000	동물의 위	2014	2016				C	15	15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506.90.2000	골분		2016			10%감축	D	0	10
0507.90.1110	녹용(진지)						E-2	0	15
0507.90.1190	녹용(기타)						E-2	0	15
0507.90.1200	녹각						E-2	0	15
0511.99.4000	동물의 건과 근	2014	2016			10%감축	A	0	10
0602.10.9000	산식물 기타(뿌리없는삼수. 접수)	2009				20%감축	D	0	10
0602.20.7010	밤나무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20.7020	호도나무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20.9000	과수·유실수(기타)	2009	2011			20%감축	A	0	10
0602.30.0000	칠죽속의 식물 및 진달래(접목여부불문)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90.2019	소나무(기타)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90.2040	편백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90.2061	단풍나무(분재용)	2009				20%감축	A	0	10
0602.90.2069	단풍나무(기타)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90.2071	소사나무(분재용)	2009				20%감축	A	0	10
0602.90.2089	느티나무(기타)	2009	2016			20%감축	A	10	10
0602.90.2091	기타산림수분재용)	2009				20%감축	A	0	10
0602.90.2099	기타산림수(기타)	2009	2016			20%감축	A	10	10
0602.90.9010	목단	2009	2016			20%감축	A	0	10
0602.90.9020	동백	2009	2016			20%감축	A	10	10
0603.10.9000								0	10
0603.90.0000	절화와 꽃(기타/신선외)	2014	2016			10%감축	D	0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철폐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604.10.0000	이끼와지의	2014	2016		20%감축	20%감축	A	0	10
0604.91.1090	식물외 기타(은행잎이외/신선)	2009			20%감축	20%감축	B	5	10
0701.10.0000	감자(종자용)						E-2	0	10
0703.10.1000	양파(신선/냉장)						E-5	10	15+18+SG
0703.20.1000	마늘(신선/냉장/탈피)						E-5	7	15+18+SG
0703.20.9000	마늘(신선/냉장/기타)						E-5	X	15+18+SG
0704.20.0000	방울다다기양배추(신선/냉장)	2014	2016			10%감축	D	0	10
0705.11.0000	상추(결구신선/냉장)	2009	2016				C	0	10
0705.19.0000	상추(기타/신선/냉장)	2009					C	5	10
0706.90.1000	무(신선/냉장)	2009	2016				C	0	10
0709.10.0000								5	10
0709.51.7000	양송이 버섯(신선/냉장)	2014					D	0	10
0709.51.9000	기타(신선/냉장)(아가리쿠스의버섯)	2014					A	0	10
0709.52.0000									10
0709.59.1000	송이버섯(신선/냉장)	2014					C	0	.
0709.59.2000	표고버섯(신선/냉장)						D	0	15
0709.59.3000	영지버섯(신선/냉장)	2014					A	10	10
0709.59.5000	팽이버섯(신선/냉장)	2014					A	15	10
0709.59.9000	기타버섯(신선/냉장)	2014	2016				B	0	10
0709.60.1000	고추류(단고추/벨타임/신선/냉장)						E-5	0	15+18+SG
0709.60.9000	고추류(기타/신선/냉장) (캐프시컴속또는페멘타속의 과실)						E-5	0	15+18+SG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철폐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709.90.1000	고사리(신선/냉장)						C	X	10
0709.90.9000	기타채소(신선/냉장)	2014					A	10	10
0710.80.1000	양파(냉동)	2014	2016				D	5	12
0710.80.2000	마늘(냉동)		2016				E-5	0	15
0710.80.3000	죽순(냉동)	2009					C	5	10
0710.80.5000	고사리(냉동)	2009					B	5	10
0710.80.6000	송이버섯(냉동)	2009					B	10	12
0710.80.7000	고추류(냉동)(캡시컴속또는피멘타속의 과일)		2016				E-5	5	15
0711.40.0000	오이류(일시저장처리)	2014	2016				B	0	10
0711.59.1000	송로(일시저장처리)	2009					B	0	10
0711.59.9000	버섯과 송로 기타(일시저장처리)	2009	2016				A	0	10
0711.90.1000	마늘(일시저장처리)						E-5	0	15+18+SG
0711.90.3000	죽순(일시저장처리)	2009					C	10	10
0711.90.4000	담근(일시저장처리)	2014	2016				A	0	10
0711.90.5010	고사리(일시저장처리)	2009					B	X	12
0711.90.5020	고배(일시저장처리)	2009					B	10	10
0711.90.5091	고추의 것(일시저장처리)						E-5	0	15+18+SG
0712.20.0000	양파(건조)						E-5	X	15+18+SG
0712.31.1000	양송이버섯(건조한것) (아가리쿠스속의버섯)	2014	2016			10%감축	A	0	10
0712.32.0000	목이버섯(아우리클라리아종)(건조)	2014					B	X	10
0712.39.1010	송이버섯(건조)	2014					C	5	12
0712.39.1020	표고버섯(건조)	2014					D	10	15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싱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712.39.1030	영지버섯(건조)	2014	2016	10%감축			A	10	10
0712.39.1040	느타리버섯(건조)	2014	2016	10%감축			A	10	10
0712.39.2000	송로(건조)			10%감축		10%감축	B	0	10
0712.90.1000	마늘(건조)						E-5	0	15+18+SG
0712.90.2010	고사리(건조)						E-2	0	10
0712.90.2040	당근(건조)	2014	2016	10%감축			D	10	10
0712.90.2050	호박(건조)			20%감축			D	5	10
0712.90.2060	양배추(건조)	2014	2016	20%감축			B	7	10
0712.90.2070	토란줄기(건조)	2009	2016				D	7	10
0712.90.2094	고비(건조)						B	5	10
0713.10.9000	완두(기타)	2014	2016				C	7	10
0713.20.0000	이집트콩(가반조스)	2014	2016				C	0	10
0713.31.9000	녹두(기타)						E-2	0	15+TRQ+SG
0713.32.9000	팥(기타)						E-2	5	15+TRQ+SG
0713.33.9000	강낭콩(기타)	2014	2016				E-4	5	10
0713.40.0000	렌즈콩(건조)	2014	2016				D	5	10
0714.10.2010	매니옥칩(건조)						E-4	5	10
0714.10.2020	매니옥펠리트(건조)						E-2	5	10
0714.20.1000	고구마(신선)						E-2	15	10+TRQ+SG
0714.20.3000	고구마(냉장)						E-2	5	10+TRQ+SG
0714.20.4000	고구마(냉동)						D	13	10
0714.90.1090	칩뿌리(기타)	2009					D	5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714.90.9090	서류(기타)						E-3	10	10+TRQ+SG
0802.22.0000	헤즐너트펠버트(탈각)	2009	2016		20%감축	20%감축	A	0	10
0802.31.0000	호도(미탈각)	2011					E-2	0	15
0802.40.1000	밤(미탈각)						E-2	5	15
0802.40.2000	밤(탈각)						E-2	15	15
0802.90.1020	잣(탈각)						E-2	15	15
0802.90.2010	은행(미탈각)						B	0	10
0802.90.2020	은행(탈각)						B	15	10
0804.10.0000	대추야자(신선/건조)						E-2	10	10
0804.30.0000	과인애플(신선/건조)						E-5	0	10
0804.50.2000	맹고(신선/건조)						E-2	5	10
0804.50.3000	맹고스틴(신선/건조)						E-2	0	10
0805.10.0000	오렌지(신선/건조)						E-1	5	ZZ3+TRQ
0805.20.1000	감귤(신선/건조)						E-5	5	15
0805.20.9000	맨더린(기타/신선/건조)						E-5	0	15
0805.50.2010	라임(시트러스 오람터플리아)	2014					A	15	10
0806.10.0000	포도(신선한것)	2014					E-2	0	17+Seasonal
0807.11.0000	수박(신선)						C	X	12
0807.19.0000	멜론(기타/신선)	2014	2016				D	S	12
0808.20.1000	배(신선)						E-1	10	10
0809.40.1000	자두(신선)		2016				C	5	10
0810.40.0000	크랜베리, 빌베리와기타박시니엄종의과실(신선)	2014	2016		20%감축		B	10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0810.50.0000	키위푸르트(신선)	2014	2016				D	10	15
0810.90.2000	단감(신선)	2014					E-2	15	10
0810.90.5000	매실(신선)		2016				D	10	10
0810.90.9000	기타과실(신선)	2014	2016				B, E-2	10	10
0811.90.1000	밤(냉동)	2014					E-2	7	15
0811.90.2000	대추(냉동)	2014					E-2	5	12
0811.90.3000	잣(냉동)	2014					E-2	5	15
0813.30.0000	사과(건조)	2014	2016				E-2	0	10
0813.40.1000	감(건조)						E-2	0	10
0813.40.2000	대추(건조)						E-2	0	12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않은것/3kg이하포장)						E-5	5	15+18+SG
0902.20.0000	녹차(기타/발효하지않은것)						E-5	0	15+18+SG
0904.20.1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 않은것)						E-5	5	15+18+SG
0904.20.2000	고추류(건조/파쇄 또는 분쇄한것)						E-5	0	15+18+SG
0910.10.0000	생강						E-2	0	15+18+SG
1003.00.1000	맥주맥						E-3	0	15+TRQ+SG
1003.00.9010	겔보리						E-3	3	15+TRQ+SG
1003.00.9020	쌀보리						E-3	0	15+TRQ+SG
1003.00.9090	보리기타						E-3	15	10
1007.00.1000	수수(종사용)		2016				A	E	10
1008.10.0000	메밀						E-2	E	15+TRQ+SG
1008.90.0000	기타곡물						E-3	0	15+TRQ+SG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1102.90.1000	보리가루					E-3	0	10	
1102.90.9000	기타곡물					E-3	0	15+TRQ+SG	
1103.11.0000	분쇄물,조분(밀의 것)		2016			D	E	10	
1103.13.0000	분쇄물,조분(옥수의 것)					E-2	10	10	
1104.19.2000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E-3	15	10	
1104.19.9000	압착플레이크(기타곡물)					E-3	13	15+TRQ+SG	
1104.23.0000	가공곡물(옥수의 것)					E-2	10	10	
1104.29.1000	가공곡물(울무의 것)		2016			E-3	15	15+TRQ+SG	
1104.29.9000	가공곡물(기타의 것)					E-3	10	15+TRQ+SG	
1104.30.1000	곡물배아(쌀의 것)					D	15	10	
1105.10.0000	감자분,조분과분말					E-2	15	10+TRQ+SG	
1105.20.0000	감자플레이크,임펄렛리트					E-2	5	10+TRQ+SG	
1107.10.0000	맥아(볶지않은 것)					E-3	5	15+TRQ+SG	
1107.20.1000	맥아(훈연한 것)					E-3	5	10	
1108.11.0000	진분(밀의 것)		2016			E-2	15	10	
1108.12.0000	진분(옥수의 것/식품용)					E-2	10	15+TRQ+SG	
1108.13.0000	진분(감자의 것)					E-2	5	15+TRQ+SG	
1108.14.0000	진분(대니옥(카사바)의 것/식품용)					E-4	5	15+TRQ+SG	
1108.19.1000	진분(고구마의 것)					E-2	15	15+TRQ+SG	
1108.19.9000	진분(기타의 것)					E-3	15	15+TRQ+SG	
1201.00.9090	대두(기타)					E-2	15	ZZ5+TRQ	
1202.10.0000	낙화생(미탈각)					E-2	0	15+18+SG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1202.20.0000	낙화생(탈각)						E-2	5	15+18+SG
1207.40.0000	참깨						E-2	0	15+18+SG
1207.99.1000	틀깨씨		2016				D	0	10
1210.10.0000	호프분쇄한것,분쇄또는펠리트상의것을제외한다		2016				A	0	10
1211.20.1100	인삼류(수삼)						E-2	0	18+TRQ+20+SG
1211.20.1210	인삼류(백삼/본삼)						E-2	0	18+TRQ+20+SG
1211.20.1220	인삼류(백삼/미삼)						E-2	0	18+TRQ+20+SG
1211.20.1240	인삼류(백삼/잡삼)						E-2	X	18+TRQ+20+SG
1211.20.1310	인삼류(홍삼/본삼)						E-2	X	18+20+SG
1211.20.1320	인삼류(홍삼/미삼)						E-2	X	18+20+SG
1211.20.1330	인삼류(홍삼/잡삼)						E-2	X	18+20+SG
1211.20.2110	인삼분(백삼)		2016				C	X	15
1211.20.2120	인삼타브렛또는인삼캡슐		2016				D	X	10
1211.20.2190	인삼류(기타백삼분말)		2016				C	X	15
1211.20.2210	인삼류(홍삼분)						E-2	15	15+18+SG
1211.20.2220	인삼류(홍삼타브렛/캡슐)						E-2	10	15+18+SG
1211.20.2290	인삼류(기타홍삼분말)						E-2	7	15+18+SG
1211.20.9200	인삼종자						E-2	15	15+18+SG
1211.20.9900	인삼류(기타)						E-2	15	15+18+SG
1212.20.2010									
1212.20.6010									
1214.90.1000	사료용근채류		2016				D	0	15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1214.90.9090	사료용근채류(기타)		2016				D	0	15+TRQ
1301.90.1000	올레오레진	2004		2006	2006	2006	B	0	0
1301.90.9000	락검기타	2004		2006	2006	2006	D	0	0
1302.19.1110	인삼엑스(백삼)		2016	10%감축	10%감축	10%감축	D	0	0
1302.19.1120	인삼엑스분(백삼)		2016	10%감축	10%감축	10%감축	C	0	0
1302.19.1190	인삼엑츄.엑스기타(백삼)		2016	10%감축	10%감축	10%감축	C	0	0
1302.19.1210	인삼류(홍삼엑스)								
1302.19.1220	인삼류(홍삼엑스분)								
1302.19.1900	인삼류(기타인삼엑츄.엑스)		2016	10%감축	10%감축	10%감축	E-2	13	15+18+SG
1402.00.0000									
1403.00.0000									
1404.10.1000									
1404.10.9000									
1404.90.1000	조각용으로사용되는종자.검질밧너트	2004		2006	2006	2006	A	0	0
1404.90.2010	수과(적과)	2004		2006	2006	2006	B	0	0
1404.90.2090	수과(기타)	2004		2006	2006	2006	B	0	0
1404.90.9000	기타 식물성생산물	2004		2006	2006	2006	A	0	0
1507.10.0000	대두유(조유)		2016		10%감축	10%감축	B	0	0
1507.90.9000	대두유(기타)		2016		10%감축	10%감축	D	0	0
1514.11.0000	유채유와 그 분획물(저에루크산/조유)		2016		10%감축	10%감축	C	0	0
1514.91.1000	유채유(기타/레이프유 또는 플라유)(조유)						C	5	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E-2	5	15+18+SG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E-3	0	12
1516.20.1050	참기름과그분획물						D	5	12
1602.10.0000	육,실육(균질화조제품)						E-2	0	15
1602.20.1000	동물간장(밀폐용기의것)	2014	2016				B	5	10
1602.20.9000	동물간장(기타조제저장)	2014	2016				A	5	10
1602.31.1000	칠면조의것(밀폐용기의것)	2011	2016				B	15	10
1602.32.1010	삼계탕(밀폐용기의것)						E-2	7	10
1602.32.1090	닭고기(기타 밀폐용기의것)						E-5	7	10
1602.32.900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E-5	7	10
1602.39.1000	가금류의 것(밀폐용기의것)	2014					E-2	10	12
1602.39.9000	가금류의 것(기타조제저장)	2014					E-2	10	12
1602.50.1000	소의것(밀폐용기의것)						E-2	5	15
1602.50.9000	소의것(기타조제저장)						E-2	5	15
1602.90.1000	조제육실육(밀폐용기의것)						C	5	15
1602.90.9000	조제육,실육기타						C	15	15
1603.00.1000	육엑스						E-2	15	12
1603.00.2000	육즙						E-2	15	15
1701.91.0000	사탕수수,무당(기타)형미또는착색제가첨가된것						E-2	0	16+20+SG
1701.99.0000	사탕수수,무당기타						E-2	0	16+20+SG
1702.19.9000	유당시럽기타						B	5	10
1702.90.1000	인조꿀						E-2	5	10
1703.90.1000	당밀(기타)주정제조용)	2004	2006	2006	2006		A	5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1704.90.1000	감초엑스(과자로 만들어진것 제외)	2009	2011	40%감축	40%감축	40%감축	B	0	10
1806.90.2111	조제분유(유아용)	2020					B	5	12
1806.90.2119	조제식료품(유아용)	2014					B	5	12
1806.90.2920	조제식료품기타(0401-0404호의것)	2020					C	0	10
1806.90.3091	조제식료품기타(남알상의 쌀)						E-2	0	10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	2020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0	10+TRQ
1901.10.1090	조제식료품(유아용)	2014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0	10+TRQ
1901.10.9090	조제식료품기 타	2009	2011	20%감축	20%감축	20%감축	B	10	10
1901.90.2000	조제식료품기타(제0401호-제0404호물품)						E-5	0	10
1904.90.1000	쌀 조제품(코코아 미포함/짜거나 삶은 쌀)						E-2	0	10
1905.10.0000	귀리빵	2009	2011	50%감축	50%감축	50%감축	A	0	10
1905.20.0000	진저브레드 기타 이와 유사한것	2009	2011	50%감축	50%감축	50%감축	A	10	10
1905.90.1010	식빵	2009	2011	50%감축	50%감축	50%감축	B	5	10
1905.90.9010	제안용에 적합한 빈 캡슐	2009	2011	50%감축	50%감축	50%감축	B	5	10
2001.90.9060	마늘(조제저장처리)		2016				E-2	0	10
2001.90.9070	양파(조제저장처리)		2016				E-2	5	10
2003.20.0000	송로(조제저장처리)						C	0	10
2003.90.1000	표고버섯(조제저장처리)	2014					C	0	15
2003.90.2000	송이버섯(조제저장처리)	2009					C	5	15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조제저장처리)	2009	2016			10%감축	A	5	10
2005.90.2000								5	10
2006.00.1000	마롱클라세(설탕저장처리)	2009		10%감축			E-2	10	15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2007.91.1000	캠.체리.마말레이드(감귤류)	2014	2016	20%감축	20%감축	20%감축	D	5	10
2007.99.1000	캠.체리.마이말레이드기타	2011	2016	20%감축	20%감축	20%감축	E-2	5	10
2007.99.9000	견과과실기타(조제저장처리)	2009	2016	20%감축	20%감축	20%감축	B	5	10
2008.11.1000	피넛버터(조제저장처리)						C	5	10
2008.11.9000	낙화생기타(조제저장처리)		2016				E-2	7	10
2008.19.1000	밤(조제저장처리)	2009					C	5	15
2008.19.9000	견과.땅콩외 기타의씨류(조제저장처리)	2011	2016	40%감축			C	10	10
2008.20.0000	파인애플(조제저장처리)		2016	20%감축			E-2	15	10
2008.30.0000	유자(조제저장처리)						E-2	0	10
2008.40.0000	배(조제저장처리)	2020	2016				E-2	7	10
2008.60.0000	비짜(조제저장처리)	2011	2016				D	5	10
2008.70.1000	복숭아(설탕침기/밀폐용기의것)(넥터인 포함)	2011	2016				C	7	10
2008.80.0000	딸기(조제저장처리)	2020	2016				D	7	15
2008.91.0000	귤하트(조제저장처리)						B	7	10
2008.99.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2011					E-2	5	10
2009.21.0000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 포함) ьюс(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A	3	10
2009.29.0000	기타 그레이프프루트(포멜로우 포함) ьюс						B	3	10
2009.31.9000	감귤류 ьюс기타(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14	2016	40%감축			D	7	10
2009.39.1000	레몬 ьюс(기타)	2014	2016	40%감축			C	5	10
2009.39.9000	감귤류 ьюс기타(기타)	2014	2016	40%감축			D	10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철폐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2009.49.0000	파인애플주스(기타)						D	5	10
2009.71.0000	사과주스(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는 것)	2014	2016				D	5	10
2009.80.1010	복숭아주스	2014	2016	10%감축			E-2	0	10
2009.80.1020	딸기주스	2011	2016	40%감축			A	7	10
2009.80.1090	과실주스기타	2013	2016	20%감축			E-2	5	10
2009.80.2000	채소주스	2009					A	7	5
2009.90.1010	혼합주스(오렌지주스를 주기제로 한정)						C	7	12
2009.90.1020	혼합주스(사과주스를 주기제로 한정)	2020					C	7	10
2009.90.1030	혼합주스(포도주스를 주기제로 한정)	2020					C	5	12
2009.90.1090	혼합주스(기타과실을 주기제로 한정)	2020					C	7	10
2009.90.9000	혼합주스(기타)	2020					C	7	10
2101.20.9000	차, 마태등 조제품(기타)	2014	2016	40%감축	40%감축		E-1	5	10
2101.30.9000	볶음치커리, 커피대용물(기타)	2009	2016	40%감축	40%감축		B	7	10
2102.10.2000	증류효모	2009	2011	20%감축	20%감축		A	0	10
2102.10.4000	배양효모	2009	2011	20%감축	20%감축		A	0	10
2102.20.2000	누룩	2009	2011	20%감축	20%감축		A	0	10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파우더	2009	2011	20%감축	20%감축		B	0	10
2103.90.1010	된장	2014		2006	2006		D	0	10
2103.90.1020	춘장	2014		2006	2006		D	0	10
2103.90.9010	마요네스	2009	2011	40%감축	40%감축		A	5	10
2103.90.9040	메주						D	5	10
2106.90.3011	인삼차						B	5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2106.90.3021	인삼류(홍삼차)						E-2	0	10
2106.90.3029	인삼류(기타홍삼제품류)						E-2	0	10
2106.90.9091	로알제리, 벌꿀조제품	2014					B	0	10
2201.90.1000	얼음과 눈	2009	2011	2006	2006	2006	B	10	10
2202.90.2000	과즙음료	2011	2011	40%감축	40%감축	40%감축	D	0	10
2202.90.3000	식혜	2009	2011	50%감축	50%감축	50%감축	A	0	10
2205.10.0000	베르못과 기타유사포도주(2리터이하의 용기의것)	2009	2016	2016	2016	2016	C	0	10
2205.90.0000	베르못과 기타유사포도주(기타)			2016	2016	2016	C	0	10
2207.10.1000	조주정	2009	2016				E-1	0	15
2207.10.9010	주류제조용 발효주정						E-2	0	15+TRQ+SG
2208.70.2000	오가피주	2009					B	5	10
2208.90.1000	브랜디류(제2208.20호제외)	2009	2016	2016	2016	2016	D	0	10
2209.00.9000	식초대용물(기타)	2009	2011	40%감축	40%감축	40%감축	B	5	10
2306.90.1000	참깨의 것(오일케익및유박)		2016				B	0	10
2308.00.1000	도토리(사료용, 식물성 웨이스트 등)	2009		20%감축	20%감축	20%감축	A	0	10
2308.00.9000	사료용식물성부산물기타		2016				D	10	10
2309.90.1091	배합사료(대용유의것)		2016	20%감축			B	0	10
2309.90.2010	보조사료(무기물 혹은 광물질을주료한것)		2016	20%감축			E-2	0	12+TRQ
2309.90.2020	보조사료(항미제를 주료 한 것)		2016	20%감축			E-2	10	12+TRQ
2309.90.2099	보조사료(기타)		2016	20%감축			E-2	10	12+TRQ
2309.90.9000	사료용조제품(기타)		2016	20%감축			E-2	0	12+TRQ
2401.10.1000	잇담배(황색종)						C	0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2401.10.3000	잇담배(오리엔트종)		2016			10%감축	B	10	10
2401.10.9000	잇담배(기타)		2016			10%감축	B	10	10
2401.20.1000	잇담배(황색종/주맥제거)						C	10	10
2401.20.2000	잇담배(버어리종/주맥제거)						C	10	10
2401.20.3000	잇담배(오리엔트종/주맥제거)	2014					C	10	10
2401.20.9000	잇담배(기타/주맥제거)	2014					B	10	10
2401.30.1000	잇의 주맥						C	10	10
2401.30.2000	잇부스리기						B	10	10
2401.30.9000	담배부산물기타						B	10	10
2402.10.1000	시가						B	10	10
2402.10.2000	셔루트						A	10	10
2402.10.3000	시가릴로						A	10	10
2402.20.1000	필터담배						B	10	15
2402.20.9000	권련(기타)	2014	2016		10%감축		B	10	15
2402.90.0000	시가, 권련기타						B	10	10
2403.10.1000	파이프담배						B	15	10
2403.10.9000	흡연용담배기타	2014	2016				B	15	10
2403.91.1000	판상엽						B	10	10
2403.91.9000	관질화.재구성담배기타						B	10	10
2403.99.1000	칩는담배						B	10	10
2403.99.2000	코담배						A	10	10
2403.99.3000	담배의엑스아에센스						B	10	10

부표 4. 계속

주요 세번별	한글 품명	칠레	상가 포르	EFTA			아세안	EU	미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 슬란드			
2403.99.9000	기타담배						B	10	10
2905.43.0000	만니톨	2009	2016				D	0	10
3505.10.2000	가용성전분(아밀로젠)	2009	2011				A	0	10
3505.10.3000	배소전분						E-1	10	10
3505.10.4000	프리젤라타나이지드또는스웰링전분(식품용)						E-2	12	10+TRQ+SG
3505.10.500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식품용)						E-2	12	10+TRQ+SG
3505.10.9000	기타변성전분(식품용)						E-2	10	10
3505.20.1000	전분글루						E-1	10	10
3505.20.2000	텍스트린글루						E-1	10	10
3505.20.9000	기타글루						E-1	10	10
3824.60.0000	솔비톨(제2905호에해당하는것은제외)	2009	2011				B	5	10
4101.50.1013	원피(소 또는 마속동물의 전신/16kg초과/ 육스하이드/클렌쇼날/유연처리하지 않은 것)	2004	2006	2006	2006	2006	A	0	10
4101.50.1019	원피(소 또는 마속동물의 전신/16kg초과/기타/ 클렌쇼날/유연처리하지않은것)	2004	2006	2006	2006	2006	A	0	10

부록 1. 연도별 농림업 총생산액과 보조금 지급 실적

(단위: 억 원)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농업총생산액	275,123	296,066	303,884	308,696	331,774	331,395	335,683	334,445	330,163	372,886
AMS 전체 지원한도	21,826	21,056	20,287	19,517	18,748	17,978	17,209	16,439	15,670	14,900
보조금 총액	63,695	75,273	84,293	77,564	75,715	73,391	79,380	84,583	78,890	69,438
수출보조제외	63,683	75,249	84,263	77,528	75,566	73,200	79,121	84,317	78,643	69,182
감 축 보 조	23,577	23,111	25,923	23,464	20,384	22,153	21,774	23,388	21,161	19,972
AMS	20,755	19,674	19,370	15,628	15,519	16,909	16,316	15,504	14,717	14,584
de-minimis 품목특정	334	533	2,620	2,581	817	1,117	1,477	2,870	2,300	1,016
de-minimis 품목불특정	2,488	2,904	3,933	5,255	4,048	4,127	3,981	5,014	4,144	4,372
허 용 보 조	40,106	52,138	58,340	54,064	55,182	51,047	57,347	60,929	57,482	49,210
정부 서비스	24,790	33,849	38,546	35,812	36,803	33,043	34,952	34,076	34,698	29,607
생산자에대한 직접지불	15,112	17,980	19,416	17,837	17,758	17,498	21,733	26,279	22,190	19,062
개도국 우대보조	204	309	378	415	621	506	662	574	594	541
수 출 보 조	12	24	30	36	149	191	259	266	247	256

자료: 우리나라의 WTO 통보문서

부록 2. 품목별 생산액(억 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2000	95~2004
쌀	67598	86132	9198	91826	100451	105046	107217	95564	88359	99631	85368	84057		90497	93375
보리	1488	1561	902	1021	1656	1145	2369	1614	1078	1362	1554	1101		1295	1419
옥수수	327	341	420	394	411	356	327	425	407	450	426	375		375	386
유채	25	32	9	0	0	34	17	10	10	10	6	4		16	15
콩	2744	2817	2735	2752	3133	2858	2681	2696	2871	4314	4791	3255		2840	2960
백주보리	1388	1381	1031	925	1067	790	1056	945	908	842	876	726		1097	1033
감자	3056	3654	2950	2442	3001	2182	2257	1625	1614	2806	2240	1864		2881	2559
고구마	1248	1753	2004	1693	1525	1306	1151	1320	1745	1890	1525	2404		1588	1564
소	17756	21050	21073	18360	17783	18788	16997	21363	24633	28937	31479	32735		19135	20674
돼지	14066	19013	19601	23902	26869	23720	26923	29184	26812	36668	37586	36093		21195	24676
닭	7727	7686	7729	8575	7680	8208	8633	7294	6412	9476	11132	13300		7934	7942
우유	8556	9450	9622	10906	13912	13517	14291	15729	14789	15157	15513	15213		10994	12593
계란	5628	6362	6344	7783	6547	6512	8276	7318	6590	9883	10853	8674		6529	7160
고추	11996	13566	9891	9835	11142	10439	11837	9043	8165	9535	8606	8157		11145	10545
마늘	12190	7467	7860	10709	7352	5324	5832	5251	5667	6338	5352	3903		8484	7389
양파	1616	1611	1763	2305	2625	3231	2876	2389	2980	2968	2148	2095		2192	2436
과	2229	2320	2578	2803	3742	4020	3337	2844	6125	3865	1740	1889		2949	3386
담근	903	864	1201	1205	837	1199	887	1002	952	381	379	530		1035	943
생강	795	687	1440	987	275	342	659	477	278	439	588	292		755	638
기타채소류	35430	36137	38588	39480	42245	42831	46664	46689	52123	53547	50372	56669		39119	43373
바싹류	3152	4062	5509	4706	4998	4848	5064	4810	4170	4841	3014	4848		4546	4616
인삼	2839	2452	3049	3137	3934	3728	3735	5550	5784	5681	5803	7069		3190	3989
화훼류	5106	6072	5782	5895	5965	6634	5903	7844	8055	9172	9949	9411		5909	6643

부록 2. 계속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2000	95~2004
사과	8962	6280	6740	5355	7375	4972	4372	6311	4226	4721	4671	5272		6614	5931
배	2865	3736	4843	4535	5152	3872	4199	3502	2930	3887	3387	2829		4167	3952
단감	2599	3263	2518	2574	2167	1843	1986	2408	2470	3202	3837	3194		2494	2503
참다래	140	210	216	209	221	230	219	209	186	234	315	320		204	207
감귤	7093	5448	7159	5918	7475	6336	3892	4401	3623	4493	8108	6209		6571	5584
복숭아	1914	1835	2224	1931	2141	1851	1565	1675	1923	1907	1996	2096		1983	1897
포도	6085	3744	6088	5080	5895	5135	2531	5501	6360	7852	4692	5364		5338	5427
유자	331	232	254	192	132	114	121	145	94	140	357	307		209	155
밤	1930	2337	2492	1769	2252	2267	2571	2165	1929	1833	1575	1512		2174	2154
대추	739	801	627	687	682	837	793	730	513	513	594	573		729	692
약용작물	3014	2068	2380	1853	2290	2932	2888	3280	4231	4051	5237	5635		2423	2899
기타곡물	812	788	743	655	719	671	689	565	570	739	603	335		731	695
기타과실	265	3761	1329	1184	1436	1452	1882	1674	1674	2980	3182	4116		1571	1764
기타임산물	6140	6095	7010	8641	9110	8613	8489	9913	9634	8985	9671	9484		7602	8263
기타축산물	5860	5782	4660	5622	6575	10080	8000	9631	9101	8279	11110	10749		6430	7359
기타 작물	10750	7672	10591	10850	10999	13133	12498	11348	9913	10877	11824	11236		10666	10863
합계	267,361	290,519	221,153	308,696	331,771	331,396	335,684	334,444	329,804	372,886	362,459	363,895		305,606	320,659

부록 3. 품목별 보조금 지급 실적(억 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2000	95~2004
쌀	20160.7	19099.2	18843.3	15098.0	15031.8	16472.2	15829.1	15041.2	14255.0	13708.4	223.9	9006.7		17450.9	16353.9
보리	515.6	508.8	460.2	468.2	486.6	418.1	474.9	456.8	456.8	395.7	727.8	282.8		476.3	464.2
옥수수	60.4	56.1	56.7	61.8	36.4	26.7	25.0	13.6	20.4	13.0	9.0	3.4		49.7	37.0
유채	18.5	10.2	9.1	3.9	7.6	18.5	11.6	5.7	5.1	7.3	4.3	2.5		11.3	9.7
콩	43.9	22.7	78.6	89.7	54.0	81.5	122.5	161.0	146.3	473.0	459.2	1624.6		61.7	137.3
백주보리	5.2	6.6	7.8	7.5	7.4	7.3	6.8	5.9	4.5	5.0	497.0	6.2		7.0	6.4
감자	2.5	1.9	2.5	3.3	0.2	0.1	0	0	0	0	0	0		1.7	1.0
고구마	0.9	0.3	0.4	0.7	0.3	0.5	0.6	0.4	0.3	0.3	0.3	0.3		0.5	0.5
소	11.2	235.9	1952.7	1830.6	26.0	157.0	544.0	630.2	623.0	136.8	43.7	76.4		702.3	614.7
돼지	82.7	88.9	120.4	139.9	102.0	80.1	9	4.5	1.9	0	0	0		102.3	62.9
닭	3.5	0	0	0	1.8	0	0	0	0	0	0	0		0.9	0.5
우유	0	0	0	0	0	0	573.5	1436.0	661.7	305.2	336.2	285.3		0	297.6
계란	2.4	0	0	0	2.0	6.7	0	0	0	0	0	0		1.9	1.1
고추	0	9.4	16.0	14.8	45.1	57.6	0	0	51.9	44.9	418.9	45.4		23.8	24.0
마늘	0	5.1	12.4	29.1	84.6	437.7	14.2	113.8	140.4	86.9	423.4	84.5		94.8	92.4
양파	6.0	1.5	5.6	40.6	49.8	71.5	2.3	52.1	63.7	65.0	63.9	96.1		29.2	35.8
파	1.2	0	1.3	1.7	11.5	9.5	0	0	5.2	16.3	8.5	5.9		4.2	4.7
당근	0.1	0.3	0.2	0.5	7.6	8.6	0.2	9.8	33.1	5.3	7.0	8.0		2.9	6.6
생강	1.1	0	1.3	2.1	1.4	0	0	0	0	0	0	0		1.0	0.6
기타채소류	63.6	57.9	204.7	63.8	85.1	23.4	14.8	221.8	211.8	127.9	195.3	194.8		83.1	107.5
버섯류	7.1	15.0	13.2	28.0	19.1	18.2	11.2	8.5	7.3	0	0	0		16.8	12.8
인삼	10.7	44.1	84.3	135.2	100.9	55.5	27.5	17.0	13.0	14.0	29.5	48.5		71.8	50.2
화훼류	18.6	0.6	22.8	35.6	21.3	1.4	3.6	10.4	9.6	0.6	0	0		16.7	12.4

부록 3. 계속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2000	95~2004
사과	31.2	8.4	31.0	51.0	32.7	0.7	31.9	54.6	52.7	60.3	52.9	71.1		25.8	35.4
배	4.9	3.3	8.6	15.7	11.5	0.4	39.9	76.8	64.0	68.0	54.4	58.5		7.4	29.3
단감	0.6	0.2	0.8	2.8	5.8	0.7	0	13.6	15.0	13.9	12.0	13.2		1.8	5.3
참다래	1.4	0	2.4	4.2	3.0	2.8	1.8	0.3	0	0	0	0		2.3	1.6
감귤	2.8	1.3	1.4	5.3	7.5	0	0	0	34.3	34.5	29.0	38.1		3.1	8.7
복숭아	0.5	0.5	1.4	2.0	5.1	11.8	15.1	0	0	0	0	0		3.5	3.6
포도	0.7	1.0	2.1	2.4	7.3	0	0	0	0	0	0	0		2.2	1.3
유자	0.8	0	2.0	5.2	2.0	0	0	0	0	0	0	0		1.7	1.0
밤	16.1	23.9	32.3	34.3	43.1	48.2	30.4	26.0	8.2	0	0	0		33.0	26.2
대추	0.1	0.1	0	0.2	0.6	0.8	0.3	0.1	0.1	0	0	0		0.3	0.2
약용작물	0	0	0	0	4.6	0.7	0.3	0.2	0.1	0.1	0	0		0.9	0.6
기타곡물	0	0	0	24.8	16.9	7.9	2.8	0	0	2.3	1.8	2.2		8.3	5.5
기타과실	0	0	0	0	0	0	0	8.4	9.2	7.5	0.6	1.3		0	2.5
기타임산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축산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작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21,075	20,203.2	21,975.5	18,202.9	16,322.6	18,026.1	17,793.3	18,368.7	16,894.6	15,592.2	3,598.6	11,955.8		19,301.1	18,455

부록 4. 생신액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2000	95~2004
쌀	29.82	22.17	20.50	16.44	14.96	15.68	14.76	15.74	16.13	13.76	0.26	10.71		19.28	17.51
보리	34.66	32.60	51.00	45.88	29.39	36.51	20.04	28.30	42.38	29.06	46.83	25.68		36.77	32.70
옥수수	18.49	16.47	13.51	15.68	8.85	7.51	7.65	3.20	5.01	2.89	2.11	0.90		13.26	9.60
유채	75.25	32.22	106.94			54.40	68.88	55.88	50.28	71.27	72.54	70.97		68.64	66.67
콩	1.60	0.81	2.87	3.26	1.72	2.85	4.57	5.97	8.58	10.96	9.58	49.91		2.17	4.64
백주보리	0.38	0.48	0.76	0.81	0.69	0.92	0.64	0.62	0.50	0.59	56.76	0.85		0.64	0.62
감자	0.08	0.05	0.09	0.13	0.01	0	0	0	0.00	0	0	0		0.06	0.04
고구마	0.07	0.02	0.02	0.04	0.02	0.04	0.05	0.03	0.02	0.02	0.02	0.01		0.03	0.03
소	0.06	1.12	9.27	9.97	0.15	0.84	3.20	2.95	2.53	0.47	0.14	0.23		3.67	2.97
돼지	0.59	0.47	0.61	0.59	0.38	0.34	0.03	0.02	0.01	0	0	0		0.48	0.26
닭	0.05	0	0	0	0.02	0	0	0	0	0	0	0		0.01	0.01
우유	0	0	0	0	0	0	4.01	9.13	4.47	2.01	2.17	1.88		0	2.36
계란	0.04	0	0	0	0.03	0.10	0	0	0	0	0	0		0.03	0.02
고추	0	0.07	0.16	0.15	0.40	0.55	0	0	0.64	0.47	4.87	0.56		0.21	0.23
마늘	0	0.07	0.16	0.27	1.15	8.22	0.24	2.17	2.52	1.37	7.91	2.17		1.12	1.25
양파	0.37	0.10	0.32	1.76	1.90	2.21	0.08	2.18	2.14	2.19	2.97	4.59		1.33	1.47
당근	0.05	0	0.05	0.06	0.31	0.24	0	0	0.09	0.42	0.49	0.31		0.14	0.14
파	0.01	0.03	0.02	0.04	0.91	0.72	0.02	0.98	3.48	1.38	1.85	1.51		0.28	0.70
생강	0.13	0	0.09	0.21	0.51	0	0	0	0	0	0	0		0.13	0.09
기타채소류	0.18	0.16	0.53	0.16	0.20	0.05	0.03	0.48	0.41	0.24	0.39	0.34		0.21	0.25
버섯류	0.23	0.37	0.24	0.59	0.38	0.38	0.22	0.18	0.17	0	0	0		0.37	0.28
인삼	0.38	1.80	2.76	4.31	2.56	1.49	0.74	0.31	0.23	0.25	0.51	0.69		2.25	1.26
화훼류	0.36	0.01	0.39	0.60	0.36	0.02	0.06	0.13	0.12	0.01	0	0		0.28	0.19

부록 4. 계속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95~2000	95~2004
사과	0.35	0.13	0.46	0.95	0.44	0.01	0.73	0.86	1.25	1.28	1.13	1.35		0.39	0.60
배	0.17	0.09	0.18	0.35	0.22	0.01	0.95	2.19	2.18	1.75	1.61	2.07		0.18	0.74
단감	0.02	0.01	0.03	0.11	0.27	0.04	0	0.56	0.61	0.44	0.31	0.41		0.07	0.21
참나래	1.00	0	1.09	2.03	1.35	1.24	0.83	0.16	0	0	0	0		1.13	0.77
감귤	0.04	0.02	0.02	0.09	0.10	0	0	0	0.95	0.77	0.36	0.61		0.05	0.16
복숭아	0.03	0.03	0.06	0.10	0.24	0.64	0.96	0	0	0	0	0		0.18	0.19
포도	0.01	0.03	0.03	0.05	0.12	0	0	0	0	0	0	0		0.04	0.02
유자	0.25	0	0.80	2.71	1.52	0	0	0	0	0	0	0		0.80	0.57
밤	0.83	1.02	1.30	1.94	1.91	2.12	1.18	1.20	0.43	0	0	0		1.52	1.22
대추	0.02	0.01	0	0.03	0.09	0.10	0.04	0.01	0.01	0	0	0		0.04	0.03
약용작물	0	0	0	0	0.20	0.02	0.01	0.01	0	0	0	0		0.04	0.02
기타곡물	0	0	0	3.79	2.35	1.18	0.41	0	0	0.32	0.31	0.65		1.13	0.79
기타과실	0	0	0	0	0	0	0	0.50	0.55	0.25	0.02	0.03		0	0.14
기타임산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축산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작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AGRICULTURE

I think we have made progress since July, and the attached text, together with the separate papers, are an attempt to capture that.

Within the text itself there are a number of square brackets that have been deleted. It is clear that on a number of those, there cannot be said to be formal agreement. But, in earlier versions of the drafts where there were no square brackets, there was not always formal agreement either. Everything is conditional in the deepest sense in any case. But the changes made at this time now represent a best estimate of where there is additional good reason to believe there would prove to be consensus if everything was to come together as a modalities package.

Negotiations and discussions that took place during the July meetings have been a strong input in arriving at that estimate, particularly as regards square brackets dropped in the section on domestic support and in certain parts of market access. But in these and in other areas, negotiations and discussion subsequent to July has also generated or confirmed that sense. Indeed a considerable part of the time devoted to consultations over the last few weeks has been in checking whether things that might have hypothetically worked in July would still work now.

By and large that has been the case, and some other issues have come somewhat closer also since even in July. But, clearly, there is still not formal agreement on any or all of this. Indeed, there is still

certain divergence where even the device of square brackets has been dropped, and I have felt it was both instructive and fair to highlight within the text itself a few points where there is still very real divergence (sensitive products being a principal example) or where there is, to say the least, somewhat more heat detectable than on some others (tariff simplification being an example).

Of course, that conditionality remains, as always, paramount. Certain things are manifestly not yet agreed. And, depending on where we end up on these matters, other areas that seem relatively “stable” may well be revisited. That is an undeniable reality in any negotiation. It has been made pretty clear to me in consultations generally, and on a subject like Special Products in particular where Members concerned would, I suspect, be able to go with what is in the text at a pinch. But whether or not that actually happens will be contingent on overall balance -including not just other parts of the agriculture text but elsewhere in the negotiations. And that balance can be decisively affected by where elements that are still not settled end up. The same can be (and has been) said for any issue you choose: domestic support; export competition; etc. But it is still more responsible in the present circumstances, I believe, to describe the glass as (albeit conditionally) half-full rather than half-empty. We are, after all, trying to get to an agreement rather than to find additional reasons why we cannot.

There are other areas where progress has been made since July, but it has not made it to the point where there is a basis to incorporate fully defined wording within the four corners of the text at the moment.

This has been the case with certain elements regarding Sensitive Products, tariff quota creation, non-Sensitive Products with tariffs

higher than 100 per cent,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preference erosion and the SSM.

While Members have at last been prepared to step (albeit tentatively) outside their comfort zones, they have not been prepared to get as far as a real convergence. As always, one cannot invent consensus where it does not exist. Indeed it is utterly counter-productive to do so because, lacking any real basis in the negotiation, it simply provokes a counter-reaction that sends us back to square one.

But it would have been selling short the progress made to simply have nothing new on the table on these matters. So what has been done in such cases is to provide certain working hypotheses which, if the political will to conclude is genuinely there, could become a platform to get us to closure. I have taken some liberties here as it is, but, hopefully, not to the point of pure invention.

Some of those forms of words are being seen for the first time, albeit that they have not emerged in a vacuum: they are there because they reflect, hopefully, emerging elements of convergence. But even in these areas there is an inevitable unevenness because some things are, unavoidably, somewhat better developed than others.

On Sensitive Products, the text is, on the surface, more clear than in July. That said, the fact remains that there appear to be effectively only two developed Members among the importers that are actually prepared to live with 4 per cent of Sensitive Products despite a seeming view that “4 per cent” was what was a source of quasi-consensus in July. I see no alternative, therefore, but to put that in the text unambiguously. But the reality is that others are not in agreement with that. There is no sign at this point of agreement to bridge that on the table. The best I have been able to do is to outline

in a separate document some possibilities of how to “fix” this (if any fix other than applying 4 per cent without limitation will ever fly). But even these ideas are speculative to some extent because no-one has a common view on what uniform “payment” would work for going beyond 4 per cent.

On non-Sensitive Products above 100 per cent, battle-lines remain drawn. The text is accordingly still square-bracketed, albeit with a few minor changes. I do sense that, under the surface, progress is being made but, nothing that is as yet textually in the frame. I have also made a suggestion in the attached working paper, for what it is worth, as another angle of approach.

Because, tariff quota creation is such a sensitive issue, the text retains the two options. But consultations indicate that a strictly limited and transparent way out could be found. Because, however, transparency is demanded by one side but the other side says it cannot be done, the matter remains moot. But with good will there is at least an emerging structure for getting to closure.

On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and preference erosion, the text remains the same. I had wanted to record in a separate paper the considerable progress that had been made in July. As of yesterday I had drafted that on the basis that, if everything fell into place - and bananas was key to that - there was a deal there for the taking. And it would have been useful for everyone to see how close we were to that. But I was advised yesterday that, on bananas certain material changes had occurred which, in the view of at least one set of Members, vitiated any assumptions about what might even be hypothetically possible. I cannot ignore such a strongly held view so, yet again, all we get for the time being is the 10 July text.

It is a pity, in my view, but I cannot intrude on a bilateral negotiations of this intensity. All I would add is that the parties have been working on their bilateral lists as well. Clearly everything else is contingent on satisfaction being found here also. But there are Members that are uncomfortable about not knowing what would appear in importing Members' lists based on the percentages canvassed below. The parties to discussions have developed, I believe, understandings on these matters among themselves to which I, among others, am not privy. If this remains a difficulty among Members I can only continue to urge those involved to consult in good faith with those concerned as soon as possible with a view to alleviating concerns about transparency.

On the SSM, we have made some progress. It is uneven, it is fragile, it has never been consolidated into a single structure. All previous informal efforts have failed. So, this is the first time this particular structure has seen the light of day. It is not, therefore, ready for inclusion in the text per se because it is utterly untested. But hopefully it can at least help materially in getting us to that. There appear to remain still subsequent issues to deal with as yet unresolved.

Then there is cotton. Here we have, since July, at least re-established a good dialogue and a sense of trust that had been seriously eroded by events at the end of July. We have also got a robust and common view on the numbers that need to be crunched to get a final decision. That said the fact remains that, textually, I regret that I can only report that neither I nor, as far as I can tell, anyone else involved in the consultations are any wiser today on what the deal will be than we were in July.

I. Domestic Support

A. Overall reduction of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A Tiered Formula

Base level

1. The base level for reductions in Overall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hereafter “Base OTDS”) shall be the sum of:
 - (a) the Final Bound Total AMS specified in Part IV of a Member's Schedule; plus
 - (b)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10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base period (this being composed of 5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production for product-specific and non-product-specific AMS respectively); plus
 - (c) the higher of average Blue Box payments as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or 5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base period.
2.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item (b) of paragraph 1 above shall be 20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or 1995-2004 period as may be selected by the Member concerned.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 base period for the purposes of item (c) of paragraph 1 above shall be 1995-2000 or 1995-2004 as may be selected by the Member concerned.

Tiered reduction formula

3. The Base OTDS shall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iered formula:

- (a) where the Base OTDS is greater than US\$60billion, or the equivalent in the monetary terms in which the binding is expressed, the reduction shall be 80percent;
 - (b) where the Base OTDS is greater than US\$10and less than or equal to US\$60billion, or the equivalents in the monetary terms in which the binding is expressed, the reduction shall be 70 per cent;
 - (c) where the Base OTDS is less than or equal to US\$10 billion, or the equivalent in the monetary terms in which the binding is expressed, the rate of reduction shall be 55 per cent.
4. Developed country Members with high relative levels of Base OTDS in the second tier (i.e. at least 40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period) shall undertake an additional effort. The additional reduction to be undertaken shall be equal to one half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duction rates specified in paragraphs 3(a) and 3(b) above.

Implementation period and staging

5.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the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in six steps over five years.
- (a) For Members in the first two tiers specified in paragraphs 3(a) and 3(b) above, the Base OTDS shall be reduced by one-third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The remaining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annually in five equal steps.
 - (b) For Members in the third tier specified in paragraph 3(c) above, the Base OTDS shall be reduced by 25 per cent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The remaining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annually in five equal step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6.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no Final Bound Total AMS commitment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Base OTDS.
7.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Final Bound Total AMS commitments, the applicable reduction in the Base OTDS shall be two-thirds of the relevant rate specified in paragraph 3(c) above. However,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hereafter “NFIDCs”) listed in document G/AG/5/Rev.8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Base OTDS.
8. For those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in nine steps over eight years. The Base OTDS shall be reduced by 20 per cent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The remaining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annually in eight equal steps.

Recently-Acceded Members

9. Saudi Arab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Viet Nam and Ukraine, as very recently-acceded Members (hereafter “RAM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Base OTDS. Small low-income RAM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¹⁾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Base OTDS. Reduction commitments for other RAMs with Final Bound Total AMS commitments shall be two-thirds of the relevant rate specified in paragraph 3(c) above and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in paragraph 8 above.

1) This shall be applicable to Albania, Armenia, Georgia, Kyrgyz Republic, Moldova and Mongolia.

Other commitments

10. All Members, other than NFIDCs which undertake not to use their entitlement to the Blue Box, and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²⁾ shall schedule their Base, Annual and Final Bound OTDS entitlements, as provided above, in monetary terms, in Part IV of their Schedules.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at are not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under any of the provisions of these modalities shall only be required to schedule their Base OTDS.
11. For those Members that, under these modalities are subject to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Base OTDS, such commitments shall apply as a minimum overall commitment.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and thereafter, each Member shall ensure that the sum of the applied levels of trade-distorting support under each OTDS component does not exceed the Annual and Final Bound OTDS levels specified in Part IV of its Schedule.
12.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in order to provide for these OTDS modalities including amendments to existing Articles, where necessary,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above provisions. The data on value of production shall, for all Members undertaking OTDS reduction commitments, be annexed to these modalities. This Scheduled OTDS shall be understood not to have the effect of constraining the access of RAMs to their de minimis entitlements under the terms of their accession to the WTO.

2) Cameroon, Congo (Brazzaville), Ghana, Nigeria and Swaziland shall have access also to this provision.

B. Final Bound Total AMS: A Tiered Formula

Tiered reduction formula

13. The Final Bound Total AMS shall be reduc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iered formula:
 - (a) where the Final Bound Total AMS is greater than US\$40 billion, or the equivalent in the monetary terms in which the binding is expressed, the reduction shall be 70cent;
 - (b) where the Final Bound Total AMS is greater than US\$15 billion and less than or equal to US\$40 billion, or the equivalents in the monetary terms in which the binding is expressed, the reduction shall be 60 per cent;
 - (c) where the Final Bound Total AMS is less than or equal to US\$15 billion, or the equivalent in the monetary terms in which the binding is expressed, the rate of reduction shall be 45 per cent.

14. Developed country Members with high relative levels of Final Bound Total AMS (i.e. at least 40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uring the 1995-2000 period) shall undertake an additional effort in the form of a higher cut than would otherwise be applicable for the relevant tier. Where the Member concerned is in the second tier, the additional reduction to be undertaken shall be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duction rates specified in paragraphs 13(a) and 13(b) above. Where the Member concerned is in the bottom tier, the additional reduction to be undertaken shall be one half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duction rates specified in paragraphs 13(b) and 13(c) above.

Implementation period and staging

15.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reductions in Final Bound Total AMS shall be implemented in six steps over five years.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n the top two tiers specified in paragraphs 13(a) and 13(b) above, this shall be implemented by means of a 25 per cent reduction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followed by reductions in equal annual instalments over five years. For other developed country Members, the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in six equal annual instalments over five years, commencing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16. The reduction in Final Bound Total AMS applicable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be two-thirds of the reduction applicable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under paragraph 13(c) above. The reductions in Final Bound Total AMS shall be implemented in nine equal annual instalments over eight years, commencing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Howeve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Final Bound Total AMS levels at or below US\$ 100 million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s.
17. NFIDCs listed in document G/AG/5/Rev.8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Final Bound Total AMS.
18. The provisions of Article 6.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remain unchanged.

Recently-Acceded Members

19. Saudi Arab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Viet Nam and Ukraine, as very recently-acceded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Final Bound Total AMS. Small low-income RAM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their Final Bound Total AMS.³⁾ In the case of such Members, investment subsidies which are generally available to agriculture, agricultural input subsidies and interest subsidies to reduce the costs of financing, as well as grants to cover debt repayment, may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 of the Current Total AMS.⁴⁾ The reductions in Final Bound Total AMS for other RAMs with such commitments shall be two-thirds of the rate specified in paragraph 13(c) above and shall b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6 above.

Other

20. Article 18.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continue to apply in order to respond to the situations referred to in that provision. Due consideration shall also be given in the event tha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faces difficulties in its AMS calculation as a result of extraordinary and sudden increases in food prices relative to the fixed external reference price.

C. Product-Specific AMS Limits

General

21. Product-specific⁵⁾ AMS limits shall be set out in terms of monetary value commitments in Part of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in accordance with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paragraphs below.

3) This shall be applicable to Moldova which is the only such Member with a Final Bound Total AMS.

4) This shall be applicable to Albania, Armenia, Georgia, Kyrgyz Republic, Moldova and Mongolia.

5) "Product-specific" commitments have the same meaning as they are used in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22. The product-specific AMS limits specified in the Schedules of all developed country Member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 average of the product-specific AMS during the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period (1995-2000) as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hese shall be tabulated by individual product for each Member in an Annex to these modalities.
23. For the United States only, the product-specific AMS limits specified in their Schedule shall be the resultant of applying proportionately the average product-specific AMS in the 1995-2004 period to the average product-specific total AMS support for the Uruguay Round implementation period (1995-2000) as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hese shall be tabulated by individual product in the Annex to these modalities referred to in the paragraph above.
24. Where a Member has, after the bas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s 22 and 23 above, introduced product-specific AMS support above the de minimis level provided for under Article 6.4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it did not have product-specific AMS support above the de minimis level during the base period, the product-specific AMS limit specified in the Schedule may be the average amount of such product-specific AMS support for the two most recent years prior to the date of adoption of these modalities, for which notifications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have been made.
25. In cases where the product-specific AMS support for each year during the bas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s 22 and 23 above was below the de minimis level provided for under Article 6.4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he Member

concerned is not in the situation covered by paragraph 24 above, the product-specific AMS limit specified in the Schedule for the product concerned may be that de minimis level, expressed in monetary terms.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in this paragraph and paragraphs 21 to 24 shall not require a Member's product specific AMS limit to be lower than the base period de minimis level, expressed in monetary terms as set out in this paragraph.

26. The scheduled product-specific AMS limits shall be implemented in full on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Where the average notified product-specific AMS in the two most recent years for which notifications are available was higher, the limits shall be implemented in three equal annual instalments, with the starting point for implementation being the lower of the average of those two years or 130 per cent of the scheduled limits.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27.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establish their product-specific AMS limits by choosing one of the following methods, and scheduling all their product-specific AMS commitments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 chosen:
 - (a) the average product-specific AMS during the base period 1995-2000 or 1995-2004 as may be selected by the Member concerned, as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or
 - (b) two times the Member's product-specific de minimis level provided for under Article 6.4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during the base period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 above or
 - (c) 20 per cent of the Annual Bound Total AMS in the relevant year during the Doha Round implementation period.

28. Where a developing country Member chooses paragraph 27(a) above as its method for the establishment of product-specific AMS limits that Members shall also have access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4 and 25 above.
29. Article 6.3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to reflect these modalities.

D. De minimis

Reductions

30. The de minimis levels referred to in Article 6.4(a)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e. 5 per cent of a Member's total value of production of a basic agricultural product in the case of product-specific de minimis and 5 per cent of the value of a Member's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ase of non-product-specific de minimis) shall be reduced by no less than 50 per cent effective on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urthermore, where, in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lower level of de minimis support than that resulting from application of that minimum percentage reduction would sti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the Annual or Final Bound OTDS commitment for that year is not exceeded, a Member shall undertake such an additional reduction in what would otherwise be its de minimis entitlemen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31.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Final Bound Total AMS commitments, the de minimis levels referred to in Article 6.4(b)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i.e. 10 per cent of

a Member's total value of production of a basic agricultural product in the case of product-specific de minimis and 10 per cent of the value of a Member's total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ase of non-product-specific de minimis) to which they have access under their existing WTO obligations shall be reduced by at least two-thirds of the reduction rate specified in paragraph 30 above. The timeframe for implementation shall be three years from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Furthermore, where, in any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 lower level of de minimis support than that resulting from application of that minimum percentage reduction would still be required to ensure that the Annual Bound or Final OTDS commitment for that year is not exceeded, a Member shall undertake such an additional reduction in what would otherwise be their de minimis entitlement.

32.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no Final Bound Total AMS commitments; or with such AMS commitments, but that either allocate almost all that support for subsistence and resource-poor producers, or that are NFIDCs listed in document G/AG/5/Rev.8; shall continue to have the same access as under their existing WTO obligations to the limits provided for product-specific and non-product-specific de in the current Article 6.4(b)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Recently-Acceded Members

33. Saudi Arab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Viet Nam and Ukraine, as very recently-acceded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de minimis. Small low-income RAM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⁶⁾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 commitments in de. Other RAMs with

6) This shall be applicable to Albania, Armenia, Georgia, Kyrgyz Republic, Moldova and Mongolia.

Final Bound Total AMS commitments and which have existing de minimis levels of 5per cent shall reduce such levels by at least one-third of the reduction rate specified in paragraph 30 above and the timeframe for implementation shall be five years longer.

Other

34. The provisions of Article 6.4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accordingly to conform to these modalities.

E. Blue Box

Basic criteria

35. The value of the following domestic support, provided that it is consistent also with the limits as provided for in the paragraphs below, shall be excluded from a Member's calculation of its Current Total AMS but shall count for purposes of that Member's Blue Box commitments and OTDS:

- (a) Direct payments under production-limiting programmes if:
 - (i)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nd unchanging areas and yields; or
 - (ii)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per cent or less of a 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of production; or
 - (iii) livestock payments are made on a fixed and unchanging number of head.

Or

- (b) Direct payments that do not require production if:
 - (i) such payments are based on fixed and unchanging bases and yields; or

- (ii) livestock payments are made on a fixed and unchanging number of head; and
 - (iii) such payments are made on 85 per cent or less of a fixed and unchanging base level of production.
36. Each Member shall specify in its Schedule which of these categories - (a) or (b) - it has selected for the purposes of establishing all its Blue Box commitments in this Round. Any exception to this universal application would be with the agreement of all Members prior to finalization of Schedules. In no circumstances could both domestic support categories be made available for any particular product or products.
37. Any Member that is in a position to move its domestic support from AMS to Blue pursuant to paragraph 43 below, or introduce product-specific Blue Box support pursuant to paragraphs 47 and 50 below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is negotiation shall have the option to do so on the basis of either criterion above but, once selected and scheduled, this shall be binding.

Additional criteria

(a) Overall Blue Box limit

38. The maximum value of support that can, under the above criteria of “Blue Box”, be provided under Article 6.5 shall not exceed 2.5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base period on the basis of notifications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where they exist. This limit shall b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in Part IV of Members’ Schedules and shall apply from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39. In cases where a Member has, consistent with the terms of Article

6.5(a)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placed in the Blue Box an exceptionally large percentage of its trade-distorting support - defined as 40 per cent - during the 1995-2000 base period, the limit for that Member shall, instead, be established by application of a percentage reduction in that average base period amount. That percentage reduction shall equal the percentage reduction that the Member concerned is to make in its Final Bound Total AMS. This Blue Box limit shall b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and bound in Part IV of that Member's Schedule. An implementation period of no more than 2 years may be provided for any such Member in the event that immediate implementation is unduly burdensome.

(b) Product-specific limits

40. For all Members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the limit to the value of support that may be provided to specific products as Blue Box entitlements shall be the average value of support provided to those products at an individual product level, consistent with Article 6.5(a)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during the 1995-2000 period and with notifications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These product-specific limits shall b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at an individual product level, annexed in that format to these modalities, bound in Part IV of the Schedule of the Member concerned, and shall apply from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41. In any case where Article 6.5(a) consistent Blue Box support was not provided for the entirety of the 1995-2000 period, the Member concerned shall use the average value of support for the years notified within that period, provided that there are at least three consecutive notified years within that period.

42. For the United States, the limits to the value of support that may be provided to specific products under paragraph 35(b) above shall be [(110) (120)] per cent of the average product-specific amounts that would result from applying proportionately the legislated maximum permissible expenditure under the 2002 Farm Bill for specific products at an individual product level to the overall Blue Box limit of 2.5 per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during the 1995-2000 period. These product-specific limits shall b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at an individual product level, annexed in that format to these modalities and shall be bound in Part IV of that Member's Schedule.
43. Blue Box entitlements for specific products may nevertheless exceed the limits determined under paragraphs 40-42 above but only where there is a corresponding and irreversible one-for-one reduction in the product-specific AMS limits for the products concerned (except for cotton, where that rate would be two-for-one).
44. Where this arises in the context of this particular negotiation, full documentation must be provided in support of this "transfer" to ensure that the starting point is verifiably, on the one hand, the product-specific AMS limit that would have been otherwise inscribed in the Schedule through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provided above and, on the other, the Blue Box entitlement otherwise inscribed pursuant to application of the methodology set out above.
45. Where this arises as a result of continuation of the reform process after scheduling and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re must be an exact reciprocal reduction in the scheduled product-specific AMS limit for, as the case may be, a new, or an increase in the scheduled, product-specific Blue Box limit.

46. In both such situations, the overall Blue Box limit cannot in any case be exceeded.
47. Notwithstanding the above, where, for a particular product, there is no product-specific entitlement to a Blue Box limit under the provisions above, and no Current AMS support in the base period for that particular product, a product-specific Blue Box limit may still be scheduled but only where the total support for any such products concerned does not exceed 5 per cent of the overall Blue Box limit there is a maximum for any single product of 2.5 per cent of the overall Blue Box limit and the overall Blue Box limit is still respected. This is available to developed country Members with direct payments of the kind that meet the terms of paragraph 35(a) above, and is a once-only provision for commitment in this Round of negotiations. The monetary value and the products concerned shall be inscribed in a Member's Schedule.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48.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 maximum permitted value of sup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38 above shall be 5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or the 1995-2004 base period as may be selected by the Member concerned. That limit shall be expressed in monetary terms and bound in Part IV in developing country Members' Schedules.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movement from AMS to Blue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is negotiation,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concerned shall have the option of selecting as its base period the most recent five-year period for which data are at that time available. An NFIDC which chooses not to avail itself of

its Blue Box entitlement and thereby is not obliged to Schedule its OTDS under paragraph 10 above, shall so indicate by marking “nil” in the appropriate section of Part IV of its Schedule.

49. Where a product accounted both for more than 25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80 per cent of the average Annual Bound Total AMS during the base period, a developing country Member that chooses to switch its support from AMS to Blue for that product, on a one-for-one and irreversible basis, shall be entitled to do so even if this would otherwise lead to exceeding the overall Blue Box limit provided for in the paragraph above.
50. Where, for a particular product, a developing country Member has no product-specific entitlement to a Blue Box limit for that product under the above provisions, and no Current AMS support in the base period for it, a product-specific Blue Box limit may still be scheduled but only where the total support for the totality of any such products concerned does not exceed 30 percent of the overall Blue Box limit there is a maximum for any single product of 10 per cent of the overall Blue Box limit and the overall Blue Box limit is still respected.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for NFIDCs these limits shall be 75 per cent and 25 per cent respectively.

Recently-Acceded Members

51. For RAMs, the maximum value of support referred to in paragraph 38 above shall be 5 per cent of the average total value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1995-2000 base period or the 1995-2004 base period as may be selected by the Member concerned.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is a movement from

AMS to Blue subsequent to the conclusion of this negotiation, the Member concerned shall have the option of selecting as its base period the most recent five-year period for which data are at that time available.

Other

52. Article 6.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to reflect the above modalities accordingly.

F. Green Box

53. Annex 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as set out in Annex B of this document.

G. Cotton: Domestic Support

Reductions in support for cotton

54. The development aspects of cotton shall be addressed as for in paragraph 12 of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AMS support for cotton shall be reduc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formula:

$$R_c = R_g + \frac{(100 - R_g) * 100}{3 * R_g}$$

R_c = Specific reduction applicable to cotton as a percentage

R_g = General reduction in AMS as a percentage

55. This shall be applied to the base value of support calculated as the arithmetic average of the amounts notified by Members for cotton in supporting tables DS:4 from 1995 to 2000. The Blue Box limit applicable to cotton shall amount to one third of the product-

specific limit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the resultant from the methodology generally applicable above.

Implementation

56. The reductions for trade-distorting domestic support on cotton shall be implemented over a period which is onethir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57. Developing country Members with relevant AMS and Blue Box commitments for cotton otherwise applicable und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cluding paragraph 27 above, shall provide a rate of reduction for cotton that is two-thirds of that which would be applicable under paragraph 54 above.

58. Developingcountry Members shall implement their reduction commitments for cotton over a longer time period than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I. Market Access

A. Tiered Formula For Tariff Reductions

Basis for reductions

59. Subject to such other specific provisions as may be made, all final bound tariffs⁷⁾ shall be reduced using the tiered formula set out in the paragraphs below.
60. In order to place final bound non-ad valorem tariffs in the appropriate band of the tiered formula, Members shall follow the methodology to calculate ad valorem equivalents (AVEs), along with associated provisions, set out in Annex A to TN/AG/W/3 of 12 July 2006. All AVEs so calculated shall be listed in an annex to these Modalities.

Tiered formula

61.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reduce their final bound tariffs in six equal annual instalments over five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iered formula:
- (a)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0 and less than or equal to 20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50 per cent;
 - (b)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20 per cent and less than or equal to 50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57 per cent;
 - (c)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50 per cent and less than or equal to 75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64 per cent; and

7) That is, all out-of-quota tariffs specified in Section I-A of Members' Schedules of Concessions. In-quota tariffs shall be subject to commitments under the relevant paragraphs.

- (d)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75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70 per cent.
62. The minimum average cut on final bound tariffs that a 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be required to undertake⁸⁾ is 54 per cent. Should application of the tiered formula treatment above, inclusive of the treatment for Sensitive Products as outlined in Section B below and additional cuts made as provided for elsewhere in these modalities relating to tariff escalation and tropical products result in an overall average cut less than 54 per cent, an additional effort shall be made proportionately across all bands to reach that target.
63. Developing country Member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paragraph 65 below shall reduce their final bound tariffs in eleven equal annual instalments over ten years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tiered formula:
- (a)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0 and less than or equal to 30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2/3 of the cut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n paragraph 61(a) above;
- (b)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30 per cent and less than or equal to 80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2/3 of the cut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n paragraph 61(b) above;
- (c)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80 per cent and less than or equal to 130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2/3 of the cut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n paragraph 61(c) above; and
- (d) where the final bound tariff or ad valorem equivalent is greater than 130 per cent, the reduction shall be 2/3 of the cut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in paragraph 61(d) above.

8) i. e. the average of the cuts made.

64. The maximum overall average cut on final bound tariffs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be required to undertake⁹⁾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this formula inclusive of the treatment for Sensitive Products as outlined in Section B below is 36 per cent. Should the above formula imply an overall average cut of more than 36 per cent,¹⁰⁾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shall have the flexibility to apply lesser reductions applied in a proportionate manner across the bands, to keep within such an average level.
65. Those small, vulnerable economies,¹¹⁾ including those among them which are ceiling binding and homogenously low binding countries, which choose to exercise the option set forth in paragraph 130 below shall be entitled to moderate the cuts specified in paragraph 63 above by a further 10 ad valorem percentage points in each band.

Recently-Acceded Members

66. RAMs shall be entitled to moderate the cuts they would otherwise have been required to make under the tiered formula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paragraph 63 by up to 8 ad valorem percentage

9) i. e. the average of the cuts made.

10) In the case of Venezuela, this ceiling shall be 30 percent.

11) The Members concerned are those that meet the criteria set out in paragraph 151 and are listed in Annex As is made clear in the Agreed Framework. Small vulnerable economies (SVEs) are not meant to create any sub-category of Members. Bearing that principle in mind, the following Members could also be deemed to be eligible for this treatment, should they choose to avail themselves of it, despite not being members of the SVE Group per se given that this treatment could be deemed to be broadly comparably appropriate: Republic of Congo, Côte d'Ivoire and Nigeria (plus other Members that can provide data that show that they meet the criteria in paragraph 147). Additionally, Bolivia shall have access, exceptionally, to treatment equivalent to that provided for in paragraph 142. As an exception, Suriname shall rebind its agricultural tariffs on a line by line basis at the level of the average bound tariff of Antigua and Barbuda, Barbados, Belize, Dominica, Grenada, Guyana, Jamaic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and Trinidad and Tobago resulting from these modalities.

points. All RAMs shall be entitled to exempt their final bound tariffs at or below 10 per cent from reductions in bound tariffs.

67. Saudi Arab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Viet Nam, Tonga and Ukraine, as very recently-acceded Members and small low-income RAM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¹²⁾ shall not be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s in final bound tariffs.
68. For all other RAMs, to the extent that, in implementing commitments undertaken in acceding to the WTO, there would be actual overlap with commitments to be otherwise undertaken in association with these Modalities, the start of implementation of commitments undertaken in association with these Modalities for such tariff lines shall begin one year after the end of implementation of the accession commitment.
69. The implementation period for RAMs may be prolonged by up to two years after the end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s' implementation period.
70. More specific provisions can be found in the relevant sections of this document.

B. Sensitive Products

Designation

71. Each developed country Member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up to 4 per cent of tariff lines as "Sensitive Products".* Where such Members have more than 30 per cent of their tariff lines in the top band, they may increase the number of Sensitive Products

12) This is applicable to Albania, Armenia, Georgia, Kyrgyz Republic, Moldova and Mongolia.

by two percent, subject also to the conditions outlined in paragraph 75 below. Where application of this methodology would impose a disproportionate constraint in absolute number of tariff lines because tariff concessions are scheduled at the 6-digit level, the Member concerned may increase its entitlement by that amount also.

** Japan and Canada have declared themselves not to be in a position to agree to this limitation*

72.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have the right to designate up to one-third more of tariff lines as “Sensitive Products”.

Treatment - tariff cut

73. Members may deviate from the otherwise applicable tiered reduction formula in final bound tariffs on products designated as Sensitive. This deviation may be one-third, one-half or two-thirds of the reduction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required by the tiered reduction formula. Accordingly all of the tariff lines for a particular product shall take a uniform deviation.

Tariff quota expansion

74.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tariff quotas derived from the provisions in paragraph 71 above and paragraphs 75-77 below shall result in new access opportunities equivalent to no less than 4 percent of domestic consumption expressed in terms of physical units where the two-thirds deviation is used. Where the one-third deviation is used, the new access opportunities shall be no less than one per cent less than that percentage of domestic consumption. Where the one-half deviation is used, the new access opportunities shall be no less than 0.5 per cent less than that

percentage of domestic consumption.¹³⁾

75. Where a Member is entitled to, and chooses to exercise its entitlement to have a higher number of Sensitive Products pursuant to paragraph 71 above, the relevant amounts specified in paragraph 74 shall be maintained for the defined percentage of products applicable to all developed country Members. For the additional 2 per cent available to those Members under paragraph 71, the Member concerned shall have an obligation to ensure that, whichever deviation is selected, an additional 0.5 per cent of domestic consumption beyond what is generally provided for is achieved for those products.
76. If, after application of all its tariff reduction commitments (i.e. including its Sensitive Product deviation entitlements), a developed country Member¹⁴⁾ would still have some of its tariff lines in excess of 100 per cent ad valorem, it shall be entitled to retain these only if the tariff lines concerned are confined to those designated as, and are within the numerical limits of, that Member's overall Sensitive Product entitlement and that the Member concerned applies a higher expansion of 0.5 per cent of domestic consumption for those tariff lines concerned. [Certain Members¹⁵⁾ may also do so outside the Sensitive Product entitlement provided that (a) this is for no more than 1 per cent of its tariff lines beyond the Member's sensitive entitlement; and (b) that the Member concerned either provides a further expansion of 0.5 cent of domestic consumption

13) See Annex C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these tariff quota expansion commitments under paragraph 74–83.

14) For a developing country Member the relevant tariff threshold is 150 per cent ad valorem and the limit is, consistent with paragraph 72, one-third more than for a developed country Member. In addition, where a developing country Member applies a Special Product entitlement, the tariff threshold shall not apply.

15) Iceland, Japan, Norway, Switzerland.

for all its Sensitive Products or provides that, for any line concerned, the tariff cut is implemented two years faster than would otherwise be required or is increased by an additional ten percentage points ad valorem.]

77. Where the existing bound tariff quota volume already represents 10 per cent or more of domestic consumption, the obligations to expand the tariff quota volumes by the percentages of domestic consumption specified in paragraph 74 may be reduced by 0.5% for each deviation. Where the existing bound tariff quota volume represents 30 per cent or more of domestic consumption, the obligations to expand the tariff quota volumes by the percentages of domestic consumption specified in paragraph 74 above may be reduced by 1 per cent for each deviation.
78.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using the Sensitive Product deviation entitlements provided for in paragraph 73 above, the tariff quota expansion shall be two thirds of the volume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domestic consumption shall not include self-consumption of subsistence production. Alternatively, developing country Members may choose from one of the three following options for use of their Sensitive Product entitlement by taking a smaller deviation than would otherwise be required under paragraph 63 above at the rate of:
- (a) one-third less than the formula cut otherwise applicable for no more than half of their Sensitive Product entitlement implemented over 3 years; or
 - (b) one-half less than the formula cut otherwise applicable for no more than one-third of their Sensitive Product entitlement implemented over 2 years; or
 - (c) two-thirds less than the formula cut otherwise applicable for no

more than one-quarter of their Sensitive Product entitlement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79. For the remainder of their Sensitive Product tariff lines, a developing country Member may either take the full formula tariff cut, but with an implementation period that is three years longer than would otherwise be required, or apply tariff quota expansion.
80. A Member may also choose to take the full formula cut on all the lines but with an implementation period that is three years longer than would otherwise be required.
81. Where recourse is taken to the provisions above there would be no requirement for tariff quota expansion on the relevant tariff lines except as provided for in paragraph 79 above.
82. Expansion of the tariff quota for a Sensitive Product shall be scheduled and applied erga omnes on a most-favoured-nation basis only. The first instalment shall occur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and be a minimum of one quarter of the total additional domestic consumption. The remaining three-quarters of the total shall be added in three steps at the expiry of each subsequent twelve-month period.

83.

Either:

No tariff line may be declared sensitive and subject to a tariff quota for Sensitive Products unless that tariff line was already subject to a pre-Doha tariff quota.

Or:

Members are entitled to declare sensitive any tariff line, irrespective of whether that tariff line was already subject to a pre-Doha tariff quota.

C. Other Issues

Tariff escalation

84. The tariff escalation formula provided below shall apply to the list of primary and processed products attached in Annex D.¹⁶⁾
85. In addition to the application of the tiered tariff reduction formula, tariff escalation shall be addressed in the following manner:
86. Instead of taking the cut that would otherwise apply to final bound tariffs in the band to which the processed product belongs (with the exception of the top band), the processed product shall take the cut that would, according to the tiered formula, otherwise be applicable to the tariffs that fall in the next highest band. A processed product in the top band shall be reduced by a cut which is equal to the cut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applicable according to the tiered formula increased by 6 ad valorem points.
87. These supplementary cuts shall be moderated for the products concerned in two circumstances. First, where the absolute difference between the processed and primary product tariffs after application of the normal tariff formula would be 5 ad valorem percentage points or less in any given tier except in the case of the bottom tier, no additional tariff escalation adjustment shall be required.
88. Second, the tariff escalation adjustment formula cannot be applied in full where doing so would reduce the tariff for the processed product below that applicable to the primary product. In a situation

16) It is understood that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of the modalities on this matter is without prejudice to whether or not tariff escalation, as a factual matter, does or does not continue to exist.

where this would occur, the rate of reduction for the processed product shall be moderated to ensure that the final bound rate of the processed product equates to, but does not reduce below, the final bound rate for the primary product.

89. Tariff escalation treatment shall not apply to any product that is declared as Sensitive. Where the reduction for a tropical product would result in a reduction that is greater than the reduction under the tariff escalation formula, the tropical product reduction shall apply.
90. This modality shall be applied by 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to be in a position to do so.

Commodities

91. In the event that adverse effects of tariff escalation for commodities were not to be eliminated via the tiered formula for reductions in bound duties and such specific measures on tariff escalation as are provided for, Members shall engage with commodity-dependent producing country Members to ensure satisfactory solutions.
92. Consistent with this, the following approach shall be applicable:
 - (a) commodity-dependent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dividually or as a group, shall identify and present products of interest to them for purposes of addressing tariff escalation to be adopted as part of the modalities. In doing so, they will indicate the match of products on which tariff escalation should be addressed
 - (b) developed countries and those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to be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undertake tariff escalation reductions in the identified products

- (c) at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 difference between the identified primary and processed products shall not exceed an agreed defined percentage spread in the event that the combined effect of reductions through the tiered formula, through liberalisation of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and through the tariff escalation is not deemed to have been sufficient.

93. Provision shall be made also for suitable procedures for negotiations on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odities.
94. This work shall continue through the post-modality phase to be concluded no later than the scheduling phase. The Secretariat will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in support of the commodity-dependent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roughout this period.
95. Provision shall be made to ensure the possibility that Members may take joint action through adoption of suitable measures, including through adoption of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s, for stabilization of prices for exports of agricultural commodities at levels that are stable, equitable and remunerative. The provisions of Article XXXVIII in the chapter on Trade and Development of GATT 1994, Part IV which inter alia stipulates that the WTO Members could take “joint action” through “international arrangements” for ensuring “stable equitable and remunerative prices” for exports of primary agricultural commodities should be reviewed, clarified and improved so that, taken together with the role of Article XX (h) referred to in paragraph 100 below, an

understanding will be reflect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at the term “arrangements” covers both commodity agreements of which all interested producing and consuming countries are parties; and agreements of which only commodity-dependent producing countries are parties.

96. Action for negotiations and adoption of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s in pursuance of the provisions of the paragraph above may be taken either jointly by producing and consuming countries or by commodity-dependent producing countries only.
97. Such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s may be negotiated and adopted by the countries themselves, or adopted after negotiations undertaken under the auspices of the WTO, UNCTAD or international commodity organizations.
98.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s may be negotiated and adopted on an international or regional basis.
99. Such agreements may provide for participation of association of producers.
100. The general exceptions provisions of Article XX (h) of GATT 1994 shall also apply to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s of which only producing countries of the concerned commodities are Members.
101. Technical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for, inter alia, the improvement of world markets for commodities and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intergovernmental commodity agreements.
102.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trade and other organizations for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00 and 101 above shall be

monitored through the mechanism established in WTO for administering Aid for Trade.

Tariff simplification

103. No tariff shall be bound in a form more complex than the current binding. All simplified bound tariffs shall not amount to any increase over the original more complex tariff.

104.

Either:

All bound tariffs on products in a Member's Schedule shall be expressed as simple ad valorem tariffs using the methodology set out in Annex A to TN/AG/W/3 of 12 July 2006.

Or:

No less than 90 percent of bound tariffs on products in a developed country Member's Schedule shall be expressed as simple ad valorem tariffs using the methodology set out in Annex A to TN/AG/W/3 of 12 July 2006.¹⁷⁾ As regards, the residual unconverted tariff lines, each Member shall, by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have undertaken a review of the situation so that a decision can be taken no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on how to thereafter achieve 100% ad valorem coverage.

105. The above commitments shall be applied subj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methodology set out in Annex N.

106. In any case, the most highly complex forms of bound tariffs,

17) In the cas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however, this figure shall be 85% and, within the residual 15 percent that is not converted, up to but no more than 5% may be retained as compound or mixed tariffs.

such as those resulting from complex composition matrices, shall be converted to ad valorem or specific tariffs. The method for converting these into specific or ad valorem tariffs shall be the methodology to calculate ad valorem equivalents as set out in Annex A to TN/AG/W/3 of 12 July 2006.

107. Developing country Members making such conversions shall have an additional two years to achieve this outcome, if applicable.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at face challenges in converting non-ad valorem tariffs into ad valorem tariffs, efforts will be made to address such challenges, including through technical assistance.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not be required to effect any such changes.
108. The simplified tariffs shall be specified in Members' Draft Schedules. In all cases of proposed simplification, Members shall supply supporting data that demonstrates that the proposed simplified bound tariff is representative of, and does not amount to any increase over, the original more complex tariff and that the proposed simplificat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methodology. All Members shall be given sufficient time for evaluation of the proposed changes and all Members undertaking such a simplification shall respond constructively to queries made regarding those proposed conversions. Upon request, the WTO Secretariat shall provide advice on technical matters and shall give particular technical assistance to developing country Members.

Tariff quotas

- (a) Bound in-quota tariffs¹⁸⁾

¹⁸⁾ Reductions in in-quota tariffs shall not count for the purposes of calculating the average cuts.

109.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all in-quota tariffs shall be reduced either by 50 per cent or to a threshold of 10 per cent, whichever results in the lower tariff. The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on the same time-frame as for the expansion of tariff quotas. The maximum in-quota tariff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shall be 17.5 per cent. Where the in-quota tariff rate is already bound at or below 5% per cent ad valorem it shall be reduced to zero at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¹⁹⁾
110. Where, in its current Schedule, a Member has a tariff quota which includes a tariff line or tariff lines each of which has bound in-quota tariff(s) equal to or higher than the bound out-of-quota tariff(s), effectively making the tariff quota non-operational, the Member concerned may eliminate the tariff quota. In such a case, the Member concerned shall compensate for the elimination of these quotas by reducing the threshold referred to in the previous paragraph by two percentage points for all operational quotas.
111.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quota tariffs shall be reduced by 15 per cent. SVEs' in-quota tariffs shall be reduced by 7.5 per cent.²⁰⁾ However, there shall be no equivalent to the developed country Member requirement to reduce to a threshold if lower; nor to the requirement to reduce rates at or below 5 per cent ad valorem to zero. The reductions shall be implemented on the same time-frame as for the expansion of tariff quotas. Where the tariff

19) Switzerland shall be allowed not to reduce to zero the in-quota tariff for 2 tariff lines of wine in bottles, and not to reduce to 10 per cent the in-quota tariffs for two tariff lines of bread cereals. This shall apply to bound in-quota tariffs only. Switzerland shall compensate with new market access opportunities equivalent to 1 per cent of domestic consumption.

20) Venezuela may also apply this provision.

lines in a tariff quota are declared to be Special Products with zero cut, there shall be no requirement to reduce the in-quota tariff.

112. Where a small, vulnerable economy has a tariff quota, all the tariff lines of which are declared Special Products, it shall not be required to reduce the in-quota tariffs.
113. The relevant reduction by RAMs shall be further reduced to one third of the percentage cut required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quota tariffs at or under 15 per cent need not be reduced. Saudi Arabia,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Viet Nam, Tonga and Ukraine, as very recently-acceded Members and small low-income RAMs with economies in transition²¹⁾ need not make any reductions.
114. All in-quota tariffs shall be bound in ad valorem form. For expanded Sensitive tariff quotas a single rate of duty, equal to the lowest current bound in-quota tariff applicable to the tariff lines covered by a single quota, shall be the starting point for reductions for all tariff lines covered by the expanded tariff quota..

(b) Tariff quota administration

115. Tariff quota administration of scheduled tariff quotas shall be deemed to be an instance of “import licensing” within the meaning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Import Licensing Procedures and, accordingly, that Agreement shall apply in full, subject to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to the following more specific and additional obligations.

21) This is applicable to Albania, Armenia, Georgia, Kyrgyz Republic, Moldova and Mongolia

116. As regards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4(a) of Article 1 of that Agreement, as these agricultural tariff quotas are negotiated and scheduled commitments, publication of the relevant information shall be effected no later than 90 days prior to the opening date of the tariff quota concerned. Where applications are involved, this shall also be the minimum advance date for the opening of applications.
117. As regards paragraph 6 of Article 1 of that Agreement, applicants for scheduled tariff quotas shall apply to one administrative body only.
118. As regards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5(f) of Article 3 of that Agreement, the period for processing applications shall be, unqualifiedly, no longer than 30 days for “as and when received” cases and no longer than 60 days for “simultaneous” consideration cases. The issuance of licences shall, therefore, take place no later than the effective opening date of the tariff quota concerned, except where, for the latter category, there has been an extension for applications allowed for under Article 1.6 of that Agreement.
119. As regards Article 3.5(i), licences for scheduled tariff quotas shall be issued in economic quantities.
120. Tariff quota “fill rates” shall be notified.
121. In order to ensure that their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consistent with Article 3.2 of that Agreement, “no more administratively burdensome than absolutely necessary to administer the measure”, importing Members shall ensure that unfilled tariff quota access is not attributable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that are more constraining than an “absolute necessity” test would demand.

122. Where licences held by private operators exhibit a pattern of being less than fully utilized for reasons other than those that would be expected to be followed by a normal commercial operator in the circumstances, the Member allocating the licences shall give this due weight when examining the reasons for under utilization and considering the allocation of new licences as provided for under Article 3.5 (j).
123. Where it is manifest that a tariff quota is under filled but there would appear to be no reasonable commercial reason for this to be the case, an importing Member shall request those private operators holding unused entitlements whether they would be prepared to make them available to other potential users. Where the tariff quota is held by a private operator in a third country, e.g. as a result of country-specific allocation arrangements, the importing Member shall transmit the request to the holder of the allocation concerned.
124. As regards Article 3.5(a) (ii) of that Agreement, Members shall make available the contact details of those importers holding licences for access to scheduled agricultural tariff quotas, where, subject to the terms of Article 1.11, this is possible and/or with their consent.
125. Members shall provide for an effective re-allocation mechanism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outlined in Annex E

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SSG)

127.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reduce to 1 per cent of scheduled tariff lines the number of lines eligible for the SSG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and it shall have been eliminated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seventh year of implementation. At no time during this seven year period may the total duty applicable on a tariff line exceed the pre Doha round tariff binding. If a tariff line included in the 1 per cent SSG entitlement is declared sensitive, the tariff quota expansion applicable to a two-thirds deviation shall apply. In addition, products subject to delayed implementation shall not be subject to other flexibilities reducing quota size other than sub-allocation. The standard implementation period for in-quota rate reductions shall apply to tariff lines included in the 1 per cent SSG entitlements.

127.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e SSG coverage shall be reduced to no more than 2.5 per cent of tariff lines on the first day of implementation. For SVEs the SSG coverage shall be reduced to no more than 5 per cent of lines over 12 years.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SSG shall remain unchanged from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except that the tariff rates concerned shall be updated to reflect the outcome of the Doha Round negotiations.
128. Article 5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accordingly to reflect these modalities.

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Special Products

129.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be entitled to self-designate Special Products guided by indicators²²⁾ based on the criteria of

22) See Annex F.

food security, livelihood security and rural development. There shall be 12 per cent of tariff lines available for self-designation as Special Products. Up to 5 per cent of lines may have no cut. The overall average cut shall, in any case, be 11 percent.*

** A number of developing country Members have expressed reservations concerning the numbers specified in this paragraph, noting also that this may be affected by what is decided in other areas of the text.*

130. In the case of small vulnerable economies, including those among them which are ceiling binding and homogeneously low binding countries, they may, if they choose to do so, apply the moderated tariff tiered formula for SVEs provided for in paragraph 65 above plus the Special Product entitlement outlined above. Alternatively, they may choose not to apply the tiered formula but simply meet an overall average cut of 24 per cent through having in effect opted to designate as many tariff lines as they choose as Special Products. The tariff lines so chosen need not be subject to any minimum tariff cut and need not be guided by the indicators.
131. In the case of RAMs, the maximum tariff line entitlements to Special Products shall be 13 per cent and the overall average cut to be achieved for the designated tariff lines may be further reduced to 10 per cent.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SM)

132. The SSM shall have no a priori product limitations as to its availability, i.e. it can be invoked for all tariff lines in principle. A price-based and a volume-based SSM shall be available. In no circumstances may any product be, however, subject to the simultaneous application of price - and volume-based safeguards. Nor shall there be application of either of these measures if an

SSG, a measure under GATT Article or a measure under the Agreement on Safeguards is in place.

133. As regards the volume-based SSM, it shall be applied on the basis of a rolling average of imports in the preceding three-year period (hereafter “base imports”). On this basis, the applicable triggers and remedies shall be set as follows:
- (a) where the volume of imports during any year exceeds 110 per cent but does not exceed 115 per cent of base imports, the maximum additional duty that may be imposed on applied tariffs shall not exceed 25 per cent of the current bound tariff or 25 percentage points, whichever is higher;
 - (b) where the volume of imports during any year exceeds 115 per cent but does not exceed 135 per cent of base imports, the maximum additional duty that may be imposed on applied tariffs shall not exceed 40 per cent of the current bound tariff or 40 percentage points, whichever is higher;
 - (c) where the volume of imports during any year exceeds 135 per cent of base imports, the maximum additional duty that may be imposed on applied tariffs shall not exceed 50 per cent of the current bound tariff or 50 percentage points, whichever is higher;
 - (d) where, formally, these triggers could be met, but the absolute level of imports is manifestly negligible in relation to domestic production and consumption, remedies would not be applied.
134. Imports under any scheduled tariff rate quota commitment may be counted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volume of imports required for invoking the volume-based SSM (except where a volume increase is entirely attributable to a scheduled tariff rate quota increase under Doha implementation phasing), but no

additional duty shall be imposed on imports within such tariff rate quota commitments.

135. As regards the price-based SSM, it shall be applicable where the c.i.f. import price²³⁾ of the shipment²⁴⁾ entering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 expressed in terms of its domestic currency falls below a trigger price²⁵⁾ equal to 85 per cent of the average monthly MFN-sourced price²⁶⁾ for that product for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preceding the year of importation for which data are available, provided that, where the developing country Member's domestic currency has at the time of importation depreciated by at least 10 per cent over the preceding 12 months against the international currency or currencies against which it is normally valued, the import price shall be computed using the average exchange rate of the domestic currency against such international currency or currencies for the three-year period referred to above.
136. The price-based SSM remedy shall apply on a shipment-by-shipment basis. The additional duty shall not exceed 85 per cen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import price of the shipment concerned and the trigger price.
137.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not normally take recourse to the price-based SSM where the volume of imports of the products

23) Hereafter the "import price".

24) A shipment shall not be considered for purposes of paragraphs 135 and 146 unless the volume of the product included in that shipment is within the range of normal commercial shipments of that product entering into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importing developing country Member.

25) The trigger price shall be publicly disclosed and available to the extent necessary to allow other Members to assess the additional duty that may be levied.

26) Hereafter the "reference price". The reference price used to invoke the provisions of this paragraph shall be the average monthly c.i.f. unit value of the product concerned.

concerned in the current year is manifestly declining, or is at a manifestly negligible level incapable of undermining the domestic price level.

138. The calculation of volume or price triggers, and the application of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section, shall be on the basis of MFN trade only.
139. Any shipments of the product in question which, before the imposition of the additional duty, have been contracted for and were en route after completion of custom clearance procedures in the exporting country, either under the price- or volume-based SSM, shall be exempted from any such additional duty, provided that where a volume-based SSM may be applicable in the next twelve-month period, the shipment of the product in question may be so counted in that period for the purposes of triggering the SSM.
140. The volume-based SSM may be maintained for a maximum period of 12 months from the initial invocation of the measure, unless a seasonal product is involved, in which case the SSM shall apply for a maximum of six months or to cover the period of actual seasonality, whichever is the longer. For the next immediate (consecutive) period, the three year rolling average shall be inclusive of that immediately preceding period of imports when the SSM was in place. However, where this would have the effect of lowering the three year rolling average below the level which triggered the SSM in the initial period, the trigger level for the initial period shall apply. No product shall be subject to the volume-based SSM consecutively for more than two periods and where such consecutive application has occurred

this may not be resorted to again before the elapse of a further two consecutive periods.

141. The operation of the SSM shall be carried out in a transparent manner and the basis upon which ongoing calculations of rolling averages of import volumes and prices shall be accessible to all Members so that they can be fully informed of the basis upon which any potential actions may be taken. Any developing country Member taking action shall give notice in writing, indicating the tariff lines affected by the additional SSM duty and including relevant data,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as far in advance as may be practicable or, where this is not possible,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such action. The Member taking action shall afford any interested Members the opportunity to consult with it in respect of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of such action.
142. The above provisions on triggers and remedies apply subject to the limitation that the pre-Doha bound tariff is respected as the upper limit and shall prevail as such.
143. For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they may, nevertheless, apply the maximum remedy provided for above even if this would otherwise entail breach of a pre-Doha bound tariff, provided that the maximum increase over a pre-Doha bound tariff does not exceed 40 ad valorem percentage points or 40 per cent of the current bound tariff, whichever is higher. This would be provided that all other relevant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e measure have been met.
144. [In the case of SVE's referred to in footnote 11 to these modalities, they may apply the maximum remedy provided for

above even if this would otherwise entail breach of a pre-Doha bound tariff, provided that the maximum increase over a pre-Doha bound tariff does not exceed 20 ad valorem percentage points or 20 per cent of the current bound tariff, whichever is higher, for up to a maximum of (10-15) per cent of tariff lines in any given period. This would be provided that all other relevant conditions for application of the measure have been met.

145.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other than those referred to in the preceding paragraph, they may apply the maximum remedy provided for above even if this would otherwise entail breach of a pre-Doha bound tariff provided that (a) the maximum increase over the pre-Doha bound tariffs would be no more than 15 ad valorem percentage points or 15 per cent of the current bound tariff, whichever is the higher (b) the maximum number of products for which this provision would be invoked would be no more than 2-6²⁷⁾ in any given period; and (c) this would not be permissible for two consecutive periods. All other provisions would be applicable.]
146.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amended to reflect the above modalities.

Fullest liberalization of trade in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147. For those tropical and diversification products attached in Annex G, the following modality shall be applied over and above that which would otherwise result from application of the tiered formula.

27) For the purposes of this provision a “product” is identifiable at the 6-digit level of the Harmonized System (HS) nomenclature, bu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is can entail a maximum of [4 – 8] tariff lines per product below that 6-digit level.

148.

Either:

Where the scheduled tariff is less than or equal to 25 per cent ad valorem, it shall be reduced to zero. Where it is greater than 25 per cent ad valorem the applicable tariff cut shall be 85per cent. There shall be no sensitive product treatment for any of the products appearing on the annexed list. The implementation of the cuts concerned shall be in four equal annual steps for all developed country Members.

Or:

Where the tariff is greater than or equal to 10 per cent, it shall be reduced by the percentage cut specified in paragraph 61 (d) above, except for tariffs in the top band which shall be reduced by the tariff escalation tariff cut for that band increased by 2 ad valorem points. Where the tariff is less than 10 per cent, it shall be reduced to zero. The reductions concerned shall be implemented by developed country Member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tariff reduction implementation period.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do so are encouraged to make additional efforts on tropical products beyond what would be required under the tiered formula

Long-standing preferences and preference erosion

149.

Either:

For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H, there shall be no tariff cuts on the items in that list for 10years. Tariff cuts shall commence only after that point and shall be implemented over five years in equal annual instalments thereafter.

Or:

For those products listed in Annex H, where:

- (a) the pre-Doha MFN bound tariff is greater than 10 per cent ad valorem, and*
- (b) over the most recent three-year period, the total value of trade from long-standing preference receiving country Members is greater than US\$ 50,000 or is 3 per cent of any long-standing preference receiver's total agricultural trade to the market concerned, and*
- (c) there is unconstrained long-standing preference eligibility in the market concerned,*

tariff cuts by long-standing preference granting country Members shall be implemented in equal annual instalments steps over a period that is two years longer than the implementation period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for tariff cuts under the tiered formula.

Where, however, there is an overlap between products subject to this provision and those covered by the tariff escalation and/or tropical products provisions, the latter provisions shall prevail, except for the specific list of products identified in Annex X on which tariff reduction commitments shall proceed as is specifically determined in that Annex.

150. Long-standing preference granting Members having undertaken to provide targeted technical assistance, including additional financial and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to help address supply-side constraints and to promote the diversification of existing production in the territories of preference receiving Members, progress shall be reviewed annually.

E. Least-Developed Countries

151.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are not required to undertake reductions in bound duties.
152. We reaffirm the need to facilitate LDCs' secure, beneficial and meaningful integration in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n this regard, we recall the Decision on Measures in Favour of Least-Developed Countries contained in decision 36 of Annex F of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the "Decision"), and agree that developed Members shall,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in a position to do so should²⁸⁾ :
- (a) (i)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on a lasting basis, for all products originating from all LDCs no later than the start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a manner that ensures stability, security and predictability.
 - (ii) Members facing difficulties at this time to provide market access as set out above shall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at least 97 per cent of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defined at the tariff line level, no later than the start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In addition, these Members shall take steps to progressively achieve compliance with the obligations set out above, taking into account the impact on other developing country Members at similar levels of development, and, as appropriate, by incrementally building on the initial list of covered products.
 - (iii)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be permitted to phase in their commitments and shall enjoy appropriate flexibility in coverage.
- (b) Provide meaningfully enhanced market access for all LDCs.

28) Consistent with the text of the "Decision on Measures in Favour of Least-Developed Countries" in Annex F of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5)/DEC)

- (c) Ensure tha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applicable to imports from LDCs will be transparent, simple and contribute to facilitating market access in respect of agricultural products. In this connection, we urge Members to use the model provided in document TN/MA/W/74, as appropriate, in the design of the rules of origin for their autonomous preference programmes.
153. Accordingly,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inform WTO Members, by a date to be agreed, of the products that will be covered under the commitment to provide duty-free and quota-free market access for at least 97 per cent of products originating from LDCs defined at the tariff line level. The agreement on the date by which this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shall be concluded prior to the date of the Special Session of the Ministerial Conference to be held to take decisions regarding the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s in all areas of the DDA (the “Single Undertaking”).
154. As part of the review foreseen in the Decision,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hall monitor progress made in its implementation, including in respect of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The details of the monitoring procedure shall be defined and agreed by the Negotiating Group on Market Access by the time of the submission of final schedules. Under the monitoring procedure, Members shall annually notify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a) the implementation of duty-free and quota-free programmes, including the steps taken and possible timeframes established to progressively achieve full compliance with the Decision and (b) the corresponding rules of origin. The first notification under this monitoring procedure shall be made by the star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DDA. The

Committee on Trade and Development shall review such notifications and shall report annually to the General Council for appropriate action.

CottonMarket access

155. 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declaring themselves to be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give duty- and quota-free access for cotton exports from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from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156. Developing country Members that are not in a position to give duty- and quota-free access for cotton exports from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from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shall undertake to look positively at possibilities for increased import opportunities for cotton from 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

G. Small, Vulnerable Economies

157. For the purposes of these modalities, this term applies to Members with economies that, in the period 1999 to 2004, had an average share of (a)merchandise trade of no more than 0.16cent or less, and (b) world trade in non-agricultural products of no more than 0.1 per cent and (c)world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of no more than 0.4 per cent.
158. 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developing country Members in a position to do so shall provide enhanced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for products of export interest to Members with small, vulnerable economies.
159. More specific provisions are to be found in relevant sections of this document.

III. Export Competition

A. General

160. Nothing in these modalities on export competition can be construed to give any Member the right to provide, directly or indirectly, export subsidies in excess of the commitments specified in Members' Schedules, or to otherwise detract from the obligations of Article 8 of that Agreement. Furthermore, nothing can be construed to imply any change to the obligations and rights under Article 10.1 or to diminish in any way existing obligations under other provisions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or other WTO Agreements.
161. Nor can anything in these modalities be construed to diminish in any way the existing commitments contained in the Marrakesh Decision on Measures Concerning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Reform Programme on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 of April 1994 and the 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 of 14 November 2001 on, inter alia, commitment levels of food aid, provision of food aid by donors,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in the context of aid programmes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nfrastructure, and financing normal levels of commercial imports of basic foodstuffs. Nor could it be understood to alter the regular review of these decisions by the Ministerial Conference and monitoring by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B. Scheduled Export Subsidy Commitments

162. Developed country Members shall eliminate their remaining scheduled export subsidy entitlements by the end of 2013. This shall be effected on the basis of:
- (a) budgetary outlay commitments being reduced by 50 per cent by the end of 2010 in equal annual instalment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with the remaining budgetary outlay commitments being reduced to zero in equal annual instalments so that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are eliminated by the end of 2013.
 - (b) quantity commitment levels being applied as a standstill from the commencement until the end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at the actual average of quantity levels in the 2003-05 base period. Furthermore, throughout the implementation period, there shall be no export subsidies applied either to new markets or to new products.
163.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eliminate their export subsidy entitlements by reducing to zero their scheduled export subsidy budgetary outlay and quantity commitment levels in equal annual instalments by the end of 2016.
164. In accordance with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developing country Members shall, furthermore, continue to benefit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9.4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until the end of 2021, i.e. five years after the end-date for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C.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165. Export credit,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set out in Annex J.

D.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166.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K.

E. International Food Aid

167. International food aid shall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Annex L.

F. Cotton

168. Those export subsidies for cotton referred to in paragraph 162 above are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the mandate contained in paragraph 11 of the Hong Kong Ministerial Declaration. However, developing country Members which have any export subsidy entitlements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mply with this prohibition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169. To the extent that new disciplines and commitments for export credits, export credit guarantees or insurance programmes, agricultural exporting state trading enterprises and international food aid create new and additional obligations for Members as regards cotton, any such obligations shall be implemented on the first day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or developed country Members, and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the implementation period for developing country Members.

IV. Monitoring and Surveillance

170. See Annex M.

V. Other Issues

A. [Differential Export Taxes

B. GIs]

C.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171. In order to strengthen the existing disciplines on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of Article XI.2(a) of GATT 1994, Article 1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shall be modified to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172.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under Article XI.2(a) of GATT 1994 in Members' territories shall be notified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within 90 days of the coming into force of these provisions.

173. A Member instituting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under that provision shall give notice of the reasons for introducing and maintaining such measures.

174. A Member which intends to institute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shall consult, upon request, with any other Member having a substantial interest as an importer with respect to any matter related to the proposed measure. The Member instituting such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shall provide, upon request, the interested importing Member with necessary information, including relevant economic indicators.

175. The Member instituting the measure shall report the progress made in the consultations to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176.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hall provide for annual notification update and surveillance of these obligations.
177. As provided in paragraph 7 of Article 18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y Member may bring to the attent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 such measures under that provision which it considers ought to have been notified by another Member.
178. Existing export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in foodstuffs and feeds under Article XI.2 (a) of GATT 1994 shall be eliminated by the end of the first year of implementation.
179. Any new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under Article XI.2 (a) of GATT 1994 should not normally be longer than 12 months, and shall only be longer than 18 months with the agreement of the affected importing Members.
180. The above provisions apply consistently with Article 12.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o the extent that the above provisions on consultations apply any obligations additional to Article 12 of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they shall not apply to least-developed and net food-importing developing countries.²⁹⁾

29) Cameroon, Congo (Brazzaville), Ghana, Nigeria and Swaziland shall have access also to this provision.

An Evaluation of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Jin Kyo Suh and Ji Hyun Park

This study delineates major contents of the 4th amendment in the modality concerning the agricultural sector, which was the most recently released and proposes directions on how to formulate strategic country schedules based on the results after their evaluation.

Ever since agricultural negotiations were included as a them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in 2001, modality negotiations on opening markets and reducing agricultural subsidies have continued for 9 years. Even though DDA negotiations in the agricultural sector have proceeded slowly, most people evaluate that it is now time for a conclusion to be drawn, if major countries are willing to settle politically. As mentioned in previous modality amendments, issues in agriculture have been settled already to a considerable degree. Even though differenc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ore issues such as reducing agricultural subsidies, number and treatment of sensitive and special products and Special Safeguard Mechanism still remain; the differences have been bridged sufficiently for the negotiation and the 4th modality amendment, which was recently released, and revealed specific figures as single ones for subsidies and tariff reductions.

Each member country is to submit its own country schedule if the modality

is settled.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prepare Korea's own country schedule to meet the demand for submission.

First, we need to establish categories with as much detail as possible to secure flexibility in providing agricultural subsidies for products for domestic support in the future. In this case, we have detailed a total of 56 products including 8 grains, 17 vegetables, 7 livestock products, 4 other crops, 9 fruits, 4 forest products, 2 mushrooms, 3 flowering plants and 2 medicinal crops.

In case of establishing product-specific AMS limits, it is the best ① to establish with average performance between 1995 and 2000 for rice, barley, corn and rape and ② to establish with performance for the recent 2 years for soy and malting barley and ③ to establish with 10% of the production amount between 1995 and 2000 for the rest of the products if Korea gains its status as a developed country. Also, it is the most reasonable for product-specific AMS limits to be established with 20% of average production amount between 1995 and 2004 if Korea remains a developing country.

Also, the de minimis may not be decided in advance because it is based on a certain ratio of production amount for each product in the said year. However, there is a need to notify if 5 or 10% of the production amount is used for basic ratio for the de minimi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o select a Blue Box which does not require production(New Blue Box). It is optimum for products with extremely low AMS limits to be established as Blue Box products and for the rest to be established with AMS products in case of establishing Blue Box limits for products. Particularly, rice should be shifted to the New Blue Box, rather than AMS, to increase flexibility in managing AMS.

Finally, it is necessary for the DDA country schedule to be in harmony with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the contracted FTAs. Most major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in Korea may be protected to a substantial degree with sensitive and special products proposed in the 4th modality amendment. However, it may

cause inefficient border protection, as well as difficulties in import management in case that the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the contracted FTAs are different from those in the WTO.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ariff lines with small portion of imports from the contracted FTA counterparts to Korea to be independent of tariff reduction schedules, in accordance with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However, it is reasonable for tariff lines accounting for most of imports from contracted FTA counterparts to Korea to coincide with the schedules in the contracted FTAs, rather than making independent tariff reduction schedules to accord with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 연구보고서

- 09-01 기후변화협상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
정성춘 · 이형근 · 권기수 · 이철원 · 오태현 · 김진오 · 이순철
-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 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해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구
-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월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김지연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해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 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Jeffrey Robertson
- 07-06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오민아

■ 지역연구시리즈

- 07-10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김진오·박수완·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홍유수·이철원·김균태·오테현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9-01 독일 제조업부문의 해외직접투자과 수출의 관계 연구 / 김균태·이현진
- 08-01 EU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 오테현
- 07-01 중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웨어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 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 07-13 페루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의 전개와
의미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 07-16 주요국의 대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09-03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수정안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 시사점 / 서진교 · 박지현
- 09-02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 방안 / 송영관 · 양주영
- 09-01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
Sherzod Shadikhodjaev · 양주영
- 08-02 한국과 중국의 FTA 원산지규정 비교: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 조미진 · 여지나 · 김민성
- 08-01 한·미 FTA 이후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전략 /
정지원 · 박혜리
-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 09-03 Intra-Industry Trade between Japan and Korea:
Vertical Intra-Industry Trade, Fragmentation and
Export Margins / Yushi Yoshida
- 09-02 Outward Processing Scheme under FTAs: “Domine,
QuoVadis?” / Norio Komuro
- 09-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Social Safety Nets
in East and Southeast Asia / Kye Woo Lee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 08-01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conomic Integration of East and South Asia / Kye Woo Lee
- 08-02 Financial Integration and Exchange Rate Coordination in East Asia / Woosik Moon and Yeongseop Rhee
- 08-03 Destined to Fail? The History of the Yen Bloc Before the Second World War / Woosik Moon
- 08-04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Plus Three: Trends and Implications for 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 BUI Truong Giang
- 08-01 태국의 주요 산업: 바이오에너지, 금융, 자동차, 전기전자 / 이재호 · 정재완 · 이성훈
- 08-02 필리핀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바이오연료, TV방송, 프랜차이즈 / 배희연 · 정재완 · 박병국
- 08-03 카자흐스탄의 주요 산업: 석유, IT, 건축자재, 의약 / 황지영 · 이철원 · 최진형
- 08-04 UAE의 주요 산업 분석: 건설, 정보통신, 관광, 금융 / 박철형 · 이영희
- 08-05 헝가리의 주요 산업 분석: 자동차, IT, 금융, 제약 / 이철원 · 김용성
- 08-06 칠레의 주요 산업 분석: 농업, 수산업, 광업, IT / 김진오 · 성기주
- 08-07 나이지리아의 주요 산업: 원유 · 가스, 통신, 건설, 전력 / 박영호 · 허윤선 · 심자용
-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China and Korea in the World Economy: Comm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Ten Years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es / David Daokui Li and Youngrok Cheong eds.
- Ten Years after the Korean Crisis / Meral Karasulu and Doo Yong Yang
- Capital Flows, Macroeconomic Management and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 Kyung Tae Lee and Ramkishen S. Rajan eds.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9-02 인도 전문인력과 서비스 산업 성장: 한국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에 대한 시사점 / 이순철 · 송영철
- 09-01 북유럽 주요국의 언타이드 원조 정책과 시사점 / 권 율 · 정지선
- 08-01 중국의 금융산업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한·중 FTA 대비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8-02 한-ASEAN 부품산업 분업구조 분석 / 정재완 · 방호경
- 08-03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제도 개선과제 / 정형곤 · 나승권
- 08-04 한·일 양국의 에너지 분야 대응실태와 협력방안 / 정성춘 · 이형근
- 08-05 한·중·일 대인도네시아 FTA 체결에 따른 인도네시아 시장 접근성 비교 / 김한성 · 이재호 · 백유진
- 08-06 한·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별 생산분할 특징과 시사점 / 방호경

- 08-07 일본 농업의 경쟁력과 한·일 FTA에의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정지원 · 이형근
- 08-08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국제무역규범 연계에 대한 논의
동향 / 윤창인
- 08-09 금융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과제 /
윤덕룡 · 김태준 · 문우식 · 송치영 · 유재원 · 채희율
- 08-11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
서진교 · 박순찬 · 김우영 · 이종한 · 이홍식 · 최종일
- 08-12 시장개방과 글로벌 아웃소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진교 · 이홍식 · 박순찬 · 김우영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제협력 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채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Working Papers

- 09-04 What can North Korea Learn from Transition Economies' Reform Process? / Hyung-Gon Jeong
- 09-03 Firm Heterogeneity in the Choice of Offshoring: Evid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Firms / Hea-Jung Hyun
- 09-02 Using Panel Data to Exactly Estimate Income Under-Reporting by the Self Employed / Bonggeun Kim, John Gibson, and Chul Chung
- 09-01 Determinants of Staging Categories for the Tariff Elimination in the FTA Negotiations / Nakgyoon Choi
- 08-01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 Sherzod Shadikhodjaev
- 08-02 FDI Inflows, Exports and Economic Growth in First and Second Generation ANIEs: Panel data Causality Analysis / Yongkul Won, Frank S.T. Hsiao, and Doo Yong Yang
- 08-03 Flexible BBC Exchange Rate System and Exchange Rate Cooperation in East Asia / Yen Kyun Wang
- 08-04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A Case Study of Ireland / Kyuntae Kim and Hokyung Bang
- 08-05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on / Sherzod Shadikhodjaev
- 08-06 Real Exchange Rate Dynamics in the Presence of Nontraded goods and Transaction Costs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8-07 Sub-prime financial crisis and US policy choices / Yonghyup Oh and Wonho Song
- 08-08 Empirical Analysis on U.S. Congressional Voting on Recent Free Trade Bills / Hyejoon Im and Hankyong Sung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단행본

- 20세기 유럽경제사 / 이현대 · 김홍중 옮김
- 2009년 세계경제전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전망과 한국의 선택 / 정여천 편
- Korea's Development Policy Experience and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 김적교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저자약력

서진교(徐溱敎)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 농업 및 자원경제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jksuh@kiep.go.kr)

著書 및 論文

- 『DDA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08)
- 『시장개방의 생산성 향상 메커니즘 분석』 (공저, 2008) 외

박지현(朴芝賢)

중앙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jhpark@kiep.go.kr)

著書 및 論文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공저, 2008)
-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공저, 2007)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권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n Evaluation of the Revised Draft Modalities for DDA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Jin Kyo Suh and Ji Hyun Park

2008년 12월 배포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에서 농업분야의 쟁점은 이미 상당히 정리된 상태이며, 세부원칙이 타결 되면 각 회원국은 곧바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전 준비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장 최근에 배포된 농업부문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과 의미를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 농업부문의 전략적인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내 보조에서 품목별 보조금 지급상한이 설정될 것에 대비하여 농정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장접근분야에서는 기존에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상의 세번별 시장개방 스케줄과 이들 FTA 체결국가로부터의 수입흐름을 세번별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양자협상과 다자협상간 관세감축의 조화를 반영한 이행계획서 작성방향을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영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정가 5,000원